

2022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매뉴얼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 길라잡이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 길라잡이**



발 간 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부모들의 고충과 위기상황도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활용할 자원이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은 혼자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부모가족을 만나고 서비스를 시행하시는 모든 분들도 더 힘들고 더 바쁘시고 어려운 시기일 것 입니다. 2022년 올해 또한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2022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 길라잡이”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은 조금씩 변화하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실무자가 알려주고 싶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안타까움으로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한부모가족에게 잘 알려지고, 연계되고 또 더 나은 내일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기 시작한 본 매뉴얼은 정확하게 제도를 알려 주고 실제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지역자활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센터의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등 현장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내용을 검증하고 보완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당사자 단체 및 조직,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는 물론 한부모가족들이 자주 찾아가는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수행기관 등에 본 매뉴얼을 e-book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들이 더욱 가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올해는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더불어 모두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2022년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 길라잡이

· CONTENTS ·

I.		22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비전 및 사업계획
서울특별시		23	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걸어온 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6	3.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소개
21	사업(2022)	27	4.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 세부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다.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II.		41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저소득			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			나. 지원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40	사업		다. 신청 절차
			라. 2022년도 급여 내용
			마.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63	2. 권역별 미혼모 부자거점기관 사업 - 미혼모·부 초기지원
			가. 지원 대상
			나. 지원 절차
			다. 지원 내용
			라. 사업수행기관
		65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및 지원내용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연장 및 퇴소
			다.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라.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70 1.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도모

- 가. 취약·위기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
- 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다. 긴급위기가족
- 라. 취약·위기가족지원 수행기관

73 2. 법률 지원

- 가. 양육비 이행 원스톱종합서비스(양육비이행관리원)
- 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다. 복지법률지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라. 대한법률구조공단
- 마. 법률홈닥터
- 바. 마을변호사
- 사.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아.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 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83 3. 주거 지원

- 가. 공공임대주택 개요
- 나. LH주택공사 사업
- 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 라. 국민주택기금
- 마.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 바. 주거복지센터
- 사. 주거급여
- 아.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 자. 한사랑 전세론

110 4. 교육 지원

가. 장학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국가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 서울특별시 자치구 장학금 관련기관
- 아이들과미래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IBK행복나눔재단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든든 학업지원금 지원
- KT&G 복지재단 장학사업



나.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 학력인정 평생교육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KT&G복지재단 행복가정 학습지원사업
- 아이들과미래재단 교육 지원 사업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부모 장학생 지원

122 5. 양육지원

- 가.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 나. 임신·출산 지원
- 다. 자녀성장지원
- 라. 보육지원
- 마. 돌봄지원
- 바.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 사.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

143 6. 자립지원

- 가. 취업 및 창업 교육지원
- 나. 창업 자금 대여
- 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 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마. 자산형성 지원

165 7. 의료지원

- KT&G 복지재단 의료 지원 사업
- 아름다운 동행: 개안 수술 지원 사업
- 아름다운 재단: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
- 한국여성재단 의료 지원 사업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
-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 아이들과 미래재단 아동 청소년 의료비 지원 사업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의료비 지원 사업
-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 지원



174 8. 여가지원

-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통합)
- 리플래쉬 여행
- 서울시 여행 활동 지원 사업

175 9. 위기지원

- 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 나. 서울형 긴급복지
- 다.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지원사업
- 라. 신한희망재단: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 마. 이랜드복지재단 인큐베이팅 사업: 위기가정 지원
- 바.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182 10. 사회서비스지원

-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185 11. 생활지원

- 가.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복지사업
- 나. 한국에너지공단
- 다. 서울 IT 희망나눔 세상: 사랑의 PC신청
- 라. 생활 속 다양한 요금 감면
- 마. 1인가구 지원사업
- 바. 그 외 기타지원

IV.
부록

194

1. 한부모가족 현황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주요 개정 내용
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주요 내용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저소득 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청소년 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72%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 시 만 22세)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월 10만원, '21년 5월 적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53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회 8.3만원 지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구 월 5만원 생활보조금 지원(가구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53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월 3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차액 15만원만 지급)		
	청소년 한부모 고등학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60%이하 •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고등학생인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 한부모본인이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권역별 미혼모 부자 거점 기관 사업	미혼모·부 초기지원	• 정서지원: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 출산 및 양육지원: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병원비, 자녀양육 생필품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지역유관기관 연계지원	전국 17개소 사업수행기관	p63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별 입소	•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형) : 3년까지 생활보호(2년 연장가능) • 모(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 2년까지 생활보호(1년 연장가능)	홈페이지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개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자치구청	p65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미혼모 (미혼의 임신여성 포함)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1년까지 생활보호(6개월 연장가능)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2년까지 생활보호(1년 연장가능)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2년까지 생활보호(6개월 연장가능)			
	학대위협에 처한 한부모	일시지원복지시설 : 6개월까지 생활보호 (6개월 연장가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용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시설 입소자	근로소득평가액의 40% 이상을 저축할 경우, 자립 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 향상으로 인한 퇴소 유예	각 시설 사무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 입소자	아동 돌봄활동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 지원	각 시설 사무실	p68
사례 관리 자립 도모	가족 역량 강화지원 서비스	취약위기 가족(기준중위 소득 72%)	전국 79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p70	
		긴급위기 가족			심리·정서지원, 긴급가족 돌봄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 지원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양육비이행 전문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p73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당면하는 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와 한부모 가족 연계	지역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p74
	복지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복지법률지원)	서울시민	복지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복지관련 법·제도 개선, 복지법률 교육, 법률구제 지원 등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1644-0120)	p75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족등	무료법률상담, 합의중재,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민사, 가사 사건 등의 소송 대리, 형사사건의 무료 변호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개인회생 파산연계지원	법적구제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조건 해당자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 무료 지원 - 법률구조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송대리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p78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저소득가구 및 금융취약계층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전국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P79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주 거 지 원	LH 주택 공사	국민임대	월 평균소득 70%이하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30년) 임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주택(2년 단위 체결)	LH한국주택도시공사 (☎1600-1004)	p85
		영구임대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영구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으로 저소득 시민이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 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LH한국주택도시공사 (☎1600-1004)	p86
		공공임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약저축 가입자	•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p88
		매입임대	무주택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공급		p89
		기존주택 전세임대	한부모가족 등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로 원하는 주택을 물색 하면 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p90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	다자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주택 결정 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p92
		신혼부부 매입임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p93
주 거 지 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도심 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LH공사 (☎1600-1004)	p94
		주거 사다리 주거지원	비주택거주자	•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p95
	SH 서울 주택 도시 공사	공공임대 주거환경 임대주택	서울시 거주 무주택구성원	•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SH공사 임대팀 (☎1600-3456) (☎02-3410-7781~4)	p99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등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		p100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국민 주택 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일정금액 지불한 저소득 가구	•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형주택 건설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설치하여 지원 • 한부모가정의 경우 우대금리 연 1%p 적용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p10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p102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인 가구			p103
	서울시 주거 복지 사업	서울형 주택 바우처	중위소득 60%이하 비수급가구	•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월세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 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지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04
		서울시 임차 보증금 용자지원	공공부문임대 주택 입주 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용자임대보증금의 70% 범위 이내(최대 1천만원) 이율 2% 10년 균등 분할 상환 •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제외	SH공사 임대팀 (☎1600-3456) (☎02-3410-7781~4)	p105
		희망의 집수리 사업	소득인정액이 60%이내 저소득가구	• 공공주도형 집수리 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민간기부금과 시 예산을 매칭한 민간참여형 집수리 사업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 주거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 긴급주거비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사업 •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및 지자체 별 주거복지센터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 (임차가구: 전월세 지원 / 자가가구: 집수리)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p107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자립 의지가 확고한 저소득, 무주택 법정 한부모	•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동생활 주택에 입주(2년마다 자격 심사, 최대 6년)	지역별 운영기관	p109
	한사랑전세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조건 충족하는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지원(최대 200백만원)	KEB하나은행 (☎1599-2222)	
교 육 지 원	장 학 금 지 원	한국 장학 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인 성적 기준 충족자로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분위 파악 된 자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분위 및 지원유형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Ⅰ형, Ⅱ형),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1599-2000)	p110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 장학금 바우처 지급 (중학생 25만원 / 고등학생 35만원 / 대학생 45만원) - 멘토링, 교육캠프 등 맞춤형 지원		p111
	서울 장학재단 장학사업	서울지역 학생	- 중·고등학생 장학금 - 고교장학금, 고교진로장학금, 예체능 장학금, 서울희망sos장학금, 청계천꿈디딤장학금,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 서울꿈길장학금,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 대학생 장학금 - 대학장학금, 공익인재 장학금, 우수인재 장학금, 희망플러스장학금, 공항리무진서울교환학생장학금, 서울평화희망장학금,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 청춘Start장학금, 유영아학업장학금, sos장학금,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KT&G서울희망디딤돌장학금,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서울장학재단 (☎02-725-2257)	p112
			서울 내 자치구별 장학금	각 자치구 담당 기관	p114
	아이들과 미래재단	상세내용 참고	- SGI꿈나무희망파트너장학사업 - 교육생활장학금, 중·고교 입학자 진학지원금, 진로진학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와 1:1 학습 - 삼성증권 미래장학기금 - 교육장학금, 새학년 준비비 및 연 1회 문화체험	아이들과미래재단 (☎02-843-8478)	p115
	IBK행복 나눔재단 학업 ·장학금 지원사업	연간 근로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미혼의 자녀	대학생 최고 300만원, 고등학생 최고 100만원	IBK행복나눔재단 (☎02-3789-3992)	
	아산사회 복지재단	상세내용 참고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성적기준)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p116
	삼성 꿈장학 재단 장학사업	중·고교생, 대학생	- 멘토링 꿈장학사업 - 꿈장학사업: 매년 재신청을 통한 매월 장학금 지원 - SOS장학사업: 장학 기간(최대 12개월)동안 매월 장학금 지원	삼성꿈장학재단 (☎02-727-5400~5401)	
	한국 야쿠르트 사회복지 재단	취약계층(중 위소득 100%이하) 대학생	- 지속적인 학업 유지를 위한 학업 관련 비용 보조 - 대학생 300만원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02-3449-6426)	p117
	KT&G 복지재단	중·고교생	- 취약계층 가구 신규입학자 대상 학습 장학금 지원 - 중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KT&G 복지재단 (☎070-4124-6451)	
		대학생	- 취약계층 가구 대학교 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 학습보조비 400만원		p118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교육 지 원	학 습 지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한부모 본인이 만24세 미만이며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	•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1인당 연 154만원 지원 • 자립지원촉진술당 월 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83,000원 지원	여성가족부 (☎02-2100-6000)	p118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연령에 관계없이 학력취득 희망자	• 평생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 6년 과정, 중학교 3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 학력 인정 (학기단축의 경우 초등2년, 중·고등 1년 단축 가능)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869)	p119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 교육활동비 지원(연 1회 지급)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KT&G 복지재단 행복가정 학습지원 사업	중위소득 70% 이하 아동·청소년	•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KT&G복지재단 (☎02-563-4459)	p120
		아이들과 미래재단 교육지원 사업	사회복지 유관기관 청소년	• EY한영 한마음수학 멘토스쿨: 교육프로그램 지원 • KB학습멘토링: 대학생-중학생 멘토·멘티 사업	아이들과미래재단 (☎02-843-8478)	p1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중·고교 재학생	• 전문 교육과정 연계비, 교재 및 교구 구입비 • 대회 참가비, 재능계발 보조비, 체력증진비 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588-1940)	
		경희사이버 대학교 한부모 장학 사업	한부모가족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50% ~ 최대 100% 감면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02-3299-8700)	p122
양 육 지 원	임신출산 육아 정보제공		산모 및 양육자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정보제공 및 상담)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 지원센터 • 우리동네 키움포털 (돌봄서비스 및 시책 검색 등)	각 기관 홈페이지 참고	p122
	임신 출산 지원 사업	국민 행복카드	서비스 별로 지원대상과 자격 상이함	• 임신 1회당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다태아 임신 시 100만원 이내) •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저귀+분유 월 150,000원) • 첫만남이용권 (22년 1월 이후 출생아동에게 최초1회 2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123
		해산 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출산한 경우	• 해산급여: 출산 및 출산 예정 시 1인당 70만원 • 긴급복지 해산비: 1인당 70만원 지원		p12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 가정 (4개월 경과 후 사산 및 유산포함)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거주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129)	p126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양 육 지 원		영양 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일정기간 지원 - 월 1회 집합교육, 상담, 가정방문 형태로 실시 - 보충식품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거주지 보건소	p12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 포함) - 출산급여 총 150만원	고용노동부 (☎135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 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	거주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자녀 성장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만 9세~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및 청소년 활동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128
		자녀 장려금	부양자녀 요건 및 소득 요건 충족자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최대 70만원) 지급	국세청 홈텍스 (☎126)	p129
		아름다운 동행 위시박스	한부모가족 자녀 (초 1~ 고3)	개인의 소원, 자기발전, 진로 등을 위하여 최대 50만원 이내 물품 지원	아름다운 동행 (☎02-737-9595)	p130
	보육 지원	영아수당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 (☎129)	P130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장애 아동수당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중증장애인: 매월 7만원 ~ 최대 20만원 - 경증장애인: 매월 2만원 ~ 최대 10만원 ※ 수급 급여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p131
		가정양육 수당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0~7세 아동	- 연령별 보육료 지원 - 0~11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24~86개월 미만 : 10만원		
		시간제 보육지원	양육수당 수급 6~36개월 미만 아동	- 지정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후 지불 - 지원시간 월 80시간 (이용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간제 보육상담 (☎1661-9361)	p132
			방과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용	- 일반아동: 월 10만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아동: 특수교사 별도 배치, 장애아보육료의 50% - 종일제 보육 실시한 경우 일반 월 20만원, 장애아동 100% 지원	보건복지부 (☎129)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양 육 지 원	유아학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0세~5세	• 만3~5세 (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이상) •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28만원 지원		유아학비 콜센터 (☎1544-0079)		
	아이 돌봄 지원사업	0세 (3개월이상)~ 만 12세 자녀 돌봄 희망가정	• 시설 내 가정연계 서비스 : 0세(3개월)~ 만12세 아동 돌봄 지원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0세(3개월) ~ 만24개월 영아 돌봄 지원 •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표전화 (☎1577-2514)	p134	
	돌봄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아동 1명 당 최대 840시간 이내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p136
		지역아동 센터	지역사회 내 만 18세 미만 아동	•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 • 아동의 보호, 문화, 교육, 정서지 원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02-365-1264)	p137
		방과후 아카데미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생	• 방과후학교, 방과후돌봄안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02-3460-0114)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02-330-2831)	
		우리동네 키움센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 여가, 놀이공간 제공 • 이용 아동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 책정		우리동네 키움포털 (☎02-731-2120)	
	아동 발달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중위소득 120% 이하 만 0~6세	• 영유아 발달에 관련된 사회서비스 (언어발달, 초기 인지, 정서, 사회성, 기타 서비스)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p138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만 7~18세	• 정서, 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 정서 순화 프로그램 제공			p139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중위소득 140% 이하 만 18세 이하	• 언어프로그램, 놀이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아동 청소년 지원 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육아 중인 부모	• 가정양육지원,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p140
		드림 스타트	0세(임산부포함)~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양육 프로그램 제공		드림스타트 (http://www.dreamstart.go.kr)	p141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서울시 만 9세~24세 위기(가능) 청소년	• 찾아가는 상담지원, 정서적 지원, 지역자원과 연계 • 자기계발 및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연계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2-2285-1318)	p141
		꿈드림 (구.두드림·해밀)	만 9세 ~24세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	꿈드림 (http://www.kdream.or.kr/index.asp)	p142
		시소와 그네	취약계층 만 0세~7세 영유아 및 그 가족	• 건강, 복지, 교육 환경을 제공	전국 3개소 지역센터	p143
		따움 상담센터	동작구 관내 0세~초6 아동 및 학부모	• 동작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은 지원범위 내 치료비 감면 • 지원범위 : 1인 1과목, 주 1~2회 치료비(50%) 1년간 지원	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02-825-5575)	
자 립 지 원	취업 및 창업 교육 지원	고용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만 18~69세 이하 생계 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족 등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실시 • 진단경로 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취업 알선	고용노동부 (☎1350)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p143
자 립 지 원	취업 및 창업 교육 지원	보건 복지부 자활 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144
		국민내일 배움 카드제	누구나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후 5년간 지원 (훈련비, 훈련 장려금 및 훈련비 환급)	고용노동부 (☎1350)	p148
		서울 우먼업	취업 및 창업 희망 여성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취업·창업정보,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울 우먼업 (https://www.seoulwومانup.or.kr)	p149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여성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취업 연계 등 one-stop 종합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p150
		서울시 기술 교육원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 기능인력 양성(건축디자인, IT 디자인계열, 외식산업 조리, 산업설비, 의상디자인, 헤어디자인, 피부체형 케어, 자동차, 전기전자 등) 무료직업 훈련과정 운영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	p151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근로 복지공단 소상공인 e-러닝 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춘 창업 및 점포경영 관련 무료 인터넷 교육 제공	소상공인 교육 (http://kcomwel.seda.or.kr)	p152
		온라인 청년센터	대한민국청년 누구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정책 수집 및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p153
	창업 자금 대여	서민금융 진흥원 미소 금융사업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등	- 창업자금: 7천만원, 최대 6년 - 운영자금: 2천만원 한도, 최대 5.5년 -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한도, 최대 5.5년 -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한도,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4.5% 이내 금리 적용)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p154
		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 여성가장 창업자금	저소득 여성가장 중 중위소득60% 에 해당하는 생계형 창업을 희망 하는 자	- 지원내용: 1인당 최고 1억원 이내의 점포 임대 보증금 대출 - 대출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지원) - 대출금리: 연 2.0%(고정), 분기별 납부 - 상환방법: 만기 일시 상환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02-702-4244)	
		열매나눔 재단 더나은 네일	네일아트 인턴 과정 수료 3개월 이내 중위소득 70% 이하인 여성가장	- 인턴활동, 교육지원 및 네일숍 창업지원 - 활동 장학금 제공, 기술 코칭, 창업 교육 3천만원 무이자 대출 기회 제공	열매나눔재단 (☎02-2038-8514)	p155
		열매나눔 재단 창업 준비 학교	서울, 인천, 경기(일부) 소재 창업 예정인 중위소득 70% 이하인 여성가장	- 창업 기본교육, 창업 준비상담 및 컨설팅 - 창업 준비학교 수료자 중 심사를 통해 선정 (창업자금 최대 3,000만원 무이자로 대출)		p156
		아름다운 재단 창업대출 지원 희망가게	25세 이하 자녀 부양하는 한부모 여성가구주	- 총 3회까지 지원 가능 -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 대출금 합계 최대 4,000만원 대출 지원 (상환기간 8년, 거치기간 3개월, 고정금리 1%) - 심리상담, 개인 기술 교육비, 법률자문, 재무교육 등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p157
	자 립 지 원	창업 자금 대여	직업훈련에 3주이산 참여한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취약계층	- 지원내용: 1인당 1,000만원 이내 대출 (월별 한도액 200만원 이내)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융자금리: 1%	근로복지서비스 (☎1588-0075)	p158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근로복지 공단 생활안정 자금	월평균소득 280만원 이하인 일용직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 생활필수자금 8종에 대해 저금리 대출 지원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등)	근로복지서비스 (☎1588-0075)	p159
	자산 형성 지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 연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 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 가입기간 3년 시 정부 지원액 1,080만원 - 국가공인자격 취득 등 교육 총 3회 이수 필수 -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62
		꿈나래 통장	- 만 18세 이상 또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서울시 거주) -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저축하면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매칭하여 적립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 저축액의 50% 적립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63
		디딤씨앗 통장	- 일정 금액을 아동이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 - 월 5만원까지 적립(추가적립금은 매칭 없음)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www.adongcda.or.kr)	
의 료 비 지 원	KT&G 복지 재단	캥거루 의료비 지원사업	-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 (19세이상) - 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구입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KT&G 복지재단 (☎02-563-4459)	p165
		상상펀드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청소년 - 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구입비 등 최소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 통해 신청		p166
	아름다운동행 개안수술 지원 사업	저소득가정 환자	- 개안수술에 필요한 수술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 매월 2명 선정하여 지원 - 복지사업 수행단체를 통해 신청	(재)아름다운동행 (☎02-737-9595)	p167
의 료 비 지 원	아름다운재단 이른둥이 입원치료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이른둥이	- 입원치료비: 초기입원비, 재입원비 - 재활치료비: 재활의학과 진료항목, 복지관 - 지원불가: 치료, 보조기 및 사설기관 치료비 - 최대지원금 200만원 범위 내 실제 납부 금액 지원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p167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아름다운재단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서울·경기도 거주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여성 (만 19세 ~ 65세 이하)	•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참여중인 여성 장애인 • 1인 500만원 내외의 보조기기 지원(휠체어, 탑승기, 원격 도어락, 높이 조절 침대, 점자학습기 등)	
	한국여성재단	치과 진료 분야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 여성가장 및 자녀 및 활동가	• 치과진료비(교정치료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가능, 교정치료 불가) • 재단에서 연계된 치과에서만 진료 가능 • 2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및 1년 이내 일반치료 지원 받은 자 불가	한국여성재단 (☎070-5129-5446)
		일반 진료 분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자녀 및 활동가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 암 치료비: 암의 치료, 수술, 입원비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		의료소외계층,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 다문화가족 등	• 외래비·입원비: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률(50~100%) 결정 • 간병비: 온드림 희망 진료센터 지원 환자에 한해 • 진료과목: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온드림 희망진료 센터 (☎02-2002-8683)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중 치료 중이거나 예정인 자	• 국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중 현재 치료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자 • 재단 지원 치료비 100만원 + 네이버 해피빈 모금액	우천복지재단 (☎02-851-6798)
	아이들과 미래재단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00% 이내 만 18세 미만	• 의료비 1인 최대 500만원 • 수술비, 치료비 및 재활기구 구입비 • 심사를 통해 지원금 산정	아이들과미래재단 (☎02-843-8478)
여 가 지 원	아산사회 복지재단 SOS의료비지원		긴급 치료가 필요한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수술 등 긴급 치료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 1회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어려운 자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 국내 여행 및 스포츠 관람 지원금 지원(연간10만원)	문화누리 (http://www.mnuri.kr)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여행활동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서울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지역 1박 숙박 상품(조식포함) 제공 • 참가자 본인 외 가족, 지인 등 최대 1명까지 동반 가능	서울시 관광정책과 (☎02-2133-2822)
위 기 지 원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 사업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 민간기관·단체 프로그램 연계, 상담지원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서울형 긴급복지		저소득 위기가구 (코로나 상황 동안 한시적 100%)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및 기타 연료비 등 지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바보의나눔: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실질적 여성 가장이면서 비수급권자	- 만 65세 미만의 실질적 여성 가장 (차상위, 저소득층 포함 비수급권자 우선 지원)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바보의나눔재단 (☎02-727-2506~8)	p179	
	신한희망재단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위기상황 겪는 중위소득100% 이하인 가구	1가구당 최대 500만원 - 재해·재난 구호비 1인 최대 100만원, 1가구 최대 200만원 - 사례에 따라 생계주거, 교육양육, 의료비, 학대피해 지원 등으로 나눠 지원	신한희망재단 (☎02-6424-1556)		
	이랜드복지재단 인큐베이팅사업 (위기가정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 치료비: 일반치료비(수술비/입원비), 치과치료비 -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공공요금, 물품지원 - 주거비: 월임대료, 임시거주비(주거용 컨테이너), LH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주거환경개선비 - 교육비: 등록금(입학금), 급식비, 교육비 등	이랜드복지재단 (☎02-3142-1900)	p180	
	아산사회 복지재단 SOS복지지원	중위소득 80%이하인 위기가정	-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개보수비 등 - 지원비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p181	
사 회 서 비 스 지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 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 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단태아 116천원, 쌍태아 150천원 이상(인력 별 차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p18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만65세 미만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일상생활지원, 신체수발지원, 신변활동지원, 가사지 원 등 월 24시간(A형) & 월 27시간(B형) 지원		p18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의 한부모 수급 가구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저귀(월 64,000원) / 조제분유(월 86,000원) 지원		p18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 자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금액은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p185	
생 활 지 원	에너지 재단 에너지 복지 사업	저소득 난방유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 자 중 한부모가정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난방유 구입 전용 바우처 카드 가구당 최대 31만원 까지 사용 가능	한국에너지재단 (http://www.energylove.or.kr)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85
	한국 에너지 공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가능 - 납부금액 분기별 페이백 지원 1인가구 103,500원 / 2인가구 146,500원 / 3인가구 184,500원 / 4인가구 209,500원 지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서울 IT 희망나눔세상 : 사랑의 PC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 가정에게 중고 PC 보급 - 인터넷(서울시 홈페이지) 및 우편신청	사랑의 PC (☎02-2133-2892)	p186	
	각종 요금 감면	유료방송 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 서비스 이용요금 30% 감면 - 방송매체 중 선택하여 이용요금 감면	가정 내 이용 유료방송 회사	p187

항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처	비고
지원 사업	통신 요금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요금 감면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천원, 통화료 50% 감면(최대 월 33,5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천원, 통화료 35% 감면 (최대 월 21,500원)	개별통신사 대리점 (☎ 1523)		
	에너지 복지 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 열 요금 할인 - 최소 5천원 ~ 최대 1만원 (소득 차등)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		
	도시 가스 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12월 ~ 3월) : 12,000원 / 그 외 3,3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4,000원 / 6,600원 지원)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 (☎031-292-132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88	
	전기 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유공자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 한도, 하계 1.2만원 한도) - 차상위계층: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123)		
	공공 교통 요금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1인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항공(대한항공: 최대 50% 할인/아시아나: 30% 할인)	구매 시 장애인 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수도 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지자체 별도 시책으로 지역마다 상이함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89	
	구독료 지원	기초생활수급 자 및 저소득층	전국종합신문, 경제신문, 어린이신문 2종, 외국어신 문 4종, 기타 1종을 포함 총 신문 23종 및 잡지 10종	한국언론진흥재단		
1인 가구 지원 사업	4대 안심정책	서울시 거주 1인가구	-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 - 연령별, 성별,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울시 다산콜센터	p190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1인가구 누구나	1인가구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사회적 관 계망 형성 지원 - 지역 맞춤형 1인가구 프로그램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p191	
기타 지원	기초생활수급 자, 한부모가족 등	- 디지털방송시청지원사업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 가사간병방문지원 - 언어발달지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192		

I.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2

3

4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비전 및 사업계획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비전

시 비전	한부모가족의 돌봄, 성장, 미래를 함께 하는 서울	
시 센터 비전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한부모가족지원	
시 센터 슬로건	돌봄, 성장, 소통, 혁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 상담지원 체계화 ◆ 한부모가족 스마트서비스	◆ 한부모가족 서비스 총괄지원 ◆ 한부모가족 네트워크 활성화 ◆ 한부모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식개선 사업 확대 ◆ 미래지향적 한부모가족 지원 ◆ 쉽고 여가가 있는 환경조성



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걸어온 길

2009년도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수탁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위탁 운영 협약
2010년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 수탁 ○ 이영호 센터장 취임 ○ 서울시 약사회 '한부모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 만들기' 후원 협약 ○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미혼모 아기 돌잔치 행사 ○ 아산복지재단 공모사업 Miss mom Working mom 수탁
2011년도	○ 한국가족상담연구소 프로그램 연구·개발 협약 ○ 도담학교 서울시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수탁 ○ 미혼모지원단체 협의체 결성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공모전 '편견 없는 세상 만들기' 진행 ○ 제 1회 '싱글벙글' 축제 '편견 없는 세상 만들기' ○ 하이트진로 '러브캡프로젝트' 장학기금 전달식
2012년도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가족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협약 ○ 제 2회 '싱글벙글' 축제 '모양새는 달라도 행복한 가정' ○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지원 협약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3개년(2013년~2015년) 위탁 운영 협약
2013년도	○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찾아가는 검정고시' 업무 협약 ○ (재)아름다운동행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희망의동행' 사업 선정 ○ 여성가족부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공동협력사업 '한부모가정지원생활코디네이터' 사업 수탁 ○ 주민 참여 예산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사양성 및 교육' 사업 수탁 ○ 서울시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업무지원 개시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한부모가정이해교육 및 업무지원' 협약 ○ 제 3회 '싱글벙글' 축제 '모두가 행복한 가족, 축제한마당'
2014년도	○ 2014 청소년 미혼모 지원에 관한 한일연구회 심포지움 발표 - '청소년미혼모 지원에 관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활동' - ○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하는 한부모가족 따뜻한 겨울나기 온누리상품권 지원 ○ 한부모가족인식개선 홍보동영상 '빈자리 함께 채울 수 있습니다' 제작·배포 ○ 한부모당사자조직 '서울한부모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업무 협약 ○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부모가족이 꿈꾸는 서울' 열린마당 참여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5주년 사회통합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정책 포럼 개최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5주년 정책자료집 발간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 권익증진 포럼: “한부모가족의 법적·사회적 지위 - 다문화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개최 ○ 한·일 국제 포럼: “청소년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크는 사회” 국제 포럼 개최 ○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회의 ‘한부모가족 하나되기’ 개최
2015년도	○ 서울특별시-제주항공-PHR코리아, 한부모가족 꿈 리프레시여행 협약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위기 한부모가족상담 및 자원연계 업무협약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제이웨이브 업무협약 ○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한부모가족 리더 육성 및 동반성장 프로젝트 win! win!’ ○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 미혼모자녀를 위한 수면조끼 제작 직원 사회공헌 활동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민주택금융재단 한부모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사업 업무협약 ○ 모두하나대축제 진행 ○ 한부모가족 정책토론회 “한부모가족이 꿈꾸는 세상” ○ 한부모가족 권익증진 포럼: “한부모가족 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포럼” 개최 ○ 부자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최종 발표회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3개년(2016년~2018년) 위탁 운영 협약
2016년	○ 한부모가족봉사단 - 원각복지회 업무협약 ○ 싱글맘의 날 기념 캠페인 및 포럼 공동개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퇴소자 욕구파악 간담회 ○ 한부모가족 생리대 지원을 위한 (주)깨끗한나라 협약 ○ 한부모가족 국내 리프레시 희망여행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단체 더사랑 업무협약 ○ “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단행본 출판기념회 ○ “학령기 자녀 이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7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 ○ 하이트진로 이슬톡톡 1주년 기념 “여성의 꿈을 응원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 한부모가족의 생활고(Go) 양육(Go)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Go Go! 강연회 진행 ○ 서울시- (사)지혜로운여성 컨소시움 “두리모와 자녀의 키움 틀 만들기 꿈틀꿈틀” 진행 ○ 행정안전부사업 - 불교여성개발원 컨소시움 “두리모와 자녀의 키움 틀 만들기 꿈틀꿈틀” 진행 ○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정책토론회 개최 ○ 일·생활 양립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사)가사노동자협회업무 협약 ○ 한부모가족 권익증진 포럼: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개최 ○ 한·일 국제 간담회: 학령기 자녀 한부모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교류 간담회

2018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월동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따뜻한 겨울 나기’ ○ 한국-대만 국제 간담회: 한부모가족지원 교류 간담회 진행 ○ 2018 재가 양육 한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실시 ○ 일·생활균형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시행 ○ 두리모 출산축하 선물박스 “꿈틀박스” 지원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두리모·부 자녀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협약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 ○ 한부모가족 정책토론회 ‘쫄 아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진행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개선 방안 포럼 개최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토크쇼 ‘서울에서 같이 살래요’ 개최 ○ 학령기 자녀 한부모 프로그램 지원 mampan 힐링타임 케미(Chem) 캠프 진행 ○ 한부모가족 권익증진 포럼: “한부모가족에게 워라벨은 있는가?” 진행
2019년	○ 2019 한부모가족권익증진 정책토론회 ‘한부모가족과 나란히’ 진행 ○ 시민참여예산 시행: 한부모가족의 학업지원을 위한 ‘살리GO 살리GO 프로젝트’ ○ 2019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 시행 ○ 2019 시설입소자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우리 家 최고야’ 가족치유캠프 진행 ○ 일·생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시행 ○ 두리모 출산축하 선물박스 “꿈틀박스” 지원 ○ 미혼한부모의 양육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부모됨 환영식’ 진행 ○ 2019년 한·미일 서울시 복지 정책 관련 기관방문 및 복지사례 간담회 진행 ○ 2019 모두하나 대축제 ‘우리 함께 갈래?’
2020년	○ 한부모가족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프로젝트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 ○ 한부모의 시간빈곤 해결과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모두하나대축제 「우리, 함께」 진행 ○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포럼’ 개최 ○ 한부모가족 가사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생·방역 특화서비스 진행 ○ 내몸 돌봄 프로젝트 한부모가족 한방진료 지원사업
2021년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전(서울 동작구 흑석동) ○ 장애인부모가족지원사업 신규 시범시행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모두하나대축제 「우리, 함께」 진행 ○ 자녀성장지원사업 ‘찾아가는 1:1 양육솔루션’ 시행 ○ 한부모가족 사례 발표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진행 ○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사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온라인 양육교육 플랫폼’ 운영

3.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소개

주요목표	세부 추진과제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한부모가족 상담지원 체계화 ○ 한부모가족 스마트 서비스	1. 한부모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2. 한부모가족 맞춤형 정보제공
		3. 한부모가족 상담지원사업
		4. 한부모자녀성장지원
		5. 장애인부모가족지원
		6. 주거자금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 한부모가족 서비스 총괄지원 ○ 한부모가족 네트워크 활성화 ○ 한부모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	1. 한부모가족 단체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지원기관 자원연계사업
		3.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5. 한부모가족 위기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 인식개선 사업 확대 ○ 미래지향적 한부모가족 지원 ○ 심과 여가가 있는 환경조성	1. 인식개선 연대사업
		2.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3. 모두하나대축제
		4. 자원봉사운영 및 관리
		5.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6. 홍보사업
		7. 후원사업

4.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 - 세부 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1) 한부모 생활 밀착형 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1)

몰라서 못 받았던 지원들!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정보를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가 직접!
최대 10회, 한부모가족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숙련된 한부모가족 정보제공 전문가인 선배 한부모가 초기 한부모가족에게 딱 맞는 서비스가 연계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 세부내용 및 사업 특성

사업 내용	사업의 특성
한부모생활 코디네이터와 초기 한부모가족 1:1 연계	- 선배 한부모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초기 한부모에게 노하우를 제공하여 자립기간 단축 - 찾아가는 1:1 연계를 통해 정책 정서지원, 정책정보 제공, 지원 기관 동행서비스 지원 - 초기 한부모의 생애주기별, 자녀연령대별 세부적인 맞춤형 정보 제공

나) 서비스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모집기간	- 2022. 4. ~ 2022. 11. (수시모집)
지원대상	- 사회, 정책적 지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 장애인부모가족 포함
지원내용	-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1:1 연계를 통한 한부모가족 정책 정보, 자녀 양육 정보, 심리/정서적지지, 양육비 이행 정보제공 및 지원 기관 동행 서비스 지원 - 총 8회~10회기 찾아가는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 무료 지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eoulhanbumo.or.kr)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서약서, 희망서비스 욕구조사표, 자기 효능감 척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 ☎02-861-3020

1) 복지지원정보에 취약한 한부모가족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전문가입니다.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면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의 복합적인 욕구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 한부모가족 심리상담 기관 연계 및 상담 지원

구분	세부내용
모집기간	- 2022. 4. ~ 2022. 12. (수시모집)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 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 전문상담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 (방문상담) - 무료 / 1인 심리상담 최대 12회기 진행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홈페이지 신청(홈페이지: http://seoulhanbumo.or.kr) ※ 신청양식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 신청서, 상담신청서, 상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이내) 각 1부
주의사항	- 18세 이하 신청 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2회기 이상 무단 불참 및 서비스 이용 사항 미준수 시 지원 종결
문의	- ☎02-861-3020

나) 온오프라인 한부모가족 관련 상담

구 분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상담경로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http://seoulhanbumo.or.kr) 센터 홈페이지→소통마당→한부모응답소 • 싱그레 카페(https://cafe.naver.com/seoulhanbumo) - 오프라인 상담: 센터 내방, 유선 상담
문의	- ☎02-861-3020

3) 한부모 자녀성장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육에 필수적인 육아용품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명	내용						
모집기간	- 2022. 3. ~ 2022. 12. (선착순모집)						
출산축하 성장용품	- 출산축하성장용품 지원 <table border="1"> <tr> <td>대상</td><td>- 서울시 거주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td></tr> <tr> <td>내용</td><td>- 영유아 성장용품 꾸러미(유모차, 아기띠, 젖병 등) 지원</td></tr> <tr> <td>신청방법</td><td> ① 신청서 다운로드(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 팩스 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지원 </td></tr> </table>	대상	- 서울시 거주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	내용	- 영유아 성장용품 꾸러미(유모차, 아기띠, 젖병 등)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 팩스 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						
내용	- 영유아 성장용품 꾸러미(유모차, 아기띠, 젖병 등)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 팩스 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지원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	- 선택적 예방접종지원 ※ 영유아 위장관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서 출생 6개월 이내에 2회~3회에 걸쳐 예방접종 실시. 국가지원 영유아 무료 17종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료 예방접종 <table border="1"> <tr> <td>대상</td><td>-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6개월 이내 한부모</td></tr> <tr> <td>내용</td><td>-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자녀 1인당 24만원 이내 지원</td></tr> <tr> <td>신청방법</td><td> ① 신청서 다운로드(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 팩스 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지원 </td></tr> </table>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6개월 이내 한부모	내용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자녀 1인당 24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 팩스 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6개월 이내 한부모						
내용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자녀 1인당 24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 팩스 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지원						
육아용품 등 지원	- 서울시 거주 한부모 대상 육아용품, 위생용품 등 지원						

4) 장애인부모가족지원

심리·정서·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부모가족을 위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수납서비스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업명	내용	
정리수납서비스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인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수납서비스
	신청서류	- 장애인부모가족 지원사업 이용신청서(메일 내 첨부)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메일 내 첨부) 1부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각 1부 - 한부모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택1 - 수급자증명서 or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3개월 이내) 택1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hanbumo@seoul.go.kr) 접수 ③ 신청서 검토 및 지원
가사지원서비스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인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내용	- 청소, 세탁, 설거지 지원
	신청서류	- 장애인부모가족 지원사업 이용신청서(메일 내 첨부)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메일 내 첨부) 1부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각 1부 - 한부모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택1 - 수급자증명서 or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3개월 이내) 택1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hanbumo@seoul.go.kr) 접수 ③ 신청서 검토 및 지원
식생활지원서비스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인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내용	- 주1회 5일분의 반찬 지원
	신청서류	- 장애인부모가족 지원사업 이용신청서(메일 내 첨부)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메일 내 첨부) 1부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각 1부 - 한부모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택1 - 수급자증명서 or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3개월 이내) 택1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hanbumo@seoul.go.kr) 접수 ③ 신청서 검토 및 지원

5)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나는 가장이다!”

2020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출자의 90%이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이고, 신용 문제·근로 소득 없음 등으로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주거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의 후원으로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가) 세부내용 및 사업 특성

구분	내용																																		
신청 대상	-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의 가장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학 시 만 22세 이하) • 임차보증금보유기준																																		
	<table><tr><td colspan="2">수도권 (서울,경기,인천)</td><td colspan="2">광역시</td><td>그 외</td></tr><tr><td colspan="2">9,000만원 이하</td><td colspan="2">7,000만원 이하</td><td>6,000만원 이하</td></tr></table>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9,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9,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 계약일자 <table><tr><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colspan="3">2022년 일정</td></tr><tr><td>1차</td><td>2차</td><td>3차</td></tr><tr><td>대출 조건</td><td>신규/재계약 기간</td><td>2021년 11월 1일 ~ 2022년 5월 17일</td><td>2022년 1월 1일 ~ 2022년 8월 9일</td><td>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1일</td></tr></table>					구 분		2022년 일정			1차	2차	3차	대출 조건	신규/재계약 기간	2021년 11월 1일 ~ 2022년 5월 17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8월 9일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1일																	
구 분		2022년 일정																																	
		1차	2차	3차																															
대출 조건	신규/재계약 기간	2021년 11월 1일 ~ 2022년 5월 17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8월 9일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1일																															
대출 금액 및 금리	- 신규,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무이자로 대출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임차보증금 대출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 최대 3백만원)																																		
	예) 대출 가능 금액 : (신규 또는 재계약 후 임차보증금)750만원 - (기존 임차보증금)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 ⇒ 기존 계약서와 비교하여 상향된 금액 확인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로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무이자) <table><tr><td colspan="2">대출금</td><td>상환 금액</td><td colspan="2">상환기간 (최장)</td></tr><tr><td colspan="2">300만원 이하</td><td>매월 5만원</td><td colspan="2">60개월</td></tr><tr><td>300만원 초과</td><td>~ 350만원 이하</td><td>매월 6만원</td><td colspan="2">59개월</td></tr><tr><td>350만원 초과</td><td>~ 400만원 이하</td><td>매월 7만원</td><td colspan="2">58개월</td></tr><tr><td>400만원 초과</td><td>~ 450만원 이하</td><td>매월 8만원</td><td colspan="2">57개월</td></tr><tr><td>450만원 초과</td><td>~ 500만원 이하</td><td>매월 9만원</td><td colspan="2">56개월</td></tr></table>					대출금		상환 금액	상환기간 (최장)		300만원 이하		매월 5만원	60개월		30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매월 6만원	59개월		35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매월 7만원	58개월		4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매월 8만원	57개월		4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매월 9만원	56개월	
	대출금		상환 금액	상환기간 (최장)																															
	300만원 이하		매월 5만원	60개월																															
	30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매월 6만원	59개월																															
	35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매월 7만원	58개월																															
	4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매월 8만원	57개월																															
	4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매월 9만원	56개월																															
대출조건	- 일정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기존보다 상향되어야 함																																		

구분	내용
대출 불가 세대	- 아래 6가지 중 1가지 이상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등 부동산 소유자 •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민법상 대출 불가) •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신용관리대상자(개인회생, 파산 등)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 두 조건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지급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 (개인별 신청 일자 기준) 성실상환 중인 세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나) 사업 일정

구분	2022년 일정		
	1차	2차	3차
신청서류접수	3/28(월)~4/11(월)	6/7(화)~6/24(금)	8/29(월)~9/16(금)
최종심사 대상자 발표	4/28(목)	7/14(목)	10/6(목)
약정서류 접수	대상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지		
대출금 입금	5월 중	8월 중	11월 중

다) 신청 방법

구분		구비서류	작성요령
필수 서류	신청 기관	- 서식1. 신청기관 신청서(한글)	- 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필수)
필수 서류	신청 자	-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각 1부	
		- 현재 거주지 임대계약서 사본 -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기존 거주지 계약서(사본) ② (확정일자 받은)신규 거주지 계약서(사본)	- 무상임차: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 시설거주자: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구분		구비서류		작성요령
		소득 증빙 서류 (택1)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50%이하)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3. 기준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 제출
해 당 자	신 청 자	★ 심사 평가 가점부여	- 청소년 한부모	
			- 다자녀(3명 이상) 양육	
			- 비주택거주자 (시설·고시원·비닐하우스·쪽방 등)	
			- 원룸 거주	
			- 노약자(만65세이상)·영유아(만5세이하)· 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1부 필요
	신용회복 대 상 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 신용회복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라) 대출 진행 기본 원칙

심사 원칙	-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
대출 사업 원칙	-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형평성 고려)
협력지원의 원칙	-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개인신청 불가) -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신청기관 -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약정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취합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야 함 - 신청자의 개인 정보(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가 변경될 경우, 본 센터로 전달해야 함 -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출지급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함

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1)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성장과 학교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정서적 압박과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프로그램 보급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운영장소	-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수행기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 프로그램 전문 강사 파견, 총 285명 지원

나)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수행기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기획 -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체계구축 -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간담·평가회

2)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모임은 없을까? 많이 궁금하셨죠!

한부모가족 지원정보를 공유하고 문화·교육·봉사활동으로 함께 성장하는 활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조모임을 소개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동네 자조모임을 찾아보세요!

우리동네 자조모임 알아보기!

우리센터 홈페이지접속
(www.seoulhanbumo.or.kr)



자조모임 운영기관 확인
(알림마당 → 공지사항)



운영기관 문의전화
후 가입신청

연번	자치구	자조모임	운영기관	전화번호
1	강동구	맘스트롱	성내종합사회복지관	☎070-4238-1153
2	강서구	리스타트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02-2600-8600

연번	자치구	자조모임	운영기관	전화번호
3	구로구	푸른나무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02-838-5679
4	구로구	창신마더스	창신모자원	☎02-2612-7142
5	구로구	마더 (마음을더하는가족)	공동종합사회복지관	☎070-4008-2215
6	노원구	마당발 (마주한당신의발전을위하여)	노원구가족센터	☎070-4613-0630
7	도봉구	열린mom	도봉구가족센터	☎02-995-6800 (내선번호206)
8	도봉구	따로 또 같이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9	동대문구	소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02-920-4500
10	동작구	꽃보다 아름다워	동작종합사회복지관	☎02-6298-8126
11	성동구	원더우먼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02-2038-9998
12	성북구	해피투게더	월곡종합사회복지관	☎070-4825-3812
13	송파구	굿맘	송파구가족센터	☎070-7457-3856
14	양천구	나나랜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02-2651-2332
15	양천구	들꽃	신정종합사회복지관	☎070-5167-1460
16	은평구	수고했어, Me(美)	은평지역자활센터	☎02-307-1186
17	은평구	힐링타임	녹번종합사회복지관	☎070-4441-1318
18	은평구	당당하게 날다	은평구가족센터	☎070-7492-5223
19	종로구	좋은벗	(사)지혜로운 여성	☎02-722-2110
20	종로구	글로벌프렌즈	(사)참여성노동복지터	☎02-744-4010
21	중랑구	봄봄가족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70-7011-1028
22	중랑구	당당맘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23	중랑구	우리잘할수있어요!	생각나무BB센터	☎02-2208-0130

3) 한부모가족 위지원사업

우리 주변에는 미처 돌아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위기상황 극복 기반을 마련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모집기간	- 2022. 3. ~ 2022. 12. (수시모집)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 -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내·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 지원
신청방법	- 센터 내 이용자 대상 신청 - 위기상황 파악 및 확인 후 지원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문의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다.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1)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연대사업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다름을 존중 할 수 있는 긍정적 인식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일반시민, 한부모가족, 당사자조직, 자조모임, 유관기관 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 대한 올바른 자료제공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지원방법	-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SNS · 센터 홈페이지 · 지하철역 등)
홈페이지	- www.seoulhanbumo.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eoulhanbumo090602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eoulhanbumo_official/

2)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아직까지도 사회에 공공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전문적인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가) 세부내용 및 사업 특성

사업 내용	사업의 특성
한부모가족 정보제공	- 한부모가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인식되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확보 및 역량강화 - 피교육자 집단 수준에 맞는 세분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작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시민, 공무원, 교사 등)

나) 이해교육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유치원생, 초·중등학생, 일반시민, 공무원 등
지원내용	- 대상자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해 교육
교육장소	- 교육 신청기관 장소 ※ 찾아가는 교육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될 수 있음)
교육강사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소속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전문강사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강사연계 → 이해교육 실시

3) 모두하나대축제

한부모가족, 자녀, 이웃,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의 장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올바른 정보제공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확산 및 통합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자리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기간	- 2022년 5월 9일 ~ 2022년 5월 13일 (예정)
내용	- 한부모가족의 날 축하 캠페인 - 모두하나대축제 특별이벤트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 코로나19 시대 지쳐있는 한부모님들을 위한 문화 힐링콘서트

4)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한부모는 특성상 부 또는 모의 역할 부재에서 비롯된 어려움으로 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과 시간 빈곤으로 스트레스, 역할과중에 따른 피로감을 느낍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정, 시간빈곤을 해소하여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세부내용 및 사업 특성

사업 내용	사업의 특성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연계	- 한부모의 취업·학업·돌봄 등으로 일·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사서비스 지원을 통해 해소 - 가사서비스 전문 제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유경력의 전문 가사관리사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 -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사서비스의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

나)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 2022년 3월 ~ 11월 (수시모집)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한부모가정 중 아래 조건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가정 < 조건 > • 취업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정 •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으로 가사가 어려운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청소, 세탁, 설거지 (월 4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1회당 4시간(30분 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 이용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이용자부담금 + 서울시 보조금 매칭)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이용요금</th></tr><tr><th>보조금</th><th>본인 부담금</th><th>총액</th></tr><tr><td>A형 (중위소득 52% 이하)</td><td>55,000원</td><td>무료</td><td>55,000원</td></tr><tr><td>B형 (중위소득 80% 이하)</td><td>47,000원</td><td>8,000원</td><td>55,000원</td></tr><tr><td>C형 (중위소득 120% 이하)</td><td>45,000원</td><td>10,000원</td><td>55,000원</td></tr></table>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30평 이상일 경우 서비스 범위 또는 시간 선택하여 제공	구분	이용요금			보조금	본인 부담금	총액	A형 (중위소득 52% 이하)	55,000원	무료	55,000원	B형 (중위소득 80% 이하)	47,000원	8,000원	55,000원	C형 (중위소득 120% 이하)	45,000원	10,000원	55,000원
구분	이용요금																			
	보조금	본인 부담금	총액																	
A형 (중위소득 52% 이하)	55,000원	무료	55,000원																	
B형 (중위소득 80% 이하)	47,000원	8,000원	55,000원																	
C형 (중위소득 120% 이하)	45,000원	10,000원	55,000원																	

신청방법	- 신청서, 공통, 조건증빙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pc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신청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클릭 - 해당사항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홈페이지 주소: http://seoulhanbumo.or.kr
제출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자료, 소득증명자료 - 조건 증빙 서류(해당되는 서류 1가지만 제출)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해당사항 증빙서류
문의	- ☎02-861-3012

5) 후원

구분	세부내용						
개인 후원	- 후원 종류 <table border="1"> <tr> <td>정기후원</td><td>-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 후원</td></tr> <tr> <td>일시후원</td><td>- 한부모가족을 위한 비정기적 1회 후원</td></tr> </table> - 후원 참여 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 접속(www.seoulhanbumo.or.kr) → 후원/자원봉사 → 후원안내 → 화면하단 일시/정기후원하기 ② 후원금 전용 계좌: 신한은행 140-012-644295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정기후원	-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 후원	일시후원	- 한부모가족을 위한 비정기적 1회 후원		
정기후원	-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된 금액 후원						
일시후원	- 한부모가족을 위한 비정기적 1회 후원						
기업후원	- 후원 종류 <table border="1"> <tr> <td>기금후원</td><td>- 기업기부(수익금 일부 기부), - 임직원기부(급여 일부 기부) 등을 통한 기금 후원</td></tr> <tr> <td>기부물품 후원</td><td>- 생활용품, 양육용품 등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물품 후원</td></tr> <tr> <td>나눔 후원</td><td>-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여행 지원 - 한부모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형태의 나눔 후원</td></tr> </table> - 후원 참여 방법: 후원 상담 → 후원 제안 및 협의 → 후원 확정 및 협약 → 후원(기부증서 발급)	기금후원	- 기업기부(수익금 일부 기부), - 임직원기부(급여 일부 기부) 등을 통한 기금 후원	기부물품 후원	- 생활용품, 양육용품 등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물품 후원	나눔 후원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여행 지원 - 한부모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형태의 나눔 후원
기금후원	- 기업기부(수익금 일부 기부), - 임직원기부(급여 일부 기부) 등을 통한 기금 후원						
기부물품 후원	- 생활용품, 양육용품 등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물품 후원						
나눔 후원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여행 지원 - 한부모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형태의 나눔 후원						

한부모가족의 후원자가 되시면 모든 후원금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88조의 4 및 법인세법 제24조)

II. 저소득

○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 1
- 2
- 3
- 4



II.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2)

◆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서 부모 중 한명이 사망·이혼·유기·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법정한부모)

가.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의미
-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함

1)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³⁾된 자
- ② 정신,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 배우자를 가진 자
 -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지원 가구에 포함하여 보호
-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⁴⁾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미혼부로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
-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배우자의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⁵⁾
-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자(입소확인서 및 사실 확인)⁶⁾
-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일반 현역복무 및 1년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⁷⁾
-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교도소, 보호감호시설 등 6개월 이상 수형)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형 확정 전 미결수로서 6개월 이상 수감중인 경우, 입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

2) 여성가족부(2022).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뜻함

4)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 자

5) 2011년부터는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한 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조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시 지원하며 시설입소자는 가구 특례로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퇴소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는 지원중단, 시설퇴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친지·지인 집에 거주하는 등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생활할 경우 보장

7)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중인 경우는 제외

-
-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①~⑦의 조건을 갖춘 자(③제외)
- '21.04.21부터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2) 조손가족의 “(외)조모” 또는 “(외)조부”의 범위

- ①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 ②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 ③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지원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⁹⁾

3)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①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연령기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적용: 만 2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 (지원 만료기준) 만 나이를 적용하므로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의 범위

- ① 기본원칙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함
- 다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지원함
 - 연령초과 자녀를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하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하여야 함에 유의(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자 제외)

8)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9)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② 연령산정 기준: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
- **2022년** 지원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단, 만 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 만 22세 미만: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 ※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까지이며, 만 18세를 초과할 경우 지원 자격은 보장하되, 아동양육비는 지원하지 않음에 유의

③ 선정 시 유의사항

- 만 18세를 초과한 경우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 ※ 대학 입학예정자: 등록금 납입증명서로 지원 → 입학 후 재학증명서 보완
-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 휴학한 경우
 - 휴·복학 여부 상관없이 만 22세 생일 도래하는 달 전달까지 지원
-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 군복무 중인 경우
 -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 지원
 - 군복무 중 만 22세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중지
→ 복학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하되 최대 만 25세 생일 전달까지 지원 연장
- 유학, 교환학생, 해외연수 등을 나가는 경우
 -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유지 및 연령초과 전까지 양육비 등 지원(초·중·고교생)
 - 연령초과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대학생)
 - ※ 미취학 아동이 치료 등 특정 목적 없이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할 경우 지원 중지
 -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미취학이라도 초등학생에 준하여 지원 가능

5) 지원 대상 가구 및 가구원 선정 시 유의사항

- ◆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별도가구로 보장
 - 지원가구원: 한부모가족의 모(부)와 자녀만 해당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도 소득, 재산은 해당자인 한부모 가구만 파악
- ◆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동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간주하여 지원가구로 선정 가능
 -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함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는 경우

- 양육 부모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취업훈련 또는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세대가 다른 경우
- 가정폭력시설 입소 중이거나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 세대는 다르나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자녀가 재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에 입소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나.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1) 지원 단위

- ◆ 단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 단위로 선정
- ◆ 급여 지급 단위 및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내용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	가구 단위	- 생활보조금
	개인 단위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가구 단위	-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개인 단위	- 아동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2) 복지급여

①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2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 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③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원칙: 한부모가구(청소년 한부모 및 조손포함)는 별도가구로 보장 →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고려해야 함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가 있더라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함
 -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함
- 연령 초과 자녀를 지원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해당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수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조손가구 선정 시 부양의무자인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어야 함

3)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조손가구 선정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토지, 실거주용 주택 제외) -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적용 - 장기간 경제능력 상실한 경우 : 가구원 수 산정 → 양쪽 부모 모두 있더라도 1인으로 함 : 소득인정액 확인 →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 재산 합산하여 확인함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 가산한 연령 미만) -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 : 자녀의 소득, 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 : 가출, 행방불명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제외 - 결혼한 자녀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의 소득, 재산 합산(생계, 주거 함께 하는 지 여부 무관) (단, 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파악한 경우, 사실 조사 복명서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 -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 : 미포함 자녀의 소득, 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재산으로 처리함
배우자 사별 군복무, 복역 등으로 한부모가족 선정된 가구	-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 가구원으로 포함. 배우자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하여 처리 - 다음의 경우 배우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원 수 미포함 : 군복무 중인 배우자 :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 장기복역중인 배우자 (단,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재산으로 처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 이 발생한 경우 ->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처리(부양비 미적용) - 대상: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권)자 가구 - 내용: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지원가구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 적용기한: 취/창업자녀의 만18세(2004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35 세(1987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복수의 취·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4) 지원대상 가구원 포함 및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여부

구분		지원대상 포함여부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수 포함여부	소득재산 파악여부
모 또는 부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	○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	○
	- 조손가족의 (외)조부 또는 (외)조모	○	○	○
배우 자	- 정신·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	○	○
	- 군복무 중인 배우자	X	X	해당 배우자의 재산· 소득을 한부모가족이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배우자	X	X	

	- 장기복역중인 배우자 (교도소, 구치소 등에 6개월 이상 수형중일 경우)	X	X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으로 처리
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	○	○	○
	- 대학 등에 취학한 만 22세 미만 자녀가 휴학하고 군복무 중인 경우	○	○	○
	- 대학 등에 취학한 만 22세 미만 자녀가 휴학중인 경우	○	○	○
	-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연령초과 자녀 • 만 18세 이상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병역의무기간 가산연령 초과 (주거, 생계 같이하는지 여부 무관)	X	○	○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녀 중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	X	X	해당 자녀의 재산·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으로 처리
	- 연령초과 자녀가 가출, 행방불명인 경우 - 미혼의 연령초과 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경우 - 결혼한 자녀 - 소년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자녀	X	X	
기타	- 주거, 생계를 함께하는 모 또는 부의 부모, 형제자매	X	X	해당 대상자의 재산·소득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으로 처리 (주거, 무료임차 제외)
	- 실종신고 후 30일이 지난 모 또는 부, 자녀 등 대상자	X	X	

5) 소득 산정 기준

(1) 소득 평가액(실제소득) 산정

-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2)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의 평균 소득(금액)' 반영
 - 기타 사업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일용근로자소득: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월부터 변경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 산정
(예: 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및 휴·복직, 폐업 등)
- 그 외의 소득은 전월 소득 반영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3) 실제 소득 산정 시 포함 또는 제외하는 소득(금품)

실제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제외)
실제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금품	
정기 지급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재산으로 산정)	-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자녀장려금)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장학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교육 부대비용 3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 산정) - 다음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으로 명기된 경우 • 금품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 부담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 (중고생 교복비, 동절기 난방비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 :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재활보조금 - 질병요인으로 인한 금품 : 만성질환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회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기, 대여료 등 -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입양양육 보조금, 소년소녀가장 부가급여, 농어민가구의 보육시설 자부담 15만원 이내)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하나의 항목 적용 • 근로·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1년 6회 미만 사전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혹은 친인척의 '월별 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금액 - 국민연금 수급자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이 근로·사업소득에서 본인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해당 금액

(4)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재산의 소득 환산 결과 “-” 값은 불인정(이 경우 0원 처리)

(4)-1 재산의 종류

※ 재산 종류 및 산정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세부항목
일반 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임차보증금 (주거용 이외)	-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 항목		세부항목						
	선박, 항공기	- 선박(모든 배) 및 항공기(비행기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동산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 및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 포함 (외 건설기계: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						
	임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 등(산림목, 유실수)						
	어업권	- 양식어업, 공동어업 등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각종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주거용 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률(0.95)) -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적용한도 - 아래 한도액까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초과 시 일반재산으로 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도시</th><th>중소도시</th><th>농어촌</th></tr> </thead> <tbody> <tr> <td>1억 2,000만원</td><td>9,000만원</td><td>5,200만원</td></tr> </tbody> </table> ■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 ■ 중소도시의 수급권자가 1억원 주택 보유 시 - 적용한도 9,000만원 초과하는 1,000만원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남은 주거용 재산 9,000만원 중 4,200만원은 기본공제액으로 차감 - 차액 4,800만원 =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 주거용재산 환산율 : 월 1.04% 적용 ※ 부양의무자(조손가족에 한함)는 상기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적용한도 구분 없이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 2,000만원	9,000만원	5,200만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 2,000만원	9,000만원	5,200만원						
금융재산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3개월 내 평균 잔액 및 입금 총액 -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적금 등):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펀드 등: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재산 항목	세부항목						
자동차	<table><tr><th>유형</th><th>세부내용</th></tr><tr><td>장애인 사용자동차</td><td> -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직접적 이동수단 • 본인 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을 시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가능 </td></tr><tr><td>생업용자동차</td><td>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없을 시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운반, 농어업,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 또는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 - 생업용 판단 어려울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td></tr></table>	유형	세부내용	장애인 사용자동차	-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직접적 이동수단 • 본인 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을 시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가능	생업용자동차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없을 시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운반, 농어업,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 또는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 - 생업용 판단 어려울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유형	세부내용					
장애인 사용자동차	-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직접적 이동수단 • 본인 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을 시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가능						
생업용자동차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없을 시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운반, 농어업,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 또는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 - 생업용 판단 어려울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재산 감소 등)한 경우 -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기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4)-2 재산의 산정가액

재산 항목	산정가액
일반 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주거용 이외) -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족, 종묘 등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주택부속토지가 인정범위 이내일 경우 주거용 재산으로 환산
금융재산	-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기관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4)-3 기본재산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환산 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공제방식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
 -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4)-4 부채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에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종류 및 차감 범위

종류	차감금액
임대보증금	전액
금융회사 대출금	전액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전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미소금융재단, 캠프, 해피타트)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 차감 (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개인 간 부채(사채)	

- 차감되지 않는 부채
 - 임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 채무자인 경우만 차감)
 - 당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로 및 1년 이내의 단기간 어음할인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외에 모든 개인 간 부채
- 부채 차감 순서
 - 1순위 주거용 재산 → 2순위 일반재산 → 3순위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
 - 차감 후 부채 잔액이 남더라도 자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4)-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 종류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조손가족)	월 1.04%	월 2.08%		

다. 신청절차

◆ 신청권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필요 시)
공통 (한부모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 한함)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 (해당가구 한함) - 유전자검사결과(해당가구 한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공통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선택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활동 증빙서류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 선정 전 신청시: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선정 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신청서 (개인→시군구)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등	- 고교 재학증명서

◆ 신청 시 안내사항

구분	안내사항
처리기한	- 30일 (특별 사유 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통지방법	- 서면통지 원칙 -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전화, 메일, 문자로 통지 가능
신고의무	- 한부모가족 지원자격 유지에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필수) -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자격 중지, 환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신고에 따른 조사 시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 각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 강화	- 혼인관계자 자격 정비 소요기간 및 실시주기 단축 • ('14년) 연 1회 → ('15년) 연 2회 → ('16년) 연 4회 -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시도에서 상시 관리, 정기 점검 및 보고(연 4회)

라. 2022년도 급여 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구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 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0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급여

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 (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1년 이상 지원 가능)
지원액	월 35만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차액으로 15만원만 지급)	연 154만원 이내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3)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단, 아동양육비는 지급가능 - 21. 4. 21. 시행)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마.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① 지원대상 가구

Q. 자녀가 연령을 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하여 모 또는 부만 가구원으로 남을 경우 지원가능 여부

A. 1인 단독가구인 경우는 한부모가족 성립이 불가함.
남아 있는 가구원 수가 2인 이상(부 또는 모와 자녀)일 경우만 선정 가능함

Q.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던 중, 한부모인 모 또는 부가 교도소, 구치고, 지원감호시설 등에 복역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

A. 6개월 이상 복역 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 중지함
다만, 6개월 미만 복역할 경우 계속지원 가능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여부는 판결로도 가능)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공부상 나타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경우

A. 1차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 확인) → 방문조사(사실혼 관계 아님을 확인) → 최종 확인(출생증명서 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함 (※출생증명서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음)

Q.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 집에 거주할 경우 고모와 아동을 한부모가족으로 보장 가능한지 여부

- A. 지원 불가. 모자, 부자가구가 대상이며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함.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한부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조손(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인 아동 양육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함.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국기초상의 수급권자 가능)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Q.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가 부자가구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자녀 1명만 시골의 조모에게 보낸 경우, 한부모가구 지원과 동시에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

- A. 부의 경제적 능력 상실에 의해 아동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의 소득인정액 파악 결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고, 조모의 소득인정액을(※ 주택과 토지 제외) 조사하여 기준 내일 경우 선정 가능함

Q. 주민등록 상 자녀가 세대주이고 모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모자가정 선정 가능 여부

- A. 지원 가능.
실질적으로 모가 보호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이므로 세대주 등재 여부 관계없이 가능함

Q. 모자가족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웃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지원 여부

- A. 사실확인 후 지원중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동일 보장 가구원 에 포함되므로 한부모가족이 성립되지 않음

Q. 거주불명등록자(구 주민등록 말소자)인 부 또는 모가 실거주지에서 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 A. 지원불가.
거주불명등록자인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자녀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지에서 지원 가능함

Q. 모 또는 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한부모 가족의 선정 여부

- A. 지원가능. 모 또는 부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 선정 가능함

Q. 모자가정 신청인의 모가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녀가 조부모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 A.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 모자가구로 선정 가능함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되면 조손가구로 지원 가능함

Q. 미혼부가 출생신고 안 된 자녀와 함께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A. 지원 가능. 출생신고 전이라도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가능. 또한 동 지침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단,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부인되어 소가 기각될 경우 기 지급된 복지급여가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② 대상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

Q. 3인 가구 모자가정의 첫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채 만 18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첫째 아이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모와 연령초과 전 자녀)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A. 지원 가능.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도 포함해야 함

Q.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전 배우자의 자녀와 신청인 본인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맨 앞의 배우자≠전 배우자)

- A. 가족관계등록 상 모자 또는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연령기준을 초과하여 주소, 세대를 함께하고 있어도 신청인과 신청인 본인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Q.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던 중,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가 소년원에 복역 중인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A. 지원 중지. 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지원 중지. 다만, 출소 후 지원 가능함

Q. 첫째 아이가 현재 만 20세이며 대학 취학 중이나, 혼인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지원가능 여부

- A. 지원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므로,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 단, 연령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 중지

Q.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중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기존 구성원에 새로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여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A. 아이의 친부가 불명확한 경우로 한부모라는 요건을 유지 시에는 가능. 그러나, 사실혼 관계하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아이의 친부가 전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함(신규의 경우에도 동일)

③ 실질적 양육

Q.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父(母)가 직업 상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자녀 3명을 모두 24시간 보육 시설에 입소시킨 후 보육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몇 개월에 한번 씩 면담을 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여부

- A. 지원가능. 한부모가족의 특성 상 경제활동과 영·유아 양육을 겸할 수 없는 사정이 대다수이고 父가 직접 보육시설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면담을 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양육의 연장선으로 보아 선정 가능함

Q. 모자가정으로 지원 중 첫째 아이가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소재지로 주민등록 상 주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A.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 목적(특목고, 예술고, 외국어고, 실업계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소 이전을 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함
동일한 취지로 고등학교 외 대학, 중학교(운동 특기생 등) 진학 및 재학을 위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Q.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여 모와 주거,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나, 규정 상 시설로 주소이전이 금지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는 모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 모자가정 선정 여부

A. 지원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특성 상 주소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녀가 동 시설에 입소한 사실만으로 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정 가능함

Q.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권을 지정받아 실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전 남편이母的 주소로 자녀가 주소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여 주민등록상 모와 자녀가 별개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 선정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이혼 완료 여부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로 자녀 양육함을 확인한 후 선정 가능함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지원하며, 급여도 동 기관에서 지급함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가정 선정 가능 여부

A. 지원가능.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지원 가능함

④ 소득산정 시 유의사항

Q. 한부모가족 신청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반드시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음.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해당 가구만을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Q. 모자가정 신청과 관련하여 이혼 후 현재까지 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소득산정 가구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A. 이혼 후 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부자가정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모자가정의 소득산정 가구원, 지원대상 가구원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혼 후 친자녀를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지 않으면 그 자녀가 미혼이더라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산정 가구원에서 제외됨

⑤ 이혼 및 사실혼 등 혼인관계

Q. 신청인이 장기간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종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접수증만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해 줄 것을 주장할 경우

A. 지원불가. 이혼 소송 중일지라도 향후 소송 결과 여부는 신청인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 성립 후 재신청할 것을 안내하도록 함

Q.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을 근거로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 A. 지원 불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협의이혼 시에는 '확인서 등본'을 확인하고, '확인서 등본'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공부상 정리여부를 확인해야 함. 재판이혼 시에는 '판결문'을 확인하되, 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 확인 불필요함

Q.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혼 판결문만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 여부

- A. 지원 가능. 공부 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 가능함

Q.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주소는 배우자와 같이 되어 있고 실제 생활은 다른 주소지에서 자녀와 함께 하고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

-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접근금지의 종류가 2가지 있음

A-1. 동법 제 29조에 의한 임시조치결정¹⁰⁾으로서의 접근금지일 경우

- 재판 회부나 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되기 전 최장 6개월의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가정 해체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없음
-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5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 필요(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A-2. 동법 제40조에 의한 보호처분 결정¹¹⁾의 접근금지일 경우

-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최종결정. 이혼에 의한 가정 해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보호처분의 기간 완료 전후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보호처분 결정문'을 첨부하여 선정할 수 있음

Q.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여부

-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 불가. 대법원 판례(대법원1995.3.28.선고 94므 1584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실상의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신청 접수 기관에서 위 판례를 참조하여 사실조사 후 복명하여 판단해야 함

⑥ 배우자의 유기 관련

Q. 장기간 별거를 '배우자 유기'로 인정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지원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A.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됨(대법원 판례)
- A-1. 장기간 별거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부양, 협조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적, 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 신청이 이뤄져야 함. 단순히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정 요건으로 부족함
- 다음 구비서류를 충족할 경우 관할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될 수 있음

※ 관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서, 사실확인서 2부_친족 1, 이웃주민등 1, 이혼소송자료, 실종신고서(해당자만 제출) 등 공적 자료

Q. 모와 남편 사이에 아이 셋을 낳았는데 큰 자녀만 신청자인 모와 함께 살고 나머지 두 자녀는 남편이 외도한(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유기 판단 여부

A. 남편의 외도만으로는 유기라고 볼 수 없음.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가족관계 단절되고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임. 가족일에 협조하면 유기에 해당되지 않음

Q. 남편은 지방으로 다니며 건축일을 하여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 경우 유기 해당 여부

A.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고의로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됨

⑦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가구 구성원

Q. 외국인이 국적 취득 후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였으나 본국에 연령을 초과한 전 남편의 자녀가 있을 경우 선정 가능 여부

A. 지원가능함.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함. 위의 경우, 본국에 있는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본국의 전 남편의 자녀와 한국에서 함께 거주(※귀화하기 전)하고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Q. 외국인이 국적 취득 후 모자가정으로 지원받는 중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본국 전 남편의 자녀가 얼마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 상 母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자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여부

A. 지원 가능함. 위 자녀는 “母의 한국국적취득에 의한 자업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임. 특별귀화자는 별도로 법원으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귀화 당시 제출한 서류에 의해 자동으로 법원으로 자료가 송부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고 있음. 또한 母와 자가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함

Q. 한국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낳은 후, 외국인 여성이 무단 가출 후 본국으로 귀국하였을 경우, 귀국 사실만 확인되고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A. 지원 불가능. 다만, 이혼판결을 통해 가족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가능함

Q. 외국인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후 동거남과 헤어졌을

- 10) 동법 제 29조 임시조치 결정 ①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예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예의 유치
- 11) 동법 제 40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②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지원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⑤ 지원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예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예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예의 상담위탁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A. 지원 불가능.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임

Q.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이후 이혼하여 외국인 여성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중에 자녀 교육을 이유로 본국의 친척에게 보낸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신청하였을 경우 모자가정 선정 여부

- A. 지원 가능함. 학업을 목적으로 한 초,중, 고 자녀의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녀 취학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수 있음

Q.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낳은 자녀와 함께 한부모가족 신청했을 때 선정 여부

- A. 지원가능함. 북한주민이 귀순하는 경우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정할 수 있음

⑧ 자녀의 취학 관련

Q. 첫째 아이가 만 19세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재학 중이며 일반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할 경우

- A. 지원가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Q. 노동부 허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나 간호학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취학으로 간주하여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 A. 지원불가능. "취학"이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지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하는 경우에 한함. 노동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음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 아이가 만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 A. 지원가능함.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 전까지 지원가구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함.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할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Q.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중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연령초과로 중지되었다가 재수 후 대학을 입학한 경우 재책정 가능 여부

- A. 지원가능함.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가구에 포함하여 지원가능함.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Q. 만 18세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를 수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

- A. 지원가능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한 학교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어, 만 22세 미만 자녀인 경우 취학 중인 것으로 보고 지원대상 선정 가능함

⑨ 해외체류 관련

Q. (해외체류 관련) 보장가구의 모 또는 부가 해외에 출국하여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장을 중지하였는데 입국 후에 재신청 가능한지 여부

- A. 신청 가능함.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는 현재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므로 보장결정일 현재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과거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다만, 외국에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여 보장중지대상이었으나 확인되지 않아 과지급된 급여는 환수 대상임

Q. (해외체류 관련) 부 또는 모가 직장에서 외국 파견 근무 중으로 최근 6개월간 통상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중지대상인지?

- A. 중지대상임. 여행가이드 등 해외체류 직종에도 적용함. 다만, 부 또는 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해당사항을 증명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장기해외체류
 - 아동에 대한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아동 의식주 비용 등의 양육비 송금 내역)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2) 소득·재산 조사 관련

Q.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영업사원 등 총 수입액 중 상당 부분을 고객유치 비용으로 지출하는 직업군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공제해야하는지 여부

- A.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맨, 화장품, 식습지 등)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기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조사를 할 때는 사업소득 금액으로 확인함.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개인, 사업 명칭 동일))
※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 필요경비 = 사업소득]이 됨

Q.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영업사원 등 총 수입액 중 상당 부분을 고객유치 비용으로 지출하는 직업군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공제해야하는지 여부

- A.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맨, 화장품, 식습지 등)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기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조사를 할 때는 사업소득 금액으로 확인함.
(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개인, 사업 명칭 동일))
※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 필요경비 = 사업소득]이 됨

Q. 소득재산 조사 시 리스차량에 대한 재산 반영 기준

- A. 자동차는 재산으로서 차량가액을 반영*하고 대출은 부채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해당차량을 수익하지 않음이 확인** 되면 보증금만 일반재산으로 반영(부채는 미반영)
- * 리스 계약서 상 차량가액을 100% 반영하고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해수)에 따른 감가 미적용
- ** 수급자가 리스 계약을 했으나, 타인이 월 리스료를 부담하며 차량운행

Q.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 처분 시 사망자 명의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해당 부채를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A. 원칙적으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는 본인명의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사망자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상환의 경우 개인간부채 등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를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함

Q. 이혼 과정에서 전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은 재산을 이혼 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전 해당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전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해당 부채를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A. 원칙적으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는 본인명의로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나,
-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등을 공제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재산 처분을 통해 전배우자의 부채를 상환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전배우자 명의의 대출 상환액 공제 가능함
* 단, 개인 간 부채 등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의 경우 공제 불가

Q.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이혼 과정에서 전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을 본인 소비분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 A.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은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음

3) 복지급여의 실시

Q. 부자가족으로서 국기초상의 수급자로 선정·지원을 받고 있는 부가 만 10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및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여부

- A. 기본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의 종류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 결정됨. 생계 급여의 경우 중복 지급 불가하며,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시에는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 가능. 다만, 지원받는 생계급여보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더 많을 경우, 더 많이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선택 가능
단, '21.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지원이 가능함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와 타 복지급여 중복지원 관련

- A.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에 따라 급여항목에 따라 생계급여, 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교육급여, 장애인 교육비 지원, 교육지원 등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며 고시의 중복지급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원목적과 내용이 중복지급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지원과 동일한 지원인 경우 중복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단, '21.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지원이 가능함

4) 기타

Q.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이 신설되었는데 별도 지원 사항이 있는지 여부

- A. 별도 예산 없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이나 복지부 국가무료검진과 연계하여 검진을 안내해야 함

Q. 공공시설에 매점, 시설 설치 및 구체적인 처리 기준 등 관련

- A.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2. 권역별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사업 - 미혼모 · 부 초기지원

- ◆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 ◆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 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자가족																												
지원절차		① 거점기관 담당자 상담 → ② 사례회의 → ③ 대상자 선정 ↓ 서비스지원																												
지 원 내 용	정서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미혼모·부 부모상담, 정서지원, 생활 정보 상담 등)																												
	출산 및 양육지원	- 대상: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2% 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table><tr><th rowspan="2">가구원수</th><th rowspan="2">기준중위소득 72%</th><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th></tr><tr><th>직장</th><th>지역</th><th>혼합</th></tr><tr><td>2인</td><td>2,347,000</td><td>82,112</td><td>36,122</td><td>82,960</td></tr><tr><td>3인</td><td>3,020,000</td><td>106,369</td><td>85,879</td><td>107,444</td></tr><tr><td>4인</td><td>3,687,000</td><td>128,885</td><td>120,425</td><td>130,090</td></tr><tr><td>5인</td><td>4,338,000</td><td>153,343</td><td>151,567</td><td>155,173</td></tr></table>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347,000	82,112	36,122	82,960	3인	3,020,000	106,369	85,879	107,444	4인	3,687,000	128,885	120,425	130,090	5인	4,338,000	153,343	151,567	155,173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347,000	82,112	36,122	82,960																									
	3인	3,020,000	106,369	85,879	107,444																									
	4인	3,687,000	128,885	120,425	130,090																									
5인	4,338,000	153,343	151,567	155,173																										
	- 내용: 출산비 및 긴급의료비, 자녀양육용품																													
	- 지원액: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원 지원 가능 • 양육용품의 경우 1회 10만원 이하 지원 • 자녀가 12개월 이하인 경우, 범위 내에서 연간 30만원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실비지원)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산전 후 관리교육, 부모교육, 경제 및 법률 교육, 자녀와 놀이활동																													
자조모임 운영지원	- 자립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 1인당 지원한도액 2만원 이내, 모임 1회당 30만원 이내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	- 미혼모·부의 양육에 관련한 법률,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출생신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문제, 친부확인 절차 등) -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검정고시 준비, 취미교육 등 교육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 사업수행기관: 전국 17개소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75, 4층	02-861-3020
서울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구.나녀우리한가족센터)	서울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02-704-4750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부산 서구 감천로 229, 1층	051-253-5235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30, 5~6층	053-355-8042
인천	인천계양구건강가정 지원센터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032-541-1017
광주	광주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남구 서대문로 831, 7층	070-4204-6314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042-932-9991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울산 중구 성안10길 16	052-903-9200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그린손해보험안산사옥 6층	031-501-0033
강원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033-264-3633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3번길 40 2층	1577-3053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11층	070-7733-8318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063-231-0386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 새터로 33	061-692-4175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길 24-11 온가족행복센터 2층	054-975-0831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9, 2층	055-243-0233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중양로 14길 15	064-725-7015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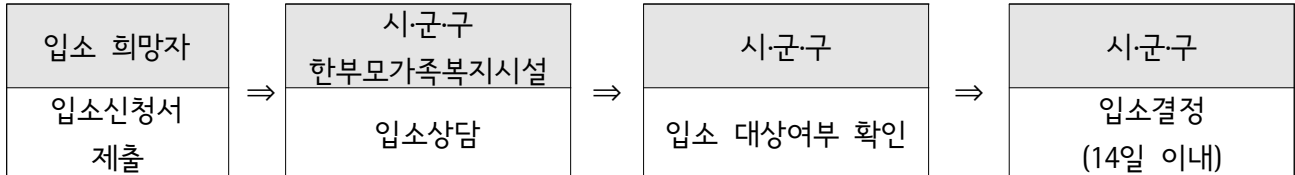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및 지원내용

2) 시설 유형별 현황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자 시설	기본	42	6	6	5	1	2	1	1	2	1	1	2	4	2	5	2	1
	자립	2	-	-	-	-	-	-	-	-	-	1	-	1	-	-	-	-
	공동	2	-	-	-	1	-	-	-	-	-	-	-	-	-	1	-	-
부자 시설	기본	2	1	-	-	1	-	-	-	-	-	-	-	-	-	-	-	-
	공동	1	1	-	-	-	-	-	-	-	-	-	-	-	-	-	-	-
미혼 모자	기본	23	6	2	1	1	1	1	1	3	1	-	1	1	1	1	1	1
	공동 (미혼 모자)	39	11	1	2	3	3	3	1	5	1	1	1	1	2	1	2	1
	공동 (미혼모)	2	1	-	-	-	-	-	-	-	-	-	-	-	-	-	-	1
일시지원복지 시설		9	1	-	1	1	-	1	1	1	-	-	-	1	-	-	1	1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연장 및 퇴소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절차



- ◆ 시설의 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인정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임시로 입소시켜 지원할 수 있음

- ◆ 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준

- ① 시설 퇴소 시 모 또는 부의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모·부가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 모·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경우

- ② 모·부의 취업준비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자녀학업 등의 이유로 입소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

- ◆ 입소기간 만료 후에도 퇴소 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연장가능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연장 가능(단, 연장기간 중 장애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소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퇴소)
- ◆ 만료 시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당해 학년의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연장 가능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기준

- ◆ 입소자가 퇴소한 경우 시설장은 3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사실 보고

- ① 소득향상 및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입소대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 ② 법으로 정한 입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③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④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요청한 경우
- ⑤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 퇴소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다.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시설유형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형(6)	동광모자원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23-1	☎02-930-5782
		성심모자원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12길 11-3	☎02-712-5287
		영락모자원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5길 47	☎02-941-1970
		창신모자원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8나길 28	☎02-2612-7142
		평화모자원	서울시 구로구 안양천로 539길 18	☎02-2614-4303
		해오름빌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26길 21-3	☎02-754-5702
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형(1)	선재누리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4길 21	☎02-6959-6858
	공동생활 지원형(1)	구세군한아름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8길 36-5	☎02-2691-8445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기본생활 지원형(6)	구세군두리홈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02-363-5722
		마음자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53나길 53	☎02-2691-4365
		애란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02-393-4725
		마포애란원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4나길 5	☎02-711-4725
		도담하우스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23가길 6-4	☎02-449-8893
		바인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가길 8, 501호	☎02-2671-0693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 (11)	애란영스빌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20길 44-13, 303호	☎02-333-4725
		구세군디딤돌	서울시 종로구 평창12길 8-18	☎070-7547-8895
		달빛등지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4-13	☎02-912-1616
		꿈나무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6길 33 로하스빌 B동 201호	☎070-8955-0804
		구세군두리마을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02-313-3370
		애란모자의집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4길9-7	☎02-391-4725
		마포클로버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5-4, 광일주택 2층	☎02-322-3325
		열린집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14-20 602호	☎02-563-7420
		아름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32-3	☎02-334-4614
		생명누리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3-21	☎02-326-5891
		한남하우스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6가길 302호	☎02-2661-8808
	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1)	애란세움터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길 61-22	☎02-703-4406
일시지원 복지시설(1)		서울모자의집	서울시 구로구(비공개)	☎02-2612-673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3)		한국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8, 201호	☎02-704-4750

	이주배경 한부모가족상담소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48길 15-2, 1,2층	☎02-792-7937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KUMSN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41 유니온빌딩301호	☎02-322-5007

라.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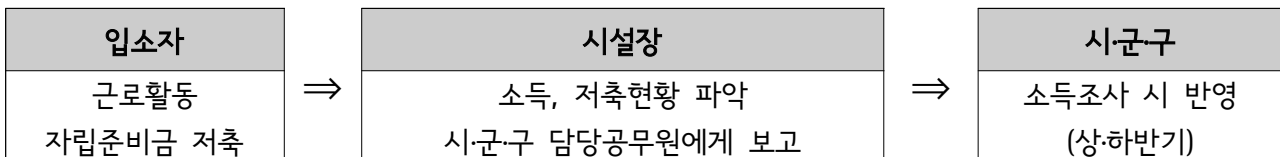
1) 개요

- ◆ 내용: 입소자가 근로소득평가액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
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하는 것
- ◆ 적용시점: 2013년 지침 시행 후 소득인정액 산정 시부터 적용
- ◆ 제한사항
 - 복지급여 제한: 재가 한부모가족과의 형평성을 고려, 복지급여 미지급 조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 적용제한: 시설장이 대기자 수를 고려하여 시행하며 동 제도로 시설 입소가 유지된 경우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입소기간 연장 허용

2) 자립준비금 인정요건

- ◆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된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정기적금 등)을 선택하여 별도
계좌 신설 후 납입한 금액을 자립지원금으로 인정
- ◆ 입소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인 입소자의 경우 금융상품의 예치 종료 시점이 퇴소 예정인 달을
초과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 가능
-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준으로 소득조사기간 내 매월 누적 근로소득평가액 대비 조사기간 내
누적 저축액이 40% 이상인 경우 인정
→ 누적저축액/누적 근로소득평가액 ≥ 40%
- ◆ 공제방법: 근로소득평가액(입소자) = 실제 근로소득 - 기타 공제액

3) 업무처리 절차



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 내용

- ①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및 1년 이내 퇴소자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입주자

② 지원요건

-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기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한부모의 취업, 학업준비, 한부모가족의 질병 등)
- 한부모가족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③ 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 생후 3개월 미만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생후 3개월 이상 아동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입)
- 기관연계서비스 아이돌보미 교통비: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합의

2) 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

구분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설 내 가정연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
돌봄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이용 요금	(기본) 시간당 10,550원	(일반) 시간당 10,550원 (종합) 시간당 13,720원	(기본) 시간당 12,660원	(기본) 시간당 16,870원 *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야간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기본 요금의 100%를 증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일요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활동 범위	영아 돌봄 활동 전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일반형) 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종합형) 일반형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입원한 경우 재가돌봄 제외)	시설 입소 아동 돌봄 보조
이용 방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를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 - 정부지원 대상자로 판정된 가정은 신청 시 금액, 시간을 '0'으로 기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한부모가 제출한 양육 공백 사유를 확인 후 아이돌봄 사업수행기관에서 안내해준 계좌로 입금			- 사업수행기관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 - 서비스제공 기관의 가상계좌로 이체



III.

생활 영역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

2

3

4



Ⅲ. 생활 영역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도모

가.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①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② 긴급위기가족(소득 무관)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대상자 선정	①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정보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② 긴급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먼저 제공된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지원내용	① 취약가족 - 심리·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 자녀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서비스 ② 위기가족 - 심리·정서치료 지원 등의 긴급위기지원
지원과정	- 서비스 신청/대상자 발굴→서비스 유형구분/초기상담→서비스 계획 및 제공→평가 및 종결→사후관리

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1) 자녀 학습·정서 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만 15세 이하 (손)자녀

지원연계	-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학습동기·목표 점검, 기초학습·자기 주도학습·부진교과목 지도 등) 및 정서지원(일상생활지도, 멘토·멘티 서비스 등)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2) 생활도움지원(키움보듬이 파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으로 (조)부모의 건강상태 악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지원내용	- (손)자녀의 긴급 일시돌봄,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제외대상: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지원시간	- 연 90시간 이내(가구당)

다. 긴급 위기가족

구분	세부내용
심리·정서지원	-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동행하면서 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지지리더가 직접 상담하거나 사업수행기관 내 상담관련 팀으로 연계하여 위기 가정의 부모·자녀 및 부부 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 지지리더 역할: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긴급 가족 돌봄 지원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수요에 따라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 활동, 정서지원)를 지원하기 위한 지지리더 파견(키움보듬이 파견 가능)
심리치료 지원	- 정신적 외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상담 지원

라. 취약위기가족지원 수행기관: 시·도 88개 기관에서 사업 수행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9)	구로구가족센터	02-869-0317	부산 (6)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06
	동대문구가족센터	02-957-0760		동래구가족센터	051-506-5766
	관악구가족센터	02-883-9383		사상구가족센터	051-328-0042
	서초구가족센터	02-576-2852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3-4588
	서대문구가족센터	02-322-7595		서구가족센터	051-241-6200
	금천구가족센터	02-803-7747		연제구가족센터	051-851-5002
	도봉구가족센터	02-995-6800			
	영등포구가족센터	02-2678-2193			
	은평구가족센터	02-376-3759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대구 (7)	달서구가족센터 달성군가족센터 남구가족센터 수성구가족센터 북구가족센터 대구동구가족센터 대구서구가족센터	053-593-1511 053-636-7390 053-471-2326 053-795-4300 053-327-2992 053-961-2203 053-355-8042	인천 (7)	인천중구가족센터 미추홀구가족센터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서구가족센터 계양구가족센터 연수구가족센터 남동구가족센터	032-763-9337 032-875-2993 032-508-0121 032-569-1562 032-541-2860 032-851-2730 032-467-3904
광주 (5)	동구가족센터 서구가족센터 광산구가족센터 북구가족센터 남구가족센터	062-234-5790 062-369-0072 062-959-9337 062-430-2963 062-351-5434	대전 (1)	대전시가족센터	042-252-9989
울산 (3)	남구가족센터 북구가족센터 울주군가족센터	052-274-3136 052-286-0025 052-229-9620	세종 (1)	세종시가족센터	044-862-9336
경기 (7)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의정부시가족센터 양평군가족센터 용인시가족센터 오산시가족센터 시흥시가족센터 김포시가족센터	031-501-0033 031-878-7117 031-775-5957 031-323-7131 031-378-9766 031-317-4522 031-996-5920	강원 (5)	원주시가족센터 동해시가족센터 삼척시가족센터 강릉시가족센터 홍천군가족센터	033-764-8612 033-535-8377 033-576-0761 033-648-3019 033-433-1925
충북 (3)	청주시가족센터 제천시가족센터 충주시가족센터	043-263-1817 043-645-9995 043-857-5960	충남 (6)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산시가족센터 태안군가족센터 보령시가족센터 논산시가족센터	070-7733-8300 041-360-3200 041-548-9772 041-670-2396 041-936-8506 041-733-7800
전북 (6)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익산시가족센터 남원시가족센터 완주군가족센터 김제시가족센터 군산시가족센터	063-231-0182 063-838-6046 063-631-6700 063-261-1033 063-545-8506 063-443-5300	전남 (7)	광양시가족센터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보성군가족센터 여수시가족센터 장흥군가족센터 순천시가족센터 나주시가족센터	061-797-6800 061-247-2311 061-852-2664 061-659-4167 061-864-4813 061-750-5353 061-331-0709
경북 (6)	칠곡군가족센터 포항시가족센터 경산시가족센터 상주시가족센터 김천시가족센터 영천시가족센터	054-975-0833 054-244-9702 054-816-4071 054-531-1342 054-439-8280 054-334-2881	경남 (7)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하동군가족센터 함안군가족센터 김해시가족센터 통영시가족센터 밀양시가족센터 양산시가족센터	055-716-2361 055-880-6520 055-852-5430 055-329-6355 055-640-7741 055-351-4404 055-382-0988
제주 (2)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4-725-8005 064-733-9877			

※ 취약위기가족지원을 수행하는 센터 외에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 /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2. 법률지원

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상담 지원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전화상담</td><td> - 대표 번호: 1644-6621 - 이용 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td></tr><tr><td>방문상담</td><td>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4층 405호 - 이용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09:00~12:00 / 13:00~18:00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전화 예약 : 1644-6621, 1번 연결, 온라인 예약) ※ 방문 상담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하루 30분 </td></tr><tr><td>온라인상담</td><td> - 신청 방법: 메인화면의 ‘양육비상담신청’ 아이콘을 클릭 또는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신청] 메뉴에 접속 → 약관동의 및 본인 인증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td></tr></table>	구분	내용	전화상담	- 대표 번호: 1644-6621 - 이용 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방문상담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4층 405호 - 이용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09:00~12:00 / 13:00~18:00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전화 예약 : 1644-6621, 1번 연결, 온라인 예약) ※ 방문 상담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하루 30분	온라인상담	- 신청 방법: 메인화면의 ‘양육비상담신청’ 아이콘을 클릭 또는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신청] 메뉴에 접속 → 약관동의 및 본인 인증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구분	내용							
		전화상담	- 대표 번호: 1644-6621 - 이용 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방문상담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4층 405호 - 이용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09:00~12:00 / 13:00~18:00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 (전화 예약 : 1644-6621, 1번 연결, 온라인 예약) ※ 방문 상담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하루 30분							
	온라인상담	- 신청 방법: 메인화면의 ‘양육비상담신청’ 아이콘을 클릭 또는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신청] 메뉴에 접속 → 약관동의 및 본인 인증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법률 지원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자녀인지 청구</td><td> -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td></tr><tr><td>양육비 (변경)청구</td><td> -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td></tr><tr><td>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td><td> -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td></tr></table>	구분	내용	자녀인지 청구	-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	-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분	내용							
		자녀인지 청구	-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	-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심 지원	- 양육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집행법에 대한 강제집행 지원									
제재 조치	- 「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 명단공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 출국금지(법무부장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시·도 경찰청장) 요청									

	양육 지원	구분	내용
		면접교섭 지원	- 비양육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
		지지그룹 운영	- 온라인 지지그룹: 양육 책임과 역할 등에 관한 의견 교환, 정서적 지지, 교육·상담 등 - 오프라인 지지그룹: 숙련된 전문가가 이끄는 집단 활동(교육·상담 등)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지원	-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등의 지원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를 점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긴급지원 금액: 자녀 1인당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 이며 ※ 총 9개월 동안 지원,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을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공통서류: 혼인관계증명서 2부(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부(신청인 기준), 기본증명서 각 2부(신청인, 자녀 기준), 신분증 앞면 사본 2부(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신청인, 자녀 기준),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 서류 일부는 원본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요청할 수 있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문의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1644-6621	

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법률구조 •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 - 법률상담 • 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사건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소장 등 서류작성 •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관련 서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소송 관련 서류 무료 작성 - 화해조정 • 당사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담소에 내방하게 하여 조정 진행

	- 소송구조 •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무료 소송구조 제공 ※ 전반적으로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나 필요한 경우 민·형사 사건도 진행 ※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절차 무료 지원										
신청방법	- 절차: 상담 진행 →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상담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대면상담</td><td>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이용 시간: 월~금 10:00~17:00 (16:00까지 접수) - 매주 월요일 야간상담 진행: 18:00~21:00 (19:00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30 ~ 13:00 </td></tr> <tr> <td>출장상담</td><td>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민원실 - 무료 출장상담 진행: 월~금 10:00~17:00 </td></tr> <tr> <td>전화상담</td><td> - 대표번호: 1644-7077 </td></tr> <tr> <td>온라인상담</td><td> - 신청 방법: 메인화면 상단에서 '사이버상담실'에 접속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면상담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이용 시간: 월~금 10:00~17:00 (16:00까지 접수) - 매주 월요일 야간상담 진행: 18:00~21:00 (19:00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30 ~ 13:00	출장상담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민원실 - 무료 출장상담 진행: 월~금 10:00~17:00	전화상담	- 대표번호: 1644-7077	온라인상담	- 신청 방법: 메인화면 상단에서 '사이버상담실'에 접속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구분	내용										
대면상담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이용 시간: 월~금 10:00~17:00 (16:00까지 접수) - 매주 월요일 야간상담 진행: 18:00~21:00 (19:00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30 ~ 13:00										
출장상담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민원실 - 무료 출장상담 진행: 월~금 10:00~17:00										
전화상담	- 대표번호: 1644-7077										
온라인상담	- 신청 방법: 메인화면 상단에서 '사이버상담실'에 접속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문의	- 홈페이지 (http://lawhome.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다. 복지법률지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복지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서울시민 - 서울시 내 복지담당공무원 및 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
지원내용	- 복지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 기초생활수급 탈락·삭감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자문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원스톱 지원(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 최저생계비, 수급비 등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유언장 작성 지원 • 시설 미성년 후견개시 심판 청구 • 부실 공적기록부 관련 소송 지원 • 사회보험 부당 처분에 대한 소송 지원 •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소송 등 제반 법률 지원 - 복지전달체계 역량강화 • 복지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법률상담 및 교육 • 자치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마련 및 권고

	• 복지관련 법·제보, 정책개선사항 발굴 및 제시 • 저소득빈곤층 사회보장분야 특화 지원 ※ 소송은 내부 또는 외부 심의 등을 거쳐 지원								
신청방법	<table> <tr> <th>구분</th><th>내용</th></tr> <tr> <td>전화상담</td><td> - 대표 번호: 1670-0121 - 이용 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td></tr> <tr> <td>방문상담</td><td>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21 서울복지타운 8층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이용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10:00 / 14:00 / 16:00 ※ 방문 상담은 사전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 </td></tr> <tr> <td>온라인상담</td><td> - https://swlc.welfare.seoul.kr - 신청 방법: 메인화면 상단의 [복지법률상담] 메뉴 접속 → 좌측 메뉴에서 [인터넷 상담] 선택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td></tr> </table>	구분	내용	전화상담	- 대표 번호: 1670-0121 - 이용 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방문상담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21 서울복지타운 8층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이용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10:00 / 14:00 / 16:00 ※ 방문 상담은 사전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	온라인상담	- https://swlc.welfare.seoul.kr - 신청 방법: 메인화면 상단의 [복지법률상담] 메뉴 접속 → 좌측 메뉴에서 [인터넷 상담] 선택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구분	내용								
전화상담	- 대표 번호: 1670-0121 - 이용 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방문상담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21 서울복지타운 8층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이용 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10:00 / 14:00 / 16:00 ※ 방문 상담은 사전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								
온라인상담	- https://swlc.welfare.seoul.kr - 신청 방법: 메인화면 상단의 [복지법률상담] 메뉴 접속 → 좌측 메뉴에서 [인터넷 상담] 선택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문의	- 홈페이지 (http://swlc.welfare.seoul.kr) - 복지법률 종합상담전화: ☎1670-0121								

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 ※ 국내거주국민 상담 : 하루 70건, 신청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답변(공휴일제외) ※ 재외동포 상담 : 대상사건은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법률구조: 소송대리 및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 (민사, 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문의	-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마. 법률홈닥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자
지원내용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 월~금 10:00~17:00 인근 기관 연락처로 문의 - 필요 시 예약 후 방문상담

문의	-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 지역별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으로 연락 (아래 표 참고)
----	--

■ 지역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시도	배치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13)	강서구청	02-2600-6530	인천 /경기 (15)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관악구청	02-879-7631		인천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광진구청	02-450-7408		인천 서구청	032-560-5896
	노원구청	02-2116-3508		경기 광주시청	031-760-3795
	도봉구청	02-2091-3009		고양 덕양구청	031-8075-5600
	동작구청	02-820-9612		과천시 상담1	02-2110-4251
	마포구청	02-3153-8529		과천시 상담2	02-2110-3679
	서대문구청	02-330-1558		남양주시청	031-590-8721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동두천시청	031-860-2036
	양천구청	02-2620-3352		성남시청	031-729-2493
	은평구청	02-351-7020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070-7878-9365
	종로구청	02-2148-1384		안산시청	031-481-2592
	중랑구청	02-2094-1623		안성시청	031-678-2178
				오산시청	031-8036-7427
				이천시청	031-645-3855
강원 (1)	속초사회복지협의회	033-639-2632	대전 (1)	대전 동구청	042-251-6229
충청 (5)	논산시청	041-746-6044	광주 (2)	남구청	062-607-2133
	서산시청	041-664-1739		서구청	062-360-7039
	아산시청	041-540-2075			
	천안시청	041-521-3292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043-238-0843			
전라 (5)	순천시청	061-749-3394	대구 (3)	달서구청	053-667-3541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061-285-1161		북구청	053-665-3123
	익산시청	063-858-9280		수성구청	053-666-2667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063-251-1860			
	전주시청	063-281-0309			
경북 (3)	경산시청	053-810-5925	경남 (1)	진주시청	055-755-7560
	구미시청	054-480-5149			
	영주시청	054-639-6059			
부산 (4)	남구청	051-607-4317	울산 (1)	울산광역시청	052-229-2288
	사상구청	051-310-4317			
	수영구청	051-610-4027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바. 마을변호사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지원내용	-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 ※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으로 원격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원칙								
신청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전화상담</td><td>①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td></tr> <tr> <td>방문상담</td><td>①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 송부 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td></tr> <tr> <td>현장상담</td><td>-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 진행 -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 문의</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전화상담	①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	방문상담	①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 송부 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상담	-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 진행 -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 문의
구분	내용								
전화상담	①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								
방문상담	①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 송부 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상담	-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 진행 -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 문의								
문의	-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 02-2110-3000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사이트 상단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경찰」 - 「마을변호사」 - 「자료실」 접속 : 「마을변호사 지역별 배정현황」 통해 각 지역별 문의처 확인 가능								

사. 개인회생 · 파산 신청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황이 어려운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자 ※ 다만, 다른 채무상황,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 개인회생 · 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가 신청대리

-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

법률구조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 서류 검토 및 보완
- 무료 법률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 접수 후 관리

⇒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 유의사항
 -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에서 결정하는 소송구조 절차이므로 신청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함

신청방법

- 준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원신청서류는 별도 상담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각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문의

- 홈페이지 (<http://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 해외거주 시: ☎+82-2-6337-2000

아.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금융복지서비스(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자원 연계 등)가 필요한 저소득가구 또는 금융취약계층
지원내용	- 재무 상담 • 고객의 자산·부채 상태와 수입·지출 현황을 토대로 맞춤형 재무 설계 제공 - 채무조정 지원 • 과다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회생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 금융상담서비스 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복지자원 연계
신청방법 및 문의	- 전국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로 문의 (아래 표 참고)

■ 전국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지역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15)	도봉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1644-0120
	노원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중랑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42 중랑 자동차 등록 나눔센터 2층	

지역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성북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시청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성동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층	
	마포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6층	
	영등포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양천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구로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금천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관악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강남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9층	
	송파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성동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층	
경기 (12)	중앙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25 5층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070-4659-2711
	의정부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의정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031-876-6533
	파주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031-954-2596
	고양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신관 1층 종합민원실	031-968-9971
	구리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민원실	031-554-5407
	부천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032-329-9105
	안양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메썬타워 3층,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463-3887
	안산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31-412-6692
	수원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역사 경기도청 민원센터	031-248-8622
	광주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2층	031-761-2864
	용인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인시 수지구청 1층	031-896-9892
	평택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민원실	031-692-7340
광주 (1)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062-954-0019
전남 (2)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3층	061-727-2590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서부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5-3980

지역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남 (1)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055-716-8174

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자
지원내용	- 종합상담 • 맞춤대출, 고금리 전환,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용정보조회 및 진단 -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지원,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 - 자금지원 •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상담 및 지원 - 고용·복지연계 • 지자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일자리상담, 취업 안내,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전화 상담: ☎1397 (월~금 9:00~18:00 / 야간상담 18:00~20:00) - 신분증 지참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기초상담 → 서비스 지원 ※ 전국 센터 중 가까운 센터로 방문 (아래 표 참고)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ra.or.kr)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대표번호: ☎1397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역	센터명	주소
서울 (6)	강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광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노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양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인천 (2)	계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계산동) 삼환1빌딩 2층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경기	고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지역	센터명	주소
(11)	구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김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부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성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예미지 빌딩 2층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안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의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평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2층
	하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3층
강원 (4)	강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속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고용복지+센터 3층
	원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대전 (1)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
충남 (3)	당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천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홍성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6 충남빌딩 6층
충북 (2)	청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부산 (2)	부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사상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울산 (1)	울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 2층
대구 (2)	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하나은행 3층
	서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50-6 삼희빌딩 2층
경북 (4)	경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동천동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구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손해보험빌딩 2층 KB은행
	안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태화동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지역	센터명	주소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6층
경남 (4)	거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 5길 6, 우형빌딩 3층
	양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 퍼스트조양 5층 505호
	진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진주고용복지+센터 7층
	창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생명빌딩 3층
광주 (2)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1~3호
전남 (2)	목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순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북 (3)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익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9 SK빌딩 11층
	전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타워 3층
제주 (1)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3. 주거지원

가. 공공임대주택 개요

1)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50년	60㎡ 이하
	국민임대		30년	85㎡ 이하
	장기전세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최대 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 이하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매입임대			

2) 유형별 특징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전세금 (시세 8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40㎡ 이하	85㎡ 이하 (통상 60㎡ 이하)	85㎡ 이하 (통상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총자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소득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 이하)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자격별 차등	60㎡ 이하: 70% 이하 85㎡ 이하: 10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85㎡ 이하: 120% 이하	신혼, 생애, 일반 (100% 이하) 다자녀, 노부모 (120% 이하)	100%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80% 이하, 세대 100% 이하)
공급 유형	일반	- (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선정) 자체 추천을 받은 자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 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 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 초과 -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 순위, 순차)	- (자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추천
	특별·우선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국가유공자 등 ○ 귀환국군포로 ○ 수급자 신혼부부	○ 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높은 자 ○ 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 추천 ○ 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선정) 순위 경쟁 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순 ○ 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 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3자녀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선정) 자녀 수가 많은 자(이후 추천) ○ 생애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 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천 ○ 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 (선정) 순위, 순차	○ 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 사회초년생(취준생 포함) - (자격) 소득활동합산 기간 5년 이내 해당 지역 소득활동중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 신혼부부(예비 신혼 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 중인 경우 - (선정) 지역, 배점 등 ○ 고령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 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 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 추천 ○ 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지역 거주 65세 이상 - (선정) 지역, 배점 등 ○ 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 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나. LH주택공사 임대주택

1) 국민임대¹²⁾

- ◆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 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일반공급	- 1순위: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 및 연접 자치구 거주자 - 2순위: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 충족자 • 전용면적 50㎡이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이상: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주택청약저축 24회 납입한 자
	우선공급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해당)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북한이탈주민 - 3자녀 이상 세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영구임대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용 주택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자 - 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1~7급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고엽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12)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분양가이드 → 임대주택 → 국민임대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 ※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00-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며 해당 관리 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공급면적 약 24평)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2) 영구임대¹³⁾

-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저소득 시민
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정해진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		입주자격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13)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분양가이드 → 임대주택 → 영구임대

		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은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 무주택자여야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2순위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⑦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순위	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신청	-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시 행정복지센터)에 입주신청
	입주자 선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계약 안내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계약체결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 입주 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시중시세의 30% 수준	

3) 공공임대주택¹⁴⁾

- ◆ 정해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순위	입주자격
	1순위	-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 주택청약종합)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 주택청약종합)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출처:서울등촌6단지 50년 공공임대 모집공고문)
주택 유형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무기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모집 신청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입주 신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 (예비 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14)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분양가이드 → 임대주택 → 공공임대

4) 매입임대주택¹⁵⁾

- ◆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구분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출처:sh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공고문), 차상위 중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 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⑤ 저소득고령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중 만 65세 이상) - 2순위: ①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로 영구임대 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영구임대 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황 지원사업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만화방, PC방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주거사다리사업 → 주거취약계층주거상황지원사업 명칭변경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의 전반적인 내용이 달라져서 확인필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 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15)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분양·임대가이드 → 기존주택매입임대

신청절차 및 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 범죄피해자: 지방 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주택규모	- 전용 85㎡이하 ※ 매입임대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임대기간 및 조건	- 최초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9회 재계약 가능 ※ 매입임대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5) 기존주택 전세임대¹⁶⁾

-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
이후 해당 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사업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선정기준	구분	내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④ 주거지원 시급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⑤ 저소득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만 65세 이상)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②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부도공공임대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

16)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분양가이드 → 주거복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아파트 퇴거자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 중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만화방, 피시방,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방수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침수우려 지하거주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1인가구 70%, 2인가구 60%, 3인가구 이상 50% 이하인 가구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전세지원금 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10백만원, 기타지역 80백만원(단,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수도권·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 - 출처 : 2021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 초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3월 이후 한도액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통해 확인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신청 절차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6)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17)

-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 결정하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구분	세부내용		
선정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다자녀	-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일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 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가구
대상주택	※ 자격 조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통해 확인 가능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다자녀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17)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분양가이드 → 주거복지 → 다자녀가구 전세임대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지원 내용	한도액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지원한도액</th></tr><tr><th>수도권</th><th>광역시</th><th>기타지역</th></tr><tr><td>다자녀 (기준: 2자녀)</td><td>1억 3천 5백만원</td><td>1억원</td><td>8천 5백만원</td></tr><tr><td>고령자·일반</td><td>1억 2천만원</td><td>8천만원</td><td>6천만원</td></tr></table>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다자녀 (기준: 2자녀)	1억 3천 5백만원	1억원	8천 5백만원	고령자·일반	1억 2천만원	8천만원	6천만원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다자녀 (기준: 2자녀)	1억 3천 5백만원	1억원	8천 5백만원															
고령자·일반	1억 2천만원	8천만원	6천만원																
- 22년도부터 금액변동 (출처 : LH다자녀전세임대주택 공고문) ※ 다자녀 유형: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 수에 따라 2천만원씩 한도 상향																			
임대 조건	입대 조건	<table><tr><th>구분</th><th>입주자 부담 보증금</th><th>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th></tr><tr><td>다자녀 (기준: 2자녀)</td><td>지원한도액의 2%</td><td>-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 (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td></tr><tr><td>고령자·일반</td><td>지원한도액의 2~5%</td><td>-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td></tr></table>		구분	입주자 부담 보증금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다자녀 (기준: 2자녀)	지원한도액의 2%	-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 (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	고령자·일반	지원한도액의 2~5%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구분	입주자 부담 보증금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다자녀 (기준: 2자녀)	지원한도액의 2%	-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 (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															
고령자·일반	지원한도액의 2~5%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 우대금리 적용 (단, 최저금리: 1.0%) - 미성년 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p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 -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가능 -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 시 월세주택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 부담,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7) 신혼부부 매입임대 (한부모가족 포함)¹⁸⁾

- ◆ 도심 내 저소득층 (예비)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시중시세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8)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분양가이드 → 주거복지 → 신혼부부 매입임대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주순위	- 1순위: 공고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자(태아 포함, 미성년자에 한함) -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지원내용	구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지원단가	평균 1.6억원(서울 1.9억원)	평균 3억원(서울 4.36억원)
	주택유형	다가구 주택 등	다가구 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대료	시세 30% ~ 40%	시세 60% ~ 70%
임대기간	신혼부부 I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신혼부부 II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유자녀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	

8) 신혼부부 전세임대 (한부모가족 포함)¹⁹⁾

- ◆ 도심 내 저소득층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소득 기준	유형 I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유형 II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3월 이후 자격 조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통해 확인 가능		
선정기준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태아 포함, 미성년자에 한함) - 2순위: 1순위가 아닌 자		

19)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분양가이드 → 주거복지 →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지원 가능		
전세지원금 한도액	- 금액변동 확인 출처 : 22년도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수시접수		
	유형 I	- 수도권 13,500만원 - 광역시 10,000만원 - 기타지역 8,500만원	
	유형 II	- 수도권 24,000만원 - 광역시 16,000만원 - 기타지역 13,000만원	
임대조건 (입주자부담)	유형 I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하	
	유형 II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하 (* 월 임대료: 주택도시보증기금 운용계획 용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절차	1.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2. 입주자 자격조회 <LH>	3. 대상자 발표 <LH 청약센터>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 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8. 입주
임대기간	유형 I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유형 II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자녀가 있을 경우 4년 추가)	

9) 주거사다리지원사업²⁰⁾

-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 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시설, 만화방, PC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가정폭력 피해자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20) 2019년 “주거취약계층지원” 사업 명칭이 “주거사다리지원사업”으로 변경됨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분양가이드 → 주거복지 → 주거취약계층지원

자격요건		- 유형별 자격요건 • 쪽방 · 비닐하우스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 쉼터 ·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자격부여 • 범죄피해자: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요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절차																														
지원내용	유형	<table><thead><tr><th>유형</th><th colspan="4">사업내용</th></tr></thead><tbody><tr><td>기존주택 매입임대</td><td colspan="4">-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td></tr><tr><td>기존주택 전세임대</td><td colspan="4">-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td></tr><tr><td>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td><td colspan="4">-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td></tr><tr><td>국민임대주택</td><td colspan="4">-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td></tr></tbody></table> ※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유형	사업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유형	사업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임대료 및 보증금	<table><thead><tr><th rowspan="2">대상</th><th colspan="3">시장 또는 지방공사가 결정</th></tr><tr><th colspan="2">공급 유형</th><th>임대료</th><th>(공급)</th></tr></thead><tbody><tr><td>노숙인시설, 쪽방, 여인숙, 움막,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td><td>기 존</td><td>매입임대 (다가구, 원룸)</td><td>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 이하</td><td>110호('19년) 130호('20년) 150호('21년)</td></tr><tr><td>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환경에서 만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td><td>추 가</td><td>매입임대 (다가구:투룸 이상 : 50㎡~60㎡)</td><td>보증금: 100만원 월세: 25~35만원</td><td>100호('19년)</td></tr></tbody></table> ※ 아동주거빈곤가구 - SH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 지원 - (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서 지원 (이사비, 생필품비)				대상	시장 또는 지방공사가 결정			공급 유형		임대료	(공급)	노숙인시설, 쪽방, 여인숙, 움막,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기 존	매입임대 (다가구, 원룸)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 이하	110호('19년) 130호('20년) 150호('21년)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환경에서 만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추 가	매입임대 (다가구:투룸 이상 : 50㎡~60㎡)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35만원	100호('19년)								
대상	시장 또는 지방공사가 결정																													
	공급 유형		임대료	(공급)																										
노숙인시설, 쪽방, 여인숙, 움막,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기 존	매입임대 (다가구, 원룸)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 이하	110호('19년) 130호('20년) 150호('21년)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환경에서 만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추 가	매입임대 (다가구:투룸 이상 : 50㎡~60㎡)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35만원	100호('19년)																										
지원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10) 임대주택 공급기관

구분	공급기관		전화번호
전국	LH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1600-1004
시도	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051-808-2662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공사	☎053-3500-350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032-260-500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600~7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042-530-9200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052-219-8400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1588-0466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033-339-3938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063-280-7500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055-269-04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064-780-3300
시군	경기도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031-481-49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031-790-9500

※ 임대주택의 자산보유기준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지역별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해당지역도시공사로 문의해주세요.

11) 임대주택 관련 문의기관(마이홈센터)

연번	지역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1	서울	LH서울권 마이홈센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1층	☎02-3416-3604
2		LH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층	☎02-2182-2733
3		LH서울중부권 마이홈센터	서울 종로구 청경궁로 112-7 인의빌딩 10층	☎02-6454-2722
4		LH서울서부권 마이홈센터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국빌딩 1층	☎02-2169-8801
5		LH서울동부권 마이홈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1층	☎031-622-2770
6	경기	LH의정부권 마이홈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031-822-4006
7		LH남양주권 마이홈센터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	☎031-590-6669
8		LH고양권 마이홈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1002호	☎031-927-3055
9		LH파주권 마이홈센터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031-944-5604
10		LH부천권 마이홈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281, 6층	☎032-450-8260
11		LH시흥권 마이홈센터	경기 시흥시 능곡동 750, 3층	☎031-362-7722

연번	지역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12		LH안양권 마이홈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2층	☎031-467-5723
13		LH성남권 마이홈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11층	☎031-778-3105
14		LH경기권 마이홈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2층	☎031-250-8303
15		LH용인권 마이홈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9층	☎031-280-4712
16		LH화성권 마이홈센터	경기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4층	☎031-831-2450
17		LH평택안성권 마이홈센터	경기 평택시 정암로 10, 2층	☎031-8094-5037
18		LH수원권 마이홈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9, 11층	☎031-323-9135
19		LH김포권 마이홈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11층	☎031-8048-5301
20		LH오산권 마이홈센터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2층	☎031-377-9043
21	인천	LH인천광역권 마이홈센터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1층	☎032-890-5838
22		LH인천남동권 마이홈센터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6층	☎031-717-5253
23		LH인천북서권 마이홈센터	인천 남구 경인로 434, 8층	☎032-717-8501
24	대전	LH대전권 마이홈센터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1층	☎042-470-0812
25		LH대전북부권 마이홈센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1016-3, 9층	☎042-349-0823
26	대구	LH대구권 마이홈센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1층	☎053-603-2346
27		LH대구동부권 마이홈센터	대구 동구 신서로 40, 4층	☎053-960-3618
28		LH대구서부권 마이홈센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58-2	☎053-610-9924
29	광주	LH광주권 마이홈센터	광주 서구 시청로 91, 1층	☎062-360-3128
30		LH광주북부권 마이홈센터	광주 북구 본촌동 670번지 2층	☎062-456-0225
31		LH광주광산권 마이홈센터	광주 광산구 풍영로 200번길 9, 5층	☎062-456-0558
32	울산	LH울산권 마이홈센터	울산 남구 중앙로 179, 2층	☎052-932-4802
33	부산	LH부산권 마이홈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051-460-5461
34		LH부산동부권 마이홈센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83, 3층	☎051-460-6053
35	강원	LH춘천권 마이홈센터	강원 춘천시 공지로 37, 1층	☎033-258-4166
36		LH원주권 마이홈센터	강원 원주시 반곡동 산215-15	☎033-737-7700
37		LH강릉권 마이홈센터	강원 강릉시 울곡로 2846, 2층	☎033-610-5178
38	충북	LH청주권 마이홈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1층	☎043-290-3294
39		LH충북동북부권 마이홈센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148, 3층	☎043-820-9155
40	충남	LH천안권 마이홈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1층	☎041-538-5826
41		LH충남북부권 마이홈센터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3층	☎041-854-8359
42		LH충남남부권 마이홈센터	대전 동구 우암로 250, 5층	☎042-349-4613

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1) 공공임대·주거환경 임대주택

- ◆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하여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

구분	세부내용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기준: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기준 7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기준 12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60㎡ 이하 - 126,000,000원 이하 60㎡ 초과 ~ 85㎡ 이하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60㎡ 이하 - 24,680,000원 이하 60㎡ 초과 ~ 85㎡ 이하 - 27,640,000원 이하 - 가산점 부여: SH 임대주택 거주하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저축을 다시 쓸 수 있으므로 추후 다른 신청에도 가점 부여 가능																																
임대기간 및 보증금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 공급규모: 19㎡ ~ 84㎡ 이하(소형 평형 위주) - 임대조건: 평균임대료 / 평균임대보증금																																
	<table><tr><th colspan="3">공공임대</th></tr><tr><th>면적</th><th>임대보증금</th><th>월 임대료</th></tr><tr><td>전용 39㎡ 이하</td><td>9,164,996원</td><td>123,286원</td></tr><tr><td>전용 49㎡ 이하</td><td>13,856,708원</td><td>199,000원</td></tr><tr><td>전용 59㎡ 이하</td><td>29,808,889원</td><td>333,000원</td></tr><tr><td>전용 84㎡ 이하</td><td>46,688,535원</td><td>597,000원</td></tr></table> <table><tr><th colspan="3">주거환경</th></tr><tr><th>면적</th><th>임대보증금</th><th>월 임대료</th></tr><tr><td>전용 30㎡ 이하</td><td>7,680,000원</td><td>91,360원</td></tr><tr><td>전용 30㎡ 초과 ~ 40㎡ 이하</td><td>9,872,800원</td><td>125,156원</td></tr><tr><td>전용 40㎡ 초과 ~ 84㎡ 이하</td><td>38,786,600원</td><td>393,567원</td></tr></table>	공공임대			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용 39㎡ 이하	9,164,996원	123,286원	전용 49㎡ 이하	13,856,708원	199,000원	전용 59㎡ 이하	29,808,889원	333,000원	전용 84㎡ 이하	46,688,535원	597,000원	주거환경			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용 30㎡ 이하	7,680,000원	91,360원	전용 30㎡ 초과 ~ 40㎡ 이하	9,872,800원	125,156원	전용 40㎡ 초과 ~ 84㎡ 이하	38,786,600원
공공임대																																	
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용 39㎡ 이하	9,164,996원	123,286원																															
전용 49㎡ 이하	13,856,708원	199,000원																															
전용 59㎡ 이하	29,808,889원	333,000원																															
전용 84㎡ 이하	46,688,535원	597,000원																															
주거환경																																	
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용 30㎡ 이하	7,680,000원	91,360원																															
전용 30㎡ 초과 ~ 40㎡ 이하	9,872,800원	125,156원																															
전용 40㎡ 초과 ~ 84㎡ 이하	38,786,600원	393,567원																															
신청방법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www.i-sh.co.kr/app) - 준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청약납입인정회차·납입인정금액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 은 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류심사용)
--	---

2) 재개발 임대주택

-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분양전환 되지 않음)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포기자 -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
선정기준	- 1순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 - 2순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 - 가점제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선정 :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회차,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미성년 자녀 수, 중소기업 근로자, 건설근로자, 사회 취약계층
공급절차	
신청절차	
임대기간 및 보증금	- 입주 후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 임대보증금: 재개발임대주택건설원가 × 20% - 임대료: 당해주택건설원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리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 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 ※ 단, 금리 적용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정기예금(1~2년미만) 금리 중 최근 시점 금리 ※ 재개발임대주택건설원가 = 매입계약서상 계약가격(서울시)
--	--

라. 국민주택기금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가) 세부내용 및 사업 특성

구분	내용									
신청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보증기금대출, 은행채권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22년도 기준 순자산 3억2천5백만원 이하인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table><tr><th>구분</th><th>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th><th>수도권 외</th></tr><tr><td>일반가구</td><td>최대 1억2천만원</td><td>최대 8천만원</td></tr><tr><td>2자녀 이상 가구</td><td>최대 2억2천만원</td><td>최대 1억8천만원</td></tr></table>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일반가구	최대 1억2천만원	최대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2억2천만원	최대 1억8천만원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일반가구	최대 1억2천만원	최대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2억2천만원	최대 1억8천만원								

구분	내용				
	- 대출금리				
	소득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 연 1%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내용			
	일시상환	이자만 납부 (만기시 대출금 전액 상환)			
	혼합상환	대출금의 10~50% 나누어 상환 (만기시 남은 잔액 상환)			
대출신청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농협	☎1588-21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가) 세부내용 및 사업 특성

구분	내용
신청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보증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구분	내용				
	7천만원 이하로 세전 기준으로 함) • 22년도 기준 순자산 4억5천8백만원 이하인 자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일반가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2억5천만원		2억7천만원		3억1천만원
	- 대출금리				
	소득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상환방법	내용			
	원리금균등분할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			
	원금균등분할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 (초기에 많은 이자 납부하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이자 줄어듦)			
	체증식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대출신청 은행	 1599-0800	 1599-1771	 1566-2566	 1588-2100	 1599-8000

3)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분	세부내용
대출대상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① 우대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 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②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연 2.0%[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중도 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12%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	<table><tr><th>구분</th><th>전화번호</th><th>구분</th><th>전화번호</th></tr><tr><td>우리은행</td><td>☎1599-0800</td><td>농협</td><td>☎1588-2100</td></tr><tr><td>국민은행</td><td>☎1599-1771</td><td>신한은행</td><td>☎1599-8000</td></tr><tr><td>기업은행</td><td>☎1566-2566</td><td></td><td></td></tr></table>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농협	☎1588-21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농협	☎1588-21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마.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1) 서울형 주택바우처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 임대료 보조												
지원조건	- 법정 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중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가구 • 전세전환가액이 9천 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차량 1대 이하 보유한 가구												
지원금액	(단위:원/월) <table><tr><th>가구원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6인이상</th></tr><tr><td>월 지급액</td><td>80,000원</td><td>85,000원</td><td>90,000원</td><td>95,000원</td><td>105,000원</td></tr></table>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_06101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6인이상	월 지급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5,000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6인이상								
월 지급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5,000원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	- 서울시 사회복지과: ☎02-2094-1709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 저소득층 주택 임차(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공공부문(SH공사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제외) 임대주택 입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참고자료 : 2020년도 주거복지센터 상담용 매뉴얼.pdf
지원범위	- 최대 1,200만원(임대보증금의 70%까지)
대출기간	- 연이율 2%, 10년 간 균등분할상환
문의	- SH공사 임대팀: ☎02-3410-7781~4, 1600-3456

3) 희망의 집수리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 및 최근 2년 이내 수혜가구는 제외)
사업내용	- 공공 주도형으로 통합 / 1가구 120만원 이내(재단 협업사업 신청 시 200만원 이내 추가지원) * 한국에너지재단(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공동으로 집수리사업 추진 시 재단에서 가구 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반지하 가구 지원가능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샷시, 싱크대, 타일, 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화재경보기, 곰팡이제거(21년신설) *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5개 공종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에어컨)은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지원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신청 - 집주인 동의서 필수이므로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완료 후 방문요망
신청 및 문의처	- 자치구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바. 주거복지센터

- ◆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위기에 몰린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문제 관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종합서비스 제공

구분	세부내용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등)에 대한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을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사회복지기금 융자,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안내 (온라인, 전화, 방문, 내방상담 가능)

긴급주거비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 사업	- 주거취약계층(장애인,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발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보증금, 월 임대료, 연료비 체납, 집수리 등 직접 지원을 통해 긴급 위기에 놓인 가구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 자치구(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상담 연계 등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급주거비 지원 - 지역자원과 연계지원을 추진하며, 단체 실무자,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교육 실시				
주거복지센터 현황	연번	지역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	용산구 백범로99길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02-2135-5690
	2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남구 광평로 295, 309호(수서동, 사이룩스서관)	02-3453-2270
	3		강동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00, 엘크루507호	02-6933-6870
	4		강북주거복지센터	강북구 삼양로 35길 34(미아동)	02-980-4808
	5		강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상가 2층 204-1호	02-2661-0896
	6		관악주거복지센터	관악구 중앙2길 16, 1층(봉천동)	02-875-3197
	7		광진주거복지센터	광진구 긴고랑로 41, 4층(중곡동, 공유나눔공간)	02-2138-8373
	8		구로주거복지센터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2층(구로동, 구로시설관리공단 별관)	02-853-9275
	9		금천주거복지센터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311-2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02-855-4522
	10		노원주거복지센터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3층(상계동, 원터행복발전소)	02-930-1180
	11		도봉주거복지센터	도봉구 도봉로152길26, 렉시온프라자204호	02-6958-8081
	12		동대문주거복지센터	동대문구 장한로6, 장안빌딩 602호	02-2138-1901
	13		마포주거복지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190, 208호(성산동, 이안상암2차아파트)	02-6383-6100
	14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서대문구 가좌로 77, 201호(홍은동)	02-303-3733
	15		서초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9길 1-3, 내곡선포레 1층	02-6202-9000
	16		성동주거복지센터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802호	02-6933-8051
	17		성북주거복지센터	성북구 동소문로 260, 705호(하월곡동, 길음환송주차빌딩)	02-922-5942
	18		송파주거복지센터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22 성현빌딩 4층	02-400-2271
	19		양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77, 정동프라자501호	02-6933-6190
	20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147, 당산빌딩 3층 305호	02-785-7044
	21		용산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51, 서조빌딩3층	02-6713-5055
	22		은평주거복지센터	은평구 통일로 684, 4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미래청1동)	02-388-2979
	23		종로주거복지센터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9 301호	02-722-8658
	24		중구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156, 광희빌딩 별관 6층	02-2138-8791

연번	지역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25		중랑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 상담 103호	02-3421-8961
26	경기	시흥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79번길 21, 202호	031-311-2203
27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031-280-6342
28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권선동)	031-220-3104
29	대구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	053-563-0777
30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 중구 서성로 16길 53	053-425-5539
31	전북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32(지하, 중앙동4가)	063-283-9704
32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 3길 29, 3층	063-281-0160
33	충남	천안주거복지센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57, 상가 207호	041-572-0606
34	인천	인천주거복지센터	인천 동구 화도진로 175	032-529-4521
35		인천광역시 광역시주거복지센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씨티빌딩 20층	032-260-2652
36	강원	원주주거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밝음신협 6층 603호	033-745-2333
37	충북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 1층	043-286-7890
38	제주	서귀포주거복지센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	064-767-9500
39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	제주시 동광로 102 변영빌딩 2층 202호	064-753-9500

사. 주거급여²¹⁾

-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1) 마이홈(<https://www.myhome.go.kr/>) →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기준: 기준 임대료 (원/월) <table><tr><th>구분</th><th>1급지 (서울)</th><th>2급지 (경기,인천)</th><th>3급 (광역시, 세종시)</th><th>4급지 (그 외)</th></tr><tr><td>1인</td><td>327,000</td><td>253,000</td><td>201,000</td><td>163,000</td></tr><tr><td>2인</td><td>367,000</td><td>283,000</td><td>224,000</td><td>183,000</td></tr><tr><td>3인</td><td>437,000</td><td>338,000</td><td>268,000</td><td>218,000</td></tr><tr><td>4인</td><td>506,000</td><td>391,000</td><td>310,000</td><td>254,000</td></tr><tr><td>5인</td><td>524,000</td><td>404,000</td><td>320,000</td><td>264,000</td></tr><tr><td>6~7인</td><td>621,000</td><td>478,000</td><td>379,000</td><td>310,000</td></tr></table>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4,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4,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 (※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까지) - 지급기준 및 산정 방법 <table><tr><th>구분</th><th>경보수</th><th>중보수</th><th>대보수</th></tr><tr><td>지원금액 (수선주기)</td><td>457만원(3년)</td><td>849만원(5년)</td><td>1,241만원(7년)</td></tr><tr><td>수선내용</td><td>도배, 장판 등</td><td>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td><td>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td></tr><tr><td>소득인정액</td><td colspan="3">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 35%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35%초과~45%이하: 80%지원 - 육로 통행 불가능 지역: 수선비용 10% 가산 </td></tr></table>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 35%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35%초과~45%이하: 80%지원 - 육로 통행 불가능 지역: 수선비용 10% 가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 35%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35%초과~45%이하: 80%지원 - 육로 통행 불가능 지역: 수선비용 10% 가산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지원절차	신청접수	- 읍·면·동																																			
	소득·재산 등 조사	- 시·군·구: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보장결정	- 시·군·구: 결정통지																																			
	급여지급	- 시·군·구																																			
주거급여 상세안내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한 한부모가족지원 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 입주기간: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최장 6년) - 입주방식: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지원항목: 임대보증금은 정부지원,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부담		
운영기관	권역	운영기관	전화번호
	서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구세군두리움)	☎02-363-5722
	경기	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031-216-9081
	경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강원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765-8314
	대전	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042-585-3004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070-7725-6909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3
	전북	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	☎063-714-2109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6053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3-355-8042
	경북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054-244-9701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055-716-2364

자. 한사랑 전세론(한부모가족 전세자금대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인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대출내용	-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함
대출 한도	- 최대 200백만원의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이내 ②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의 한사랑 전세론 상담예약 및 방문
문의	- KEB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4. 교육 지원

가. 장학금 지원

1) 한국장학재단

구분

세부내용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2022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

(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2022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재단 홈페이지 확인

소득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성적 기준)

분류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 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지원금액

소득구간	학기별 최대지원 금액	연간 최대지원 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지원절차 <table><tr><th>절차</th><th>수행주체</th><th>세부내용</th></tr><tr><td>신청</td><td>학생</td><td> -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부모/배우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서류 제출 </td></tr><tr><td>소득 정보 확인</td><td>한국장학재단</td><td> - 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보건복지부) -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행안부, 대법원)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 제공 </td></tr><tr><td>심사</td><td>대학, 한국장학재단</td><td> -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 재단정보심사 기준 확인 </td></tr><tr><td>선발</td><td>한국장학재단</td><td> - 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 확인) -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 </td></tr><tr><td>장학금 지급</td><td>한국장학재단</td><td> - 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 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td></tr></table>	절차	수행주체	세부내용	신청	학생	-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부모/배우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서류 제출	소득 정보 확인	한국장학재단	- 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보건복지부) -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행안부, 대법원)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 제공	심사	대학, 한국장학재단	-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 재단정보심사 기준 확인	선발	한국장학재단	- 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 확인) -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 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절차	수행주체	세부내용																	
신청	학생	-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부모/배우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서류 제출																	
소득 정보 확인	한국장학재단	- 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보건복지부) -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행안부, 대법원)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 제공																	
심사	대학, 한국장학재단	-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 재단정보심사 기준 확인																	
선발	한국장학재단	- 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 확인) -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 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국가 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 대상대학: 당해년도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가능대학 중 II 유형 참여 대학, ※ 지원 제한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 · II 대학의 '22년도 신 · 편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대지원 권고 사항(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보호종료 대학생, 선취업 · 후진학 대학생, 쉼터 입 ·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하는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 자녀 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결정(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지원자격: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학생, '21년 사업공고일 ~ 학 교추천(학교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선정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중2 ~ 고3 학생 중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 신청 제외 - 정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타 장학금 수혜 중인 학생, 동일연도 중복 신청자 - 지원내용: 장학금(월 25~45만원) 바우처로 지급 멘토링 캠프, 진로 컨설팅(고1~2)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문의	-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전화번호: ☎1599-2000																		

2) 서울장학재단

① 고등학생 장학금

분류	선발 시기	선발 인원	신청 자격	장학금 구분
고교 진로 장학금	3~4월	1,328명	- 서울소재 고교 재학생으로 재능과 진로개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 -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150만원
예체능 장학금	5~7월	150명	-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특기자	300만원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	22년 미정	20명	- 서울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연간 100만원 (2년 지원)
오토꿈이름 서울 장학금	4~5월	30명	-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3학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	200만원
서울꿈길 장학금	3~4월	100명	-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대안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 가정 청소년	최대 150만원
SOS 장학금	분기별	253명	-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저소득 긴급 위기 가구의 중,고,대학생 - 거주지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	연간	100명	- 서울시 저소득, 폐업 등 위기 소상공인 가정의 중 · 고 · 대학생 - 서울신용보증재단 추천	최대 100만원

② 대학생 장학금

분류	선발 시기	선발 인원	신청 자격	장학금 구분
대학 장학금	4~5월	2,470명	-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득 4구간 이하	최대 200만원 (등록금)
공익인재 장학금	4~5월	60명	- 사회공익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대학생 - 서울지역 대학교에 재학하는 최근 3년 이내 공익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생 - 1년 동안 장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활동에 참여하고 하는 학생	최대 400만원

우수인재 장학금	3~4월	100명	-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서울시민으로서 비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공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00만원
희망플러스 장학금	3~4월	285명	-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자녀) 중 비서울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0만원
공항리무진 서울교환학생 장학금	5~7월	60명	- 교환학생으로 파견(예정)된 서울 소재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	350~500만원
서울평화 희망장학금	10~11월	10명	- 서울지역 대학의 재학생 중 소외된 이웃의 인권증진, 사회정의를 위해 활발히 활동한 학생	최대 200만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4~6월	100명	-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로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불가) - 독립유공자의 후손(4~6대손)	300만원
서울희망직업 전문학교	3, 9월	200명 (학기당 100명)	- 서울소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직업전문학교 학부생 - 당해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100만원
청춘 Start 장학금	3~4월	40명	- 서울소재 대학 신입생(입학년도 고교 졸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 고교시절 복지시설(보육원, 쉼터, 그룹홈 시설) 거주 이력자	신규: 연간 300만원 기존: 연간 200만원
유영아 학업 장학금	11~12월	24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중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최근 두 학기 간 학업 성적이 향상된 학생	200만원
SOS 장학금	분기별	253명	-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저소득 긴급 위기 가구의 중·고·대학생 - 거주지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	연간	100명	- 서울시 저소득, 폐업 등 위기 소상공인 가정의 중·고·대학생 - 서울신용보증재단 추천	최대 100만원
KT&G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10~11월	100명	-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정	최대 100만원

3) 서울시 자치구 장학금

① 서울시 장학금 관련 기관²²⁾

자치구명	기관명	전화번호
종로구	종로구장학회	☎02-2148-2011~2
중구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02-3396-4664
용산구	용산복지재단	☎02-2074-9191
성동구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02-2286-5860
광진구	교육지원과	☎02-450-7191
동대문구	교육진흥과	☎02-2127-4515
중랑구	교육지원과	☎02-2094-1892
성북구	교육지원담당관	☎02-2241-2393
강북구	복지정책과	☎02-901-6625
도봉구	교육지원과	☎02-2091-2303
노원구	노원교육복지재단	☎02-949-7920
은평구	은평구민장학재단	☎02-351-8512~3
서대문구	안산장학회	☎02-330-8190
마포구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02-3153-6361~2
양천구	교육지원과	☎02-2620-3113
강서구	강서구장학회	☎02-2600-6917
구로구	구로구장학회	☎070-4916-2977~9
금천구	금천미래장학회	☎02-2627-2229, 2812
영등포구	영등포구장학재단	☎02-2670-3070~4
동작구	교육정책과	☎02-820-9094
관악구	교육지원과	☎02-879-5655
서초구	서초장학재단	☎02-2155-8822
강남구	강남복지재단	☎02-3446-1612
송파구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02-2147-2389
강동구	강동구복지포털	☎02-3425-5213, 02-1577-1188

22) 출처: 서울장학재단

4) 아이들과미래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SGI 꿈나무희망파트너 장학사업	- 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차상위 포함) 세대 중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하는 초, 중학생으로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 꿈나무 장학사업 • 교육장학금(총 120만원), 진학지원금(50만원), 생일선물구입비 - 희망파트너 장학사업 • 꿈나무 장학생 중 멘토링 희망 장학생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와 1:1 학습 멘토링 지원 • 대학생 멘토 활동비 지원, 멘토 수료 장학금 지급
문의	- 홈페이지 (http://www.kidsfuture.or.kr) - 전화번호: ☎02-843-8478

5) IBK 행복나눔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연간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및 미혼의 자녀로 고등·대학교 재학생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휴학생, 국외 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지원 불가) ※ 생활비 지원자 :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로, 관련 서류제출이 가능한 자 ※ 우선 고려사항: 지원자의 경제적 상황
신청방법	- 사전 상담(신청 전 지원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작성·구비 및 제출 → 심사 → 선정 및 지원
문의	- 홈페이지 (http://www.ibkfoundation.or.kr) - 전화번호: ☎02-3789-3984

6)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4년제 대학	MIU자녀 - 자격 요건: 군인, 소방, 경찰공무원 자녀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2, 3, 4학년 학생 - 성적 기준: 평점 3.5/4.5 이상 - 연간 지원금액: 300만원
	북한이탈 청소년 - 자격 요건: 정부기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청소년으로 2, 3, 4학년 학생 - 연간 지원금액: 600만원
	지역산학 - 자격 요건: 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에 재학 중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예정으로

구분		세부내용
	협력	학교추천을 받은 학생 - 연간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대학원	국내 대학원 (석·박사)	- 자격 요건: 의생명과학분야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 - 성적 기준: 최종학교 평점 4.0/4.5 이상 - 연간 지원금액: 2,000만원
	해외 대학원 (석·박사)	- 자격 요건: 의생명과학분야 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 - 성적 기준: 최종학교 평점 4.0/4.5 이상 - 연간 지원금액: 4,000만원
문의		- 홈페이지 (http://www.asanfoundation.or.kr)

7)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① 꿈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꿈장학멘토: 장학 기간 동안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중 장학생과 주기적인 만남을 지원함
지원내용	- 멘토를 통해 장학금 지급 - 선정 시 재단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해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학교급에 따라 12개월 동안 장학금을 차등 지원함 • 중학생: 180만원(월 15만원 기준) • 고등학생: 240만원(월 20만원 기준)
신청기간	- 3~4월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 진행과정: 공모 →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발표 - 신청방법 • 학생: 지원신청서 작성 및 멘토에게 멘토링계획서 작성 요청 • 멘토: 멘토링계획서 작성 → 관련 증빙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경제상황 증빙서류 등)

② SOS 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런 가정의 경제 위기, 학교 부적응 등 긴급하게 장학금 및 멘토링이 필요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 SOS장학멘토: 장학 기간 동안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중 에서 주기적 만남이 가능하고 성장과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 과의 연계 지원

지원내용	- 선정된 달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이내)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18시까지 ※ 꿈장학 공모가 진행되는 3~4월에는 신청을 받지 않음
신청방법	- 진행과정: 공모(상시) → 선정(매월, 심의 및 선정) → 발표(다음 달 중순) - 신청방법 • 학생: 지원신청서 작성 및 멘토에게 멘토링계획서 작성 요청 • 멘토: 멘토링계획서 작성 → 관련 증빙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경제상황 증빙서류 등)
문의	- 홈페이지 (https://www.sdream.or.kr) - 전화번호: ☎02-727-5400~5401

8)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든든 학업지원금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대학교 재학생 중 일전 재산기준 이하의 취약계층 가족 (1가구 1학생/1가구 2학생 신청하여도 1학생만 선발함)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일정 중위소득(100%)이하 가정 ※ 소득환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납부금액
지원내용	- 지속적인 학업 유지를 위하여 학업 관련 비용을 보조(300만원) ※ 국가 장학금, 또는 국가 및 민간 교육복지 서비스와 중복 수령 가능
제출서류	- 기본 서류 및 취약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 처리)
문의	- 홈페이지 (http://www.kyswf.or.kr) - 전화번호: ☎02-3449-6426

9) KT&G 복지재단 장학사업

① 중,고교 상상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학습 능력이 우수한 사회배려계층자녀
지원내용	- 장학금(학습 활동 비용) 최대 재학 3년간 지원 - 교과 및 비교과 활동, 학습보조비 등 학습 전반 활용 - 매년 '장학생 지속지원 검토'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신청방법	- 학교 재직 중인 교원을 통해 신청 후 재단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문의	- 홈페이지 (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전화번호: ☎070-4124-6451

② 대학 상상장학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국내 대학 재학생
지원내용	- 장학금(학습 활동 비용) 최대 1년간 (대학교 정규 2개 학기) 지원 • 등록금이 아닌 학습 부문에 사용 가능한 장학금 형태로 지원 (한국장학재단 이종지원시스템 등록 표기 상으로만 생활장학금에 속함) •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시, 기존 우리 재단 상상 장학금 지원자 재신청 가능 (지원 대상 요건은 매년 모집 공고에 기재, 상상장학 수혜 경험자 재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재단 자체 공모를 통한 신청 후 재단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문의	- 홈페이지 (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 전화번호: ☎070-4124-6451

나. 학습지원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²³⁾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자녀 1인당 연 154만원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8만 3천원 지원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절차	- 서비스 신청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통합조사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2) 학력인정 평생교육

- ◆ 평생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과정을 통해 학력 인정
 (학기를 단축하여 운영할 시 초등학교 2년, 중 · 고등학교 1년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

23) 출처: 여성가족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021.04.01 기준)

연번	시·도	시설명	특성학교 여부	연번	시·도	시설명	특성학교 여부
1	서울	서현초등학교		21	대전	대전예지중고등학교	
2	서울	서울자동차고등학교	O	22	대전	대전시립중고등학교	
3	서울	성지중고등학교		23	경기	계명고등학교	
4	서울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O	24	경기	안양상업고등학교	O
5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25	경기	진영고등학교	O
6	서울	정암미용고등학교	O	26	경기	부천실업고등학교	O
7	서울	진형중고등학교		27	경기	고양송암고등학교	O
8	서울	청량정보고등학교	O	28	경기	진영중학교	
9	서울	청암중고등학교		29	경기	진영초등학교	
10	서울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예술/O	30	강원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일반/O
11	부산	국제금융고등학교	O	31	충북	예일미용고등학교	
12	부산	부경보건고등학교	O	32	전북	진북고등학교	
13	부산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중학교	O	33	전북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	부산	부산경호고등학교	O	34	전북	군산평화중고등학교	
15	부산	부산미용고등학교	O	35	전북	군산평화중고등학교	
16	부산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중학교	O	36	전북	남일초중고등학교	일반/O
17	부산	부산예원고등학교	O	37	전북	인화초중고등학교	
18	부산	부산예원고등학교 병설중학교	O	38	전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19	부산	부산조리고등학교	O	39	전남	홍지중고등학교	
20	부산	한남중미용정보중고등학교	O	40	경북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O
21	인천	남인천중고등학교	O	41	경남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O
22	인천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O	42	경남	경남미용고등학교	O

3)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내용	-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상세 기준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ie.go.kr)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 참고	
신청 방법 (택 1)	①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부모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포(http://www.bokjiro.go.kr) ※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4) KT&G 복지재단 행복가정 학습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 매월 1일 ~ 20일 - 온라인 사연 접수: 재단 홈페이지 행복가정학습지원사업 사업 안내 페이지 하단의 신청버튼 클릭 →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를 통해 사연 신청 접수 - 첨부서류 • 아동·청소년이 저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차상위 증명서류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사본 • 기관의 고유번호증
지원단위	- 아동·청소년 사업 수행 중인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차상위·수급·일반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아동·청소년(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 기존 선정 아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학습과 관련된 학습물품 구입비로 10만원 지원 • 지원 가능 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 도서, 교복, 책가방, 실내화, 체육복(학교지정), 책상, 의자, 실내화, 실내화주머니, 교구, 안경, 운동화, 자격증접수비, 학원비, 학습지 비용 • 지원 불가 물품: 의류(옷, 운동화, 속옷 등), 상품권, 영양제, 자전거 등 학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
지원절차	- 온라인 사연접수(매월 1일 ~ 20일) → 50명 선정발표, 공문발송(매월 마지막 주)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 → 물품검수 및 수령증, 영수증 사본 우편 발송(1개월 이내)
선정발표	- 마지막 주중 재단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 발표
문의	- 홈페이지 (http://www.ktnghwelfare.org) - 전화번호: ☎02-563-4459

5) 아이들과미래재단 교육 지원 사업

구분	세부내용
EY한영 한마음수학 멘토스쿨	- 수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초등학교 3~4학년(6명)대상 수학멘토링 진행 -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 연간 1회 이상 기관별 문화체험 지원 - 대학생 멘토 양성 및 지원 • 대학생 멘토 오리엔테이션/해단식 및 월별 교사회의 진행 • 활동비(교통 및 회의비 등), 장학금 지원을 통한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 - 전화번호 : ☎02-6953-3521
청소년의 멘토 KB! 학습멘토링	- 사회복지 유관기관 대상 청소년 학습 및 정서 지원 • 대학생 멘토와 중학생 멘티 1:2 연계 지원 • 학습멘토링, 개별문화활동 - 사회복지유관기관 활동 지원 • 비정기, 수시 문화 활동 지원 • 자체 진행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참여 기관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kbhope.or.kr

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2022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아동 (50명 내외 예정)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만 7세 ~ 만 18세 아동)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 전문교육과정 연계비(학원비, 레슨비 등) • 대회 참가비 • 재능계발 보조비(재능계발장소 연계비, 교통비 등) • 교재 및 교구 구입비 • 체력 증진비
지원자격	- 공통자격(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급권자, 동조 제10항에 차상위계층 아동 / 일반 저소득 가정 아동 • 학교장, 해당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기관(또는 시설)의 장, 주민센터장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 • 재단의 요청 시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활동 참여 가능한 아동 • 본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외부 후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 - 분야별 세부 지원 자격(재단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접수 기간 : 전년도 11월 ~ 12월 -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접속(www.childfund.or.kr)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이메일 및 우편제출(이메일, 등기우편 제출) ※ 접수 문의: 지역별 어린이재단 사업기관 리스트 참조

구분	세부내용
문의	- 홈페이지 (https://www.childfund.or.kr) - 전화번호: ☎1588-1940

7)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부모 장학생 지원

구분	세부내용
여성가장 장학금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고 세대주로 되어있는 여성으로서 동일 세대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전원이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는 자 ※ 부양가족 요건(부양가족 전원이 해당되어야 함) • 지원자의 직계존속, 배우자로서 남자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인 자 • 지원자의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 지원자의 형, 제, 자, 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남자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인 자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50% 감면 - 직전학기 평균평점 2.3이상
산학협력 장학금	- 협약이 체결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대전여민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천안여성의전화, 서울한부모회, 팸라이프 가족연구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소속 회원 - 한부모 당사자 본인 입학금 면제, 수업료 전액 무료 -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소속 활동회원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관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원확인서 등) - 직전학기 평균평점 1.5이상
문의	-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https://www.khcu.ac.kr/ad/main/index.do) - 경희사이버대학교 (https://www.khcu.ac.kr/main/index.do) - 전화번호: ☎02-3299-8700

5. 양육지원

가.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 온라인 전문가 상담 • 절차: 회원 로그인 → 상담분야 게시판 이동 → 상담란 입력 → 답변 확인 • 분야: 육아상담, 심리·정책상담, 상담예약, 어린이집 이용 상담, 시스템 이용 문의
문의	-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2)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 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서울시 모자보건서비스 정보 제공 • 부모교육 신청 및 자료 배포 • 상담실 운영 • 의료기관, 산후도우미, 수유시설 등 정보 제공 • 임신 및 출산 정보 제공(임신주기별 특징, 출산, 순산, 산후조리 등) - 양육 정보 제공(아동 발달단계, 예방접종, 모유수유 등) - 직장맘지원센터 안내 • 직장맘의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지원 • 직장·가정 내 고충 상담, 법률 상담, 역량강화교육, 직장맘 커뮤니티 등 •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3개 센터 운영
문의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seoul-agi.seoul.go.kr/smom) -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www.workingmom.or.kr/mom_home) -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www.gworkingmom.net) -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epworkingmom.tistory.com)

3) 우리동네 키움포털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및 시설 검색: 우리동네 키움포털 → 맞춤형 정보 서비스 <table border="1"> <tr> <td>시설 정보</td><td>우리동네 키움센터, 영·유아 보육시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도서관, 야외시설, 체험시설</td></tr> <tr> <td>서비스 정보</td><td>문화행사,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초등생 교육 프로그램</td></tr> </table> - 각종 아이돌봄 사업 안내 • 열린교육방(만 6세이하 영유아 및 부모), 공동육아나눔터(18세 미만의 자녀나 부모), 우리동네키움센터(만6~12세 초등학생), 초등돌봄교실(초1~6학년), 지역 아동센터(만 18세 미만)	시설 정보	우리동네 키움센터, 영·유아 보육시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도서관, 야외시설, 체험시설	서비스 정보	문화행사,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초등생 교육 프로그램
시설 정보	우리동네 키움센터, 영·유아 보육시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도서관, 야외시설, 체험시설				
서비스 정보	문화행사,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초등생 교육 프로그램				
문의	- 홈페이지 (iseoul.seoul.go.kr)				

나. 임신·출산 지원

1)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 (다태아 임신부 100만원 지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임신확인서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영업점 방문 →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신청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온라인신청: BC/삼성카드 홈페이지 신청

②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 만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의 의료비, 처방약제
사용방법	-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444)

③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최저 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군·구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 수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④ 첫만남이용권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지원내용	-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⑤ 발급 관련 문의처

문의내용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국민행복카드 출시 및 사용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번없이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1566-3232 (*4번선택)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BC카드	www.bccard.com	☎1899-4651
	롯데카드	www.lottocard.co.kr	☎1899-4282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1566-3336

※ 기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2) 해산급여

구분	세부내용	
해산급여	구분	내용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국민행복카드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긴급지원(주 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출산 예정도 포함) - 위기 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등
	지원내용	- 해산비로 70만원 지원(쌍둥이는 14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신청 대상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②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 ※ 출산일이 21년 5월 22일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 가정으로 확대 지원 ③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화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⑤ 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중복지원예방)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출산 여부: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서비스 항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식사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산모 교육 등),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서비스 기간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20일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제공시간: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1주 5일)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신청기간	-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www.bokjiro.go.kr)
문의	- 홈페이지: 복지포털(http://online.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4) 임신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구분: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4개월 이하), 영·유아 65개월 이하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 · 지도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보충식품 지원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의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문의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대상	-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 -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및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방법	- 신청기관: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결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사이트 (http://www.ei.go.kr)

6)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환아관리 대상자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환아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노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자를 대상 만 나이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01년생은 '20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1.5.15. 출생 환아는 '20.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환아관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 환아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를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2~4만원을 지원하며, 2차 정밀 검사 비용의 경우 7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다. 자녀 성장 지원

1) 청소년 특별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9세 ~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포함 -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중위소득 65%이하: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지원기간	- 1년 이내(1회 연장가능/학업, 자립지원에 한해 2회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수시 접수)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세부사항	지원금
	생활지원	-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1년)
	건강지원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 치료 - 예방·재활 - 입원·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이내 (1회지원/ 1년 또는 매월지원)

	학업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대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아내(검정고시)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아내 (매월 1회/1년)
	법률지원	-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아내 (1회 지원)
	상담지원	-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20만원 이내 (매월 1회/1년)
	청소년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활동비 지원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 -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매월 1회/1년)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자녀장려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자 - 상세 요건	
	부양자녀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소득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지급 -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제도 안내 → 지급액 산정 → 모의계산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 5. 1. ~ 6. 1.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 6. 2. ~ 12. 1.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 10% 감액 지급)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문의	- ☎126

3) 아름다운 동행: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위시박스'

- ◆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의 학령기아동 및 청소년(8세~19세)을 대상으로 착한 소원을 후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의 자녀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범위	- 개인의 소원, 자기발전, 진로 등을 위한 최대 50만원 이내 물품 지원 - 단순 지원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물품 (가구, 가정, 컴퓨터 등은 제한)
지원절차	지원 신청 - 매달 수시 지원 - 매달 1일 ~ 말일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다음 달 1일~10일 ⇒ 지원 심의 - 다음 달 11일~15일 ⇒ 지원결정통보 - 다음 달 16일
신청방법	- 개인 또는 기관 신청 - 신청서 및 서류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 → 지원 신청 → 사업 안내 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http://dreaminus.org/) - 아름다운 동행: ☎02-737-9595

라. 보육 지원

1) 영아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미이용 시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난민 인정 아동 포함,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 국적자 가능)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급 ※ 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아동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난민 인정 아동 포함,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 국적자 가능)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3) 장애아동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5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4) 가정양육수당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7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액	연령
	금액
	0개월 ~ 11개월
	12개월 ~ 23개월
	24개월 ~ 86개월 미만
	10만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이용방법	- 신청 계좌로 매월 입금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문의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육료: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5) 시간제 보육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최대 월 80시간 한도(종일반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 보육 제공)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자부담 1,000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4,000원)
지원절차	- 아동등록 •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 오프라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 예약 • 사전예약(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온라인 및 전화 신청 • 당일예약(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전화 - 이용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중 예약시간 - 요금결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문의	-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6) 방과후 보육료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차상위 이하 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법정 한부모 / 시설 입소자의 동반 자녀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지원내용	-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한 경우 장애아보육료의 50%(232,000원)(국비+지방비)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일반아동은 월 20만원 지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7) 유아학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이상)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지급											
지원내용	<table><tr><th>구분</th><th>국, 공립 유치원</th><th>사립 유치원</th></tr><tr><td>유아학비/보육료</td><td>100,000(월)</td><td>280,000원(월)</td></tr><tr><td>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td><td>50,000</td><td>70,000</td></tr></table>			구분	국,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보육료	100,000(월)	280,000원(월)	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	50,000	70,000
구분	국,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보육료	100,000(월)	280,000원(월)										
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	50,000	70,000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가능, 단 온라인의 경우 부모만 신청가능 - 필요서류 방문신청: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신청: 취학유예증명서											
문의	- 유아학비 콜센터 ☎1544-0079											

마. 돌봄지원

1) 아이돌봄 지원사업²⁴⁾

-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① 서비스 개요

서비스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시간제	일반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840시간	시간당 10,550원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영아 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세 이하 영아	월200시간	시간당 10,550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2,660원

② 서비스 제공범위

서비스종류		서비스제공범위
시간제	일반형	- 학교·보육시설 등·하원/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가사활동 제외)
	종합형	- 일반형 서비스 이외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1회) 및 걸레질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가사활동 제외,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대상 질병: 수족구병, 감기, 눈병, 구내염 등

③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시간제서비스 비용

- 기본 이용요금: 시간당 10,550원(일반형), 시간당 13,720원(종합형)

24) 아이돌봄서비스(<https://idolbom.go.kr/indexPage.do>)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	(시간제-일반형) 10,550원/시간당 (시간제-종합형) 13,720원/시간당
야간할증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동시 돌봄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와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33.3% 할인
최소수수료	서비스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건당 10,550원 부과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 기본 이용요금: 시간당 10,550원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	10,550원/시간당
야간할증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동시 돌봄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와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33.3% 할인
최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④ 정부지원 기준

기준	내용
대상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서비스별 아동 연령
양육공백	-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격 여부 입증서류(부모의 취업 등)로 판단
정부지원 중복금지	- 시간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
추가지원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

⑤ 신청절차

절차	내용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서비스 이용신청 (서비스제공기관)	- 신청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정회원 전환 ⇨ 서비스 신청 -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 -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문의	-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

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120% 초과 가정(자부담40%)		
지원내용	- 아동 1명 당 최대 840시간 이내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시간 당 이용요금		
	구분	연 840시간 이내	연 840시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본인부담 없음)	11,28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4,510원 (40%)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3)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① 초등학교

구분	세부내용
방과후 학교	- 특기적성, 수준별 맞춤형 교과프로그램, 돌봄 등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
돌봄 교실	- 별도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② 지역아동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보호자와 지역 사회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운영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이상을 원칙(센터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가능) - 기본운영시간 : 학기 중 14:00~19:00 (필수운영시간) : 방학 및 공휴일 12:00~17:00 (필수운영시간)
프로그램	- 기본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야간 보호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문의	-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www.icareinfo.go.kr) - 전화번호: ☎02-6283-0255

③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초등 4학년~중등 3학년까지의 청소년
지원내용	-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 관리 등 종합서비스 지원
운영기관	- 운영기관 검색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청소년활동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문의	-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 전화번호: ☎02-330-2800

④ 우리동네 키움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6세~12세의 아동				
지원내용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심, 여가, 놀이공간 제공 - 집·학교에서 10분 거리 내 위치, 학교수업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돌봄방식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상시 돌봄</td><td> 종일 돌봄 시간제 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으로 매일 센터 서비스 제공 시간 중 2시간 이상 이용 -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2시간 기준으로 단시간(2시간 이내) 혹은 요일별(2시간 이상) 이용 </td></tr></tbody></table>	구분	내용	상시 돌봄	종일 돌봄 시간제 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으로 매일 센터 서비스 제공 시간 중 2시간 이상 이용 -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2시간 기준으로 단시간(2시간 이내) 혹은 요일별(2시간 이상) 이용
구분	내용				
상시 돌봄	종일 돌봄 시간제 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으로 매일 센터 서비스 제공 시간 중 2시간 이상 이용 -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2시간 기준으로 단시간(2시간 이내) 혹은 요일별(2시간 이상) 이용				
일시 돌봄	- 학교 휴업 및 공휴일,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이용				

구분	세부내용
운영시간	- 학기 중: 13:00 ~ 19:00 - 장 · 단기 방학 중: 09:00 ~ 18:00 ※센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이용요금	- 이용 아동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 책정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상해보험 등 관련 제반비용으로 구성) - 지역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자치구별 이용료 상이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5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지원절차	- 신청 ⇨ 신청 확인 및 입소 상담 ⇨ 이용결정 및 통보 ⇨ 서비스 제공 - 신청: 우리동네 키움포털(icare.seoul.go.kr) → 돌봄서비스 예약(우리동네 키움센터 예약) - 자치구별 센터 안내: 홈페이지 → 맞춤형 정보 서비스 → 지역 검색
돌봄시설 위치찾기	- https://www.gov.kr/portal/mapGis
문의	- 홈페이지: 우리동네 키움포털 (icare.seoul.go.kr) - 우리동네 키움센터: ☎02-120, ☎02-731-2120

바.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²⁵⁾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지원내용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r><tr><td>발달기초</td><td>-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td><td rowspan="4">주 2회 (회당 60분)</td></tr><tr><td>언어발달</td><td>-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td></tr><tr><td>초기 인지</td><td>-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td></tr><tr><td>정서·사회성</td><td>-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td></tr><tr><td>기타 서비스</td><td>-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td><td>보고서(월 1회) 부모상담(월 1회)</td></tr></table>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발달기초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보고서(월 1회) 부모상담(월 1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발달기초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보고서(월 1회) 부모상담(월 1회)														

25) 서비스 이용방법: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이용 가능(연중 접수)

구분	세부내용
	※ 여성가족부 가족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2)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지원내용	- 1가구 1명만 신청 및 선정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문제 해결 -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대상 예술심리치료 제공 - 음악교육 이론 및 실기: 피아노, 성악 등 수준별 맞춤레슨 <table><tr><th>구분</th><th>수급자, 차상위 월 평균소득 50%이하</th><th>월 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th></tr><tr><td>정부지원금</td><td>180,000원</td><td>160,000원</td></tr><tr><td>본인부담금</td><td>20,000원</td><td>40,000원</td></tr></table> ※ 서비스가격: 월 20만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구분	수급자, 차상위 월 평균소득 50%이하	월 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구분	수급자, 차상위 월 평균소득 50%이하	월 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욕구기준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구분	세부내용
	- 욕구판단: 진단서 혹은 소견서 제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 서비스 기본 프로그램 • 언어프로그램, 놀이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월 4회/회당 프로그램 40분 + 부모상담 10분) - 부가서비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및 부모훈련

사.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

1)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어린이집 지원: 보육 컨설팅,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취약보육 지원 및 관리 등 - 가정양육 지원 • 영유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 양육상담 및 부모교육		
	<table><tr><td>온라인 양육상담</td><td> - 문제행동, 영유아발달, 양육방법 관련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 제공 - 상담신청: 지역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의뢰 </td></tr></table>	온라인 양육상담	- 문제행동, 영유아발달, 양육방법 관련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 제공 - 상담신청: 지역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의뢰
	온라인 양육상담	- 문제행동, 영유아발달, 양육방법 관련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 제공 - 상담신청: 지역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의뢰	
	<table><tr><td>공통 부모교육</td><td> -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 교육신청: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방문 - 대면·비대면 부모교육, 온라인 부모교육 </td></tr></table>	공통 부모교육	-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 교육신청: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방문 - 대면·비대면 부모교육, 온라인 부모교육
	공통 부모교육	-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 교육신청: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방문 - 대면·비대면 부모교육, 온라인 부모교육	
	• 우리동네 보육반장		
	<table><tr><td>우리동네 보육반장</td><td> - 육아에 대해 무엇이든 믿고 물어볼 수 있는 선배 엄마 - 서울시 전역에 총 140명의 보육반장이 활동 중 </td></tr></table>	우리동네 보육반장	- 육아에 대해 무엇이든 믿고 물어볼 수 있는 선배 엄마 - 서울시 전역에 총 140명의 보육반장이 활동 중
우리동네 보육반장	- 육아에 대해 무엇이든 믿고 물어볼 수 있는 선배 엄마 - 서울시 전역에 총 140명의 보육반장이 활동 중		
<table><tr><td>사업 내용</td><td> - 우리동네보육반장이 다양한 육아지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 - 우리동네 보육반장 업무 • 육아자원 수집 및 관리 • 육아상담 및 육아 고민해결 • 출산전입 가정에 육아정보 제공 • 가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 부모 자조모임, 보육반상회 지원 </td></tr></table>	사업 내용	- 우리동네보육반장이 다양한 육아지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 - 우리동네 보육반장 업무 • 육아자원 수집 및 관리 • 육아상담 및 육아 고민해결 • 출산전입 가정에 육아정보 제공 • 가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 부모 자조모임, 보육반상회 지원	
사업 내용	- 우리동네보육반장이 다양한 육아지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 - 우리동네 보육반장 업무 • 육아자원 수집 및 관리 • 육아상담 및 육아 고민해결 • 출산전입 가정에 육아정보 제공 • 가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 부모 자조모임, 보육반상회 지원		
문의	- 홈페이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seoul.childcare.go.kr) - 대표 전화번호: ☎1577-0756		

2) 드림스타트²⁶⁾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이하로 아동 및 가족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실시 -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주기적 재 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서비스별 세부 프로그램은 거주지 지역센터로 문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신체/건강</td><td>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td></tr> <tr> <td>인지/언어</td><td>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td></tr> <tr> <td>정서/행동</td><td>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올바른 사회 인식,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시민으로 성장 도모 </td></tr> <tr> <td>부모 / 가족</td><td>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올바른 사회 인식,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시민으로 성장 도모	부모 / 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구분	세부내용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올바른 사회 인식,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시민으로 성장 도모										
부모 / 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 ※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 (http://www.dreamstart.go.kr) - 대표전화번호: ☎02-6283-0200										

3)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²⁷⁾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열악한 가정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청소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성, 도박, 약물 등 다양한 일탈 행동), 학업 중단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왕따, 집단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 우울, 자살, 자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
지원내용	- 만9세 ~ 24세의 위기(가능) 청소년에게 1:1 멘토링 형식으로 지원
프로그램	- 찾아가는 상담지원, 정서적 지원, 생활지원연계(상담, 숙식, 교육, 의료, 보건, 법률, 여가, 직업훈련, 취업), 자기계발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연계

26) 드림스타트(<http://www.dreamstart.kr>)

27)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www.teen1318.or.kr/>)

구분	세부내용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85-1318			
서울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및 수행기관	- 열악한 가정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청소년 - 가출 청소년 - 비행 청소년(성, 도박, 약물 등 다양한 일탈행동) - 학업 중단 청소년 - 학교 부적응 청소년(따돌림, 집단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 - 우울, 자살, 자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 인터넷 중독 청소년 - 은둔형 외톨이			
	지역수행기관	연락처	지역수행기관	연락처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85-1318	마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376-9900
	종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762-1318	양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646-8341
	용산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273-5820	강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061-8998
	성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99-1388	구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52-1319
	광진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05-2300	금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03-1873
	동대문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36-1318	영등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676-6114
	중랑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496-1895	동작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45-1388
	성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292-1779	관악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72-1318
	강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715-6661	서초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586-9128
	도봉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756-4501	강남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26-8555
	노원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091-1387	송파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407-7179
	은평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84-1318	강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8819-1388
	서대문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141-1318		

4) 꿈드림센터 (구.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9세~24세)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미진학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지원내용	- 상담지원: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찾아가는 상담 - 교육지원: 학습동기강화, 학습능력향상, 검정고시 대비반, 대학입시지원, 복교 지원 - 직업지원: 직업적성검사, 자립준비프로그램, 직업체험,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전문직업훈련 연계 - 자립지원: 자기계발, 근로권 교육 및 보호, 기초생활지원, 건강검진 등
지역센터	- 전국 21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꿈드림센터 -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index.asp) → 지역꿈드림 찾기

5) 시소와 그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0~7세 영유아 아동
지원내용	- 건강, 복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냄
문의	- 홈페이지 (www.sb7c.or.kr) - 서울마포센터: ☎02-706-0610 / 충북청주시센터: ☎043-232-0890 인천연수구센터: ☎032-812-2621

6) 따옴상담센터(영유아아동발달상담실)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영유아 및 아동(초등학생 6학년까지)과 학부모										
지원내용	- 동작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은 지원범위 내 치료비 감면 - 지원범위 : 1인 1과목, 주 1~2회 치료비(50%) 1년간 지원 - 이용금액: 1회 25,000원(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은 지원범위 내 치료비 50% 감면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상담사업</td><td>초기상담, 부모집단상담, 부모개별상담 등</td></tr> <tr> <td>진단사업</td><td>종합심리검사, 언어평가,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등</td></tr> <tr> <td>치료사업</td><td>모래놀이, 발달놀이, 놀이, 미술, 인지, 사회성</td></tr> <tr> <td>교육사업</td><td>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td></tr> </tbody> </table>	사업명	내용	상담사업	초기상담, 부모집단상담, 부모개별상담 등	진단사업	종합심리검사, 언어평가,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등	치료사업	모래놀이, 발달놀이, 놀이, 미술, 인지, 사회성	교육사업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명	내용										
상담사업	초기상담, 부모집단상담, 부모개별상담 등										
진단사업	종합심리검사, 언어평가,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등										
치료사업	모래놀이, 발달놀이, 놀이, 미술, 인지, 사회성										
교육사업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 2길 9, 5층(상도동 315-8)										
문의	- 대표전화번호: ☎02-825-5575										

6. 자립지원

가. 취업 및 창업 교육지원

1)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취업성공 패키지 I - 만 18세 ~ 69세 이하,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 ~ 만24세이하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그의 외국인 자녀 등 - 조건부수급자는 자지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
	취업성공 패키지 II - 청년층 대상자(만 18세 ~ 34세 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차년도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차년 1월1일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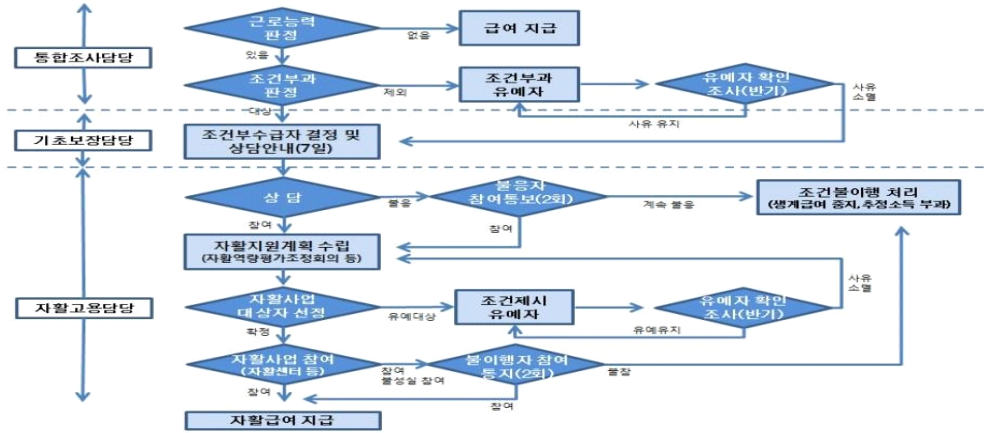
		- 중장년층 대상자(만 35세 ~ 69세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 (35세 이상, 69세 이하인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인 경우 참여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등						
	지원내용	-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1단계 진단·의욕증진·경로 설정</th><th style="width: 33%;">2단계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th><th style="width: 33%;">3단계 집중 취업알선</th></tr> </thead> <tbody> <tr> <td> - 집중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 취업역량평가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수립 </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 집중취업알선 - 구인정보 제공 - 이력서 클리닉 - 동행면접 등 </td></tr> </tbody> </table>	1단계 진단·의욕증진·경로 설정	2단계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3단계 집중 취업알선	- 집중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 취업역량평가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수립	⇒	- 집중취업알선 - 구인정보 제공 - 이력서 클리닉 - 동행면접 등
1단계 진단·의욕증진·경로 설정	2단계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3단계 집중 취업알선						
- 집중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 취업역량평가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수립	⇒	- 집중취업알선 - 구인정보 제공 - 이력서 클리닉 - 동행면접 등						
	문 의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역량 배양

구분	세부내용	
선정	-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 참여자격	
	구분	세부내용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 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 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진행 절차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대상 아님

- 평가방법



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 조건부수급자

: 정기 확인조사는 분기 1회, 시·군·구 자활고용지원팀 진행

<조건부과유예 사유별 판단기준>

구분	세부내용
-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 참가가 곤란한 자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 질병, 부상자를 양육, 간병, 보호해야 하는 가구	
- 대학생	
- 장애인	
-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유산, 사산 포함)	
- 사회복지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단,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일 경우 조건부수급자이나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의뢰 대상자로서 분기 1회, 분기당 1.5시간 교육 참여시 조건부과 유예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영 예정자(입대예정일 속한 달의 전달 1개월)
- 전역자(전역일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 교도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출소일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퇴소일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학교졸업(중퇴)자 (졸업(중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질병(수술이상) 또는 부상으로 2개월(60일)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 전역자(전역일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적정성 평가, 참여자 관리현황,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 조건부과 유예자

- : 기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부과 유예된 경우
- : 사유별 판단 기준

- 차상위자

-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 1회, 통합조사관리팀 진행

- 조건제시 유예자

-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자
- : 조건제시 유예기준
 -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12개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 자 (봉사기간이 자활사업과 중복된 사람)
 - 외국인 수급자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
 - 시험준비생(만 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 응시생 및 수능 준비생)
 - 취업준비생(만 30세미만의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등)
 - 실업급여 수급자(제출서류 적시된 기간만큼 유예 가능)
 - 만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 및 대학교 휴학생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
 -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월 소득 60만원 이하이나 자활 참여보다 현재 소득활동 유지가 적절한 사람)

자활지원계획	- 자활대상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수립 - 대상: 모든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최대 60개월, 근로유지형은 제한 없음) - 절차 ① 초기상담: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활역량평가표 참조하여 초기상담 실시,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② 대상자별 판단: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 (조건부 수급, 조건제시 유예, 조건부과 유예) ③ 자활사업 배치: 근로능력, 의욕 및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의뢰																						
	<table><tr><th>평가결과</th><th colspan="2">사업</th><th>실시기관</th><th>기준</th></tr><tr><td>80점 이상 (집중취업 지원대상자)</td><td colspan="2">국민취업지원제도</td><td>고용센터</td><td>-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td></tr><tr><td>80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td><td rowspan="2">자 활 근 로</td><td>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td><td>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td><td>-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td></tr><tr><td>45점 미만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td><td>근로유지형</td><td>지자체, 지역자활센터</td><td>-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 만 참여 가능한 자</td></tr></table>				평가결과	사업		실시기관	기준	80점 이상 (집중취업 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	80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45점 미만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	근로유지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 만 참여 가능한 자
	평가결과	사업		실시기관	기준																		
	80점 이상 (집중취업 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																		
	80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45점 미만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	근로유지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 만 참여 가능한 자																			
④ 대기자 처리방안: 자활사업 대기기간이 1개월 초과할 경우 다른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함 ⑤ 사후조치: 조건이행 여부, 유예상황, 사업 참여 결과를 최소 3개월마다 재확인하여 적절한 조치 취함(조건부과 유지 또는 변경)																							
참여 결과 확인	대상: 참여자 전체																						
	- 처리구조: 자활사업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읍·면·동 등)→시·군·구 자활정보시스템, 워크넷 등 행복e음과 연계된 전산시스템 이용 - 처리시기: 매월, 상시적으로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통지내용: 참여 일수, 자활근로소득(임금, 수당(실비 등)) 등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조건이행여부, 조건불이행 최종일자, 자활사업실시 기관 의견(불이행사유 등) - 확인결과 조치사항: 생계급여의 계속지급 또는 중지여부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이행기준 • 자활기업, 자활근로: 주 22시간 이상참여 (최소 주 3일(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22시간 이상 참여) ※ 근로유지형, 시간제 사업단 참여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 조건 불이행 기준																						
	<table><tr><th colspan="2">사업구분</th><th>기본사업기간</th><th>조건불이행기준</th></tr><tr><td colspan="2">자활기업</td><td>주 5일 이상</td><td rowspan="5"> ① 조건이행기준 위반시 ②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③ 월 조건부과일수의 ⅓이상 불참시 ④ 불성실한 참여 태도 (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폭행 등) </td></tr><tr><td rowspan="4">자 활 근 로</td><td>시장진입형</td><td rowspan="3">주 5일 (40시간)</td></tr><tr><td>인턴·도우미형</td></tr><tr><td>사회서비스형</td></tr><tr><td>근로유지형</td><td>주 5일(25시간)</td></tr></table>				사업구분		기본사업기간	조건불이행기준	자활기업		주 5일 이상	① 조건이행기준 위반시 ②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③ 월 조건부과일수의 ⅓이상 불참시 ④ 불성실한 참여 태도 (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폭행 등)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주 5일 (40시간)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주 5일(25시간)				
사업구분		기본사업기간	조건불이행기준																				
자활기업		주 5일 이상	① 조건이행기준 위반시 ②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③ 월 조건부과일수의 ⅓이상 불참시 ④ 불성실한 참여 태도 (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폭행 등)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주 5일 (40시간)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주 5일(25시간)																					

자활사례관리

신규참여자의 의뢰·배치

초기상담 및 진단·평가 기초교육

IAP·ISP 수립, 교육훈련

자활프로그램 제공

자활성공

사후 관리

자활근로(근로기회) 참여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개인 창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활실패 (실패 원인 분석 등 평가)

상담 및 IAP·ISP 재수립 후 자활프로그램 제공

타 자활프로그램 참여 의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GateWay (2+1개월)

자 활 사 례 관 리

자활근로 인건비	<table><tr><th>구분</th><th>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th><th>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th><th>근로유지형</th></tr><tr><td>지금액계</td><td>58,660원 /62,660원</td><td>51,350원 /55,350원</td><td>30,120원</td></tr><tr><td>급여단가</td><td>54,660원 /58,660원</td><td>47,350원 /51,350원</td><td>26,120원</td></tr><tr><td>실비</td><td>4,000원</td><td>4,000원</td><td>4,000원</td></tr><tr><td>표준소득액(월)</td><td>1,421,160원</td><td>1,231,100원</td><td>679,120원</td></tr><tr><td>비고</td><td>1일 8시간, 주 5일</td><td></td><td>1일 5시간, 주 5일</td></tr><tr><td></td><td>※성과금 월 최대 70만원까지 별도지급 할 수 있음</td><td></td><td></td></tr></table>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금액계	58,660원 /62,660원	51,350원 /55,350원	30,120원	급여단가	54,660원 /58,660원	47,350원 /51,350원	26,120원	실비	4,000원	4,000원	4,000원	표준소득액(월)	1,421,160원	1,231,100원	679,120원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성과금 월 최대 70만원까지 별도지급 할 수 있음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금액계	58,660원 /62,660원	51,350원 /55,350원	30,120원																										
급여단가	54,660원 /58,660원	47,350원 /51,350원	26,120원																										
실비	4,000원	4,000원	4,000원																										
표준소득액(월)	1,421,160원	1,231,100원	679,120원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성과금 월 최대 70만원까지 별도지급 할 수 있음																												

3)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누구나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5억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만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만75세 이상인자는 제외														
지원내용	- 직업훈련의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이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및 5년간 지원 <table border="1" data-bbox="438 1798 1414 2085"> <thead> <tr> <th colspan="2">훈련비 (개인당 300~500만원)</th></tr> </thead> <tbody> <tr> <td>- 계좌적합훈련과정</td><td></td></tr> <tr> <td>- 훈련비의 일부 및 전액</td><td></td></tr> <tr> <td>•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80~100%</td><td></td></tr> <tr> <td>•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50~80%</td><td></td></tr> <tr> <td>• 저소득계층, 국가기간전략산업</td><td></td></tr> <tr> <td>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td><td></td></tr> </tbody> </table>	훈련비 (개인당 300~500만원)		- 계좌적합훈련과정		- 훈련비의 일부 및 전액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80~100%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50~80%		• 저소득계층,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	
훈련비 (개인당 300~500만원)															
- 계좌적합훈련과정															
- 훈련비의 일부 및 전액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80~100%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50~80%															
• 저소득계층,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															

	훈련 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하나 만족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1350) - HRD-Net(www.hrd.go.kr)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신청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02-719-8431)
훈련과정 수강신청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고용센터 방문 필요)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자
발급과정	-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 발급가능 여부 결정 → 발급 및 카드수령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4) 서울시 인력개발기관

① 서울 우먼업

기관명	서비스 내용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 여성인력개발기관 역량 강화 -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 커리어하이(Hi)스쿨 -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플랫폼 일자리 부르릉 - 서울우먼업 통합홍보/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 - 서울광역새일센터 운영
여성발전센터	- 전문 및 일반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운영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및 정부 지원사업 위탁운영 - 취업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반 기업체 간담회 운영 - 여성창업플라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컨설팅
여성인력 개발센터	- 실업자 및 재직자(국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특강 운영 - 취업 상담 및 알선

②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 우먼업 (여성능력개발원)		마포구 마포대로89 7층	☎02-590-1900	https://seoulwomanup.or.kr
여성 발전 센터	남부	금천구 독산로50길 23	☎02-802-0922	http://nambu.seoulwomanup.or.kr
	동부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02-460-2300	http://dongbu.seoulwomanup.or.kr
	북부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02-972-5506	http://bukbu.seoulwomanup.or.kr
	서부	양천구 남부순환로371	☎02-2607-8791	http://seobu.seoulwomanup.or.kr
	중부	마포구 토정로35길 17	☎02-719-6307	http://jungbu.seoulwomanup.or.kr
여성 인력 개발 센터	강동	강동구 양재대로1458, 5,6층	☎02-475-0110	https://gd.seoulwomanup.or.kr
	강북	강북구 덕릉로108, 3층	☎02-980-2377	https://gangbuk.seoulwomanup.or.kr
	강서	강서구 까치산로134, 5층	☎02-2692-4549	https://gangseo.seoulwomanup.or.kr
	관악	관악구 쑥고개로75, 1층~5층	☎02-886-9523	https://gwanak.seoulwomanup.or.kr
	구로	구로구 공원로63, 2층	☎02-867-4456	https://guro.seoulwomanup.or.kr
	노원	노원구 공릉로187, 5층	☎02-951-0187	https://nowon.seoulwomanup.or.kr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60-1, 6층	☎02-921-2020	https://ddm.seoulwomanup.or.kr/
	동작	동작구 사당로299, 2~5층	☎02-525-1121	https://dongjak.seoulwomanup.or.kr
	서대문	서대문구 신촌역로10, 4층	☎02-332-8661	https://sdm.seoulwomanup.or.kr/
	서초	서초구 강남대로216, 3층	☎02-6929-0011	https://seocho.seoulwomanup.or.kr
	성동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5층	☎02-3395-1500	https://sd.seoulwomanup.or.kr
	송파	송파구 중대로9길 34, 2층	☎02-430-6070	https://songpa.seoulwomanup.or.kr
	영등포	영등포구 영중로61	☎02-858-4514	https://ydp.seoulwomanup.or.kr
	용산	용산구 청파로139-21	☎02-714-9762	https://yongsan.seoulwomanup.or.kr
	은평	은평구 녹번로76	☎02-389-1976	https://ep.seoulwomanup.or.kr
	종로	종로구 대학로11길 23, 2~4층	☎02-765-1326	https://jongno.seoulwomanup.or.kr
	중랑	중랑구 망우로32길 20	☎02-3409-1947	https://jungnang.seoulwomanup.or.kr
	장래	강서구 공항대로41길 34, 7층	☎02-6929-0002	https://wsbt.seoulwomanup.or.kr

③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지원내용	-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직업/진로상담(개별/집단상담),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강화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 취·창업연계: 인턴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창업유관기관 연계

	• 경력단절예방: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개선지원, 경력단절협력망구축, 인식개선사업 • 취업 후 사후관리: 고용유지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지원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④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 서울시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로 영주권 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내국인인 대상자 및 그 자녀 ※ 단, 청년희망디딤돌 과정은 만 15세 ~ 35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가구디자인, 그린자동차정비, 외식조리, 전기, 주얼리디자인,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친환경가구제작 등		
지원과정	- 1차 서류전형과 2차 개별면접(전형)을 거쳐 최종선발 • 우선선발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일반선발 - 비진학, 미취업 청년 및 실업자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민		
지원특전	- 교육비 전액무료(수강료, 실습비, 교재비 등) ※일부 재료비 제외 - 주간훈련과정 중식 제공 - 우선선발대상자 훈련수당 지급 - 수료 후 취업알선 - 국가자격기능검정료 지급(1회) 등		
교육과정	- 정규과정, 단기과정, 심화과정 등(기술교육원에 따라 상이) - 모집기간: 상반기(1월~2월) / 하반기(7월~8월) - 훈련기관: 총 4개 기술교육원		
	구분	주소	입학문의
	동부기술교육원	강동구 고덕로 183	☎02-440-5500
	중부기술교육원	용산구 한남대로 136	☎02-361-5800
	남부기술교육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031-390-3920
	북부기술교육원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81	☎02-2092-4700

5)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러닝 교육)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교육		- 창업·경영 교육, 재창업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등 다방면 창업 관련 자료 제공
현장 교육	사업 전환 교육	- 지원대상: 사업교육기간이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재창업 업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지원 제외 - 교육기간: 1월 ~ 예산 소진 시 마감 - 교육내용: 업종전문이론 및 실습교육 50시간 - 지원내용: 교육비 무료(실습재료비 초과분 교육생 부담, 자산취득·렌탈 성격 실습 재료비 미지원)
	전문 기술 교육	- 지원대상: 소상공인 - 교육기간: 교육생 자율선택 - 교육내용: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위주의 교육 - 지원내용: 교육비의 90% 50만원 한도(1인당 연2회)
	경영 개선 교육	-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등록증 소지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내용: 성공경영기법 및 경영지식, 업종별 특화 교육 지원 - 지원내용: 국비 100%지원
	전용 교육장 교육	- 지원대상: 소상공인, 직장인 예비창업자 등 - 교육시간: 12시간 ~ 40시간 - 교육내용: 창업·경영교육을 운영하며 실무에 필요한 실습교육 진행 - 지원내용: 국비 100%지원
	재기 교육	-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제외) - 교육시간: 과목별 10시간 - 교육내용: 온·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통한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원내용: 자부담비 무료
수강 방법	온라인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 나의 강의실 입장 → 학습 → 이수증 출력
	현장	- 회원가입 → 교육과정 검색 → 각 현장교육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문의		- 홈페이지 (http://edu.sbiz.or.kr) - 오프라인 교육: ☎1357 - E-러닝 교육 시스템: ☎1644-5302

6)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 원 내 용	청년 지원정책 정보 수집·제공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정책 수집 및 제공 * '22년 2월 기준 : 중앙부처(320건), 지자체(1,812건) -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참여정책, 코로나-19 등 유형별 대한민국 청년 지원정책 수집 및 제공 - 정책명, 유형별, 지역별 정책 통합검색 및 맞춤형 정책 정보 검색 - 유사 정책 간 핵심정보 1:1 비교 콘텐츠
	청년 활동공간 정보 수집·제공	- 그룹스터디, 회의, 개인학습, 취업상담, 취·창업 프로그램 등 청년층이 이용 가능한 전국 활동공간 정보 수집 및 제공 * '22년 2월 기준 : 청년 활동공간(223개소) - 각 청년 활동공간별 지역, 공간운영, 수용인원, 부대시설, 프로그램, 식음료 제공, 유/무료, 상담운영 등 상세정보 제공 - '지도에서 찾기' 기능을 통한 전국 지역별 청년 활동공간 지도 제공
	온라인 실시간 상담 (카카오톡 기반)	- 청년 지원정책, 청년 활동공간, 취업 지원에 대해 시·공간 제약없이 PC 및 모바일을 활용한 카카오톡 기반의 온라인 실시간 상담 운영 - 카카오톡(08시-21시, 365일, 설·추석 당일 제외)
	심층(전문) 상담 (예약제 운영)	- 청년 지원정책, 진로·직업, 직업심리,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분야별 전문상담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예약 상담 운영 - 이용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 운영시간: 평일 09:30 ~ 17:50 (상담 1회기준, 50분)
	전화 상담	- 대표번호 1811-9876 연결 - 빠른 경로의 상담으로 취업, 창업, 진로, 주거·금융, 생활·복지 등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꿀팁 및 청년핫뉴스 정보 제공 - 전화(09시-18시, 평일가능, 공휴일 제외)
	청년 고용 응원	-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통합 및 연계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진행 - 기업 별 청년고용 응원프로그램 안내 - 전국 면접(AI/비대면) 지원 장소 안내 -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안내
문 의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온라인청년센터' 채팅하기

나. 창업 자금 대여

1)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제한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하는 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용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지원내용	-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연 4.5%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2)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가장창업자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 신용등급 1~7등급 이내 - 예비 창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창업자

지원 제외대상	-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등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신청 업종으로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 타 정부정책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 월 임대료 219만원 초과(부과세 포함) 점포 - 임대건물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지원한도	- 최고 1억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기간	- 2년(1회 연장가능, 최대 4년까지 지원)
지원금리	- 연 2.0%(고정), 분기별 납부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신청방법	- 희망지역(창업예정지/사업장소재지)에 문의 및 유선접수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서울): ☎02-702-4244

3) 열매나눔재단

① 취약계층 여성 자립지원사업 '더나은 네일'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네일아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저소득여성가장 ※ 가구 월평균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 ※ 주택, 부동산, 차량가액 포함 2억원 이하 ※ 우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여성가장 - 북한이탈주민여성, 결혼이민여성 - 인턴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 인턴 과정 수료 후 3개월 이내 네일숍 취·창업 계획이 있는 자		
활동기간	- 활동일로부터 6개월		
지원내용	인턴 활동 - 실제 고객에게 네일아트 서비스 - 활동 장학금 제공 - 주 5일, 6시간 근무 - 미결석시 월 115만원 (자립지원금 포함)	교육지원 - 전문가 기술코칭 - 기술/서비스 정기평가 - 창업교육	네일숍 창업지원 - 창업 지원사업 심사 통과 → 창업자금 - 3천만원 무이자 대출 기회 제공 (※한부모여성가장 해당)
선발기준	- 신청사유, 지원의 필요성, 자립의지 - 프로그램 성실 참여 가능 여부, 서비스 태도 평가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 면접심사 → 합격자 발표 → 인턴활동 → 수료 → 취창업
접수방법	- 연중 수시 접수(단, 투입시기 협의)
문의	- 열매나눔재단: ☎02-2038-8514

②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준비학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서울, 인천, 경기(일부) 소재에 창업예정인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 ※ 경기: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11곳 ※ 재단 메리맘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할 계획이 없고, 교육만 희망할 경우 이외 지역도 신청 가능 - 창업예정자이어야 하며 기창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한지 6개월 이내의 자 -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 ※ 메리맘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 선정대상에 한해 창업자금 최대 3,000만원 무이자 대출 • 성실 상환 시 최대 200만원 상환금 감액 및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지원자격	- 아래의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해당 금액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위:원) <table><tr><th rowspan="2">1)가구원수</th><th rowspan="2">2)소득기준</th><th colspan="3">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th></tr><tr><th>직장가입자</th><th>지역가입자</th><th>혼합</th></tr><tr><td>2인</td><td>2,282,000</td><td>79,789</td><td>31,047</td><td>80,371</td></tr><tr><td>3인</td><td>2,936,000</td><td>102,842</td><td>77,067</td><td>103,945</td></tr><tr><td>4인</td><td>3,585,000</td><td>147,798</td><td>144,703</td><td>127,461</td></tr></table> 1) 가구원 수: 신청인과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하여 산정 2) 소득 기준: 전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금액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납부 확인	1)가구원수	2)소득기준	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82,000	79,789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47,798	144,703	127,461
1)가구원수	2)소득기준			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82,000	79,789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47,798	144,703	127,461																				
지원내용 및 절차	<table><tr><td>창업준비학교 - 창업 기본 교육 - 창업 준비 상담 - 창업계획 컨설팅 </td><td>→</td><td>신청 메리맘 창업지원사업 신청</td><td>→</td><td>심사 창업신청 적합자 선정</td><td>→</td><td>선정 메리맘 대상자 선정(5인)</td></tr></table>	창업준비학교 - 창업 기본 교육 - 창업 준비 상담 - 창업계획 컨설팅	→	신청 메리맘 창업지원사업 신청	→	심사 창업신청 적합자 선정	→	선정 메리맘 대상자 선정(5인)																
창업준비학교 - 창업 기본 교육 - 창업 준비 상담 - 창업계획 컨설팅	→	신청 메리맘 창업지원사업 신청	→	심사 창업신청 적합자 선정	→	선정 메리맘 대상자 선정(5인)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하반기 모집(추후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재단 홈페이지로 제출 • 자격증빙서류 제출: 팩스 또는 이메일																							

유의사항	- 창업준비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시, 메리맘 한부모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함 - 경우에 따라 창업기본교육 수강은 가능하나 창업지원사업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창업예정업종이 신청제한 업종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일 경우(담당자 상담필수)
문의	- 열매나눔재단: ☎02-2038-8514

4) 아름다운재단: 한부모여성 창업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25세 이하(1997년 출생자까지 가능)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 가구주																		
신청대상 자격	-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 소득기준: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table><tr><th>구분 (단위:원)</th><th>2인가구</th><th>3인가구</th><th>4인가구</th><th>5인가구</th><th>6인가구</th></tr><tr><td>중위소득 70%</td><td>2,282,060</td><td>2,936,291</td><td>3,584,756</td><td>4,217,161</td><td>4,834,903</td></tr></table> -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성 신청횟수는 소급 적용 - 신규창업에 한함 -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가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된 상태에서의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함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이 될 수 있음 - 제외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 업종, 보건업종 등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							구분 (단위: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구분 (단위: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지원지역	<table><tr><th>수도권</th><th>강원권</th><th>대전권</th><th>대구권</th><th>전북권</th><th>광주권</th><th>부산권</th></tr><tr><td>서울/경기 /인천</td><td>원주/춘천</td><td>대전/천안/ 청주/충남 일부</td><td>대구 및 경북 일부</td><td>전주/익산 남원/군산</td><td>광주/광양/ 목포/순천/ 나주/여수</td><td>부산/김해/ 양산/창원/ 울산</td></tr></table>	수도권	강원권	대전권	대구권	전북권	광주권	부산권	서울/경기 /인천	원주/춘천	대전/천안/ 청주/충남 일부	대구 및 경북 일부	전주/익산 남원/군산	광주/광양/ 목포/순천/ 나주/여수	부산/김해/ 양산/창원/ 울산			
수도권	강원권	대전권	대구권	전북권	광주권	부산권													
서울/경기 /인천	원주/춘천	대전/천안/ 청주/충남 일부	대구 및 경북 일부	전주/익산 남원/군산	광주/광양/ 목포/순천/ 나주/여수	부산/김해/ 양산/창원/ 울산													
지원내용	-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대출금 합계 최대 4,000만원 대출지원 <table><tr><th>내용</th><th>금액</th><th>조건</th></tr><tr><td>대출금</td><td>최대 4,000만원</td><td>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이자: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_이자포함) </td></tr></table> - 전문 창업컨설팅 지원: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 - 통합지원: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내용	금액	조건	대출금	최대 4,000만원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이자: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_이자포함)						
	내용	금액	조건																
	대출금	최대 4,000만원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이자: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_이자포함)																

접수기간 및 심사일정	구분	52차	53차	54차
	접수	2/3 ~ 3/4	5/2 ~ 6/3	8/1 ~ 9/2
	사업설명회	2/15	5/17	8/16
	심사	3/7 ~ 3/31	6/7 ~ 6/30	9/5 ~ 9/29
	최종발표	4/1	7/1	9/30
	선정자오리엔테이션	4/8 ~ 4/9	7/8 ~ 7/9	10/7 ~ 10/8
	- 접수, 심사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사업과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개와 지원 시 질문에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			
신청 및 지원 절차	- 모집공모 → 서류심사 → 1차 면접심사(창업의 준비성) → 신용조회 → 2차 면접심사 및 기술심사(업종의 전문성) → 선정실사(가정방문) → 최종발표			
신청방법	-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fax, e-mail 접수 불가)			
문의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02-3675-1240			

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 중, 가구원 합산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1인 가구는 120%부터 적용) ※ 취약계층: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소득요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일 것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	1,555,849	2,608,068	3,355,760	4,096,864	4,819,612
대출 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지원내용	-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 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50~200만원이내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균등분할 상환
용자금리	- 연 1%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팩스접수 불가
접수방법	- 연중 수시 접수(단, 투입시기 협의)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 임금채불 및 저소득 노동자 생계지원을 위하여 생활 필수 자금 8종에 대해 저금리 대출 지원
 - 생활 필수 자금 8종: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채불생계비(재직),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채불생계비(퇴직)

구분	세부내용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 280만원 이하 이면서 일용직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 280만원 이하 이면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혼례비	구분	내용
	용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용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	구분	내용
	용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용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의료비	구분	내용
	용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용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용자신청 가능)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임금체불 생계비(재직)	구분	내용
	신청대상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 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852만원 이하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용자요건	-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
	용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신청기한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구분	내용
	용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용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구분	내용
	용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용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임금감소 생계비	구분	내용
	신청대상	- 용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용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6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일일 단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제외)
	용자요건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용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액생계비	구분	내용
	신청대상	- 기존 사업 대상자 또는 임금이 감소한 용자대상 월소득이 186만원 이하 정규직 근로자
	용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용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용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신청기한	- 용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녀양육비	구분	내용
	용자요건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용자한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된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접수기간	- 2022년 1월 1일 ~ 사업 마감일까지
접 수 처	-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마. 자산형성지원

1)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세부내용
가입대상	- 22년 7월부터 만 19~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가입기간	- 3년
정부 지원액	- 1,080만원
자격조건	- 연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수급자·차상위자는 해당기준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1.7억원이하만 해당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1회씩 총 3회)이수,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지급 조건 미충족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중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 될 경우 해지 - 본인저축액 연속 6개월 미납,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해지 -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미증빙시 해지 본인 요청 시 환 시 환수 해지(지원금 지원불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 후 종료
신청 기간	- 2022년 7월중
신청절차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온라인신청 불가)
문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꿈나래통장

- ◆ 저소득 근로자가 가구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할 경우,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매칭 지원액을 적립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 대물림 사전 예방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한 가정당 1명만 신청 가능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제한대상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이룸통장 기존 및 신규 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등 참여가구 ※ 아동 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I·II’ 참여가구는 중복 가입 가능																																																								
지원내용	<table><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3">생계의료급여 수급자</th><th colspan="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th><th>비고</th></tr><tr><td colspan="2">본인저축액 (선택)</td><td>5만원</td><td>7만원</td><td>10만원</td><td>5만원</td><td>7만원</td><td>10만원</td><td>12만원</td><td></td></tr><tr><td colspan="2">매칭지원금</td><td>5만원</td><td>7만원</td><td>10만원</td><td>2.5만원</td><td>3.5만원</td><td>5만원</td><td>6만원</td><td></td></tr><tr><td rowspan="2">총 적립금</td><td>3년</td><td>360만원 +이자</td><td>504만원 +이자</td><td>720만원 +이자</td><td>270만원 +이자</td><td>378만원 +이자</td><td>540만원 +이자</td><td>648만원 +이자</td><td rowspan="2">매월 적립 시</td></tr><tr><td>5년</td><td>600만원 +이자</td><td>840만원 +이자</td><td>1,200만원 +이자</td><td>450만원 +이자</td><td>630만원 +이자</td><td>900만원 +이자</td><td>1,080만원 +이자</td></tr></table> ※ 단,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고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이자	504만원 +이자	720만원 +이자	270만원 +이자	378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648만원 +이자	매월 적립 시	5년	600만원 +이자	840만원 +이자	1,200만원 +이자	450만원 +이자	630만원 +이자	900만원 +이자	1,080만원 +이자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고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이자	504만원 +이자	720만원 +이자	270만원 +이자	378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648만원 +이자	매월 적립 시																																																
	5년	600만원 +이자	840만원 +이자	1,200만원 +이자	450만원 +이자	630만원 +이자	900만원 +이자	1,080만원 +이자																																																	
신청절차 및 일정	- 신청기한은 매년 상이함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격여부 심사 → 선정 → 통장개설(신한은행)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3) 디딤씨앗통장

- ◆ 양육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 지원금으로 월 5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가입대상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복지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아동
사용용도	- 대학(대학원)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한해 사용가능 -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 연령에 달한 아동은 자기계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적립금 사용 가능 (3년 이상 가입한 만 15세 이상 아동, 2회 제한)
가입기간	-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중도해지는 사망, 이민 등의 사유에만 가능)
지원내용	- 기본매칭적립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매칭 지원금으로 월 5만원 내에서 지원 (월 5만원 내 적립가능) - 추가적립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 (연간 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가능(추가 적립액=국가매칭 없음)
신청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격여부 심사 → 선정 → 통장개설(신한은행)
문의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https://www.adongcda.or.kr)

4) 자산형성제도(희망저축계좌 I, II)

구 분	개편 전 통장					개편 후 통장			
	희망키움 통장 I	희망키움 통장 II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희망저축 I	희망저축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이하	차상초과
시행	'10. 4월	'14. 7월	'13.3월	'18. 4월	'20.4월	'22. 3월	'22. 4월	'22. 7월	'22. 7월
'20년 예산(백만원)	18,102	48,768	3,656	22,574	7,321				
'21년 예산(백만원)	15,121	40,244	5,534	12,383	27,854				
'22년정부안(백만원)	7,725	10,049	5,199	7,119	37,968	6,876	3,793	4,489	24,440
근로 여부	일반시장	○	○	×	○	○	○	○	○
	자활근로	×	×	○	×	×	○	○	○
연령 요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만15 ~39세	만15 ~39세	제한없음	제한없음	만15 ~39세	만19 ~34세
가입 대상	생계	○	×	자활근로 참여자	○	×	○	×	×
	의료	○	×		×	×	○	×	×
	주거·교육	×	○		×	○	×	○	×
	차상위	×	○		×	○	×	○	×
본인 저축액	5/10만	월 10만	5/10/20만	본인저축 없음	월 10만	월10만원 이상			
정부 지원	소득 비례 * 월 평균 33.4만원	1:1 매칭	1:1 매칭	소득 비례 * 월 평균 30만원	1:3 매칭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민간매칭 (최대 월 2만원)	-	자활사업단 매출액 (평균22만원)	민간매칭 (최대 월 2만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3년후 정액		720만원	2,232만원		1,440만원	1,440만원	720만원	1,440만원	720만원

평균 수급액			+ 이자	+ 이자 * 최대 2,340만원		+ 이자	+ 이자	+ 이자	+ 이자	+ 이자
	소득 비례	1,695만원 + 이자 * 최대 2,757만원			1,569만원 + 이자 * 최대 2,314만원					
3년후 수급 요건	교육	×	○	○	×	○	×	○	○	○
	사례관리	×	○	○	×	×	×	○	×	×
	국가자격증	×	×	×	×	○	×	×	×	×
	탈수급	○	×	○ (또는 취창업 등)	○	×	○	×	×	×

7. 의료지원

1) KT&G 복지재단

① 켄거루 의료비 지원 사업²⁸⁾

구분	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사연접수 • 매월 1일~20일까지 •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를 통해 사연 신청접수
제출 필요 서류	-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 보장구 처방전 등 / 1개월 이내 발급) - 사례관리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증빙서류 대체가능 (수급, 차상위 증명서류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사본 - 기관의 고유번호증 - 재단양식 정보공개동의서
지원대상	-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19세 이상 성인) ※ 제외대상 • 단독세대인 경우와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 가구 내의 가장 또는 보호자로 볼 수 없는 시설수급자의 경우 • 후원금 지원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존 선정되어 지원받은 환우의 경우
지원금액	- 최대보장지원금 100만원
지원범위	- 치료비, 수술비, 재활, 보장구 구입에 관한 병명 제한 없음(단, 간병비 제외)

28) KT&G 복지재단(<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사업안내→사회복지지원사업→켄거루의료비지원

지원절차	온라인 사연접수 매월 1일~20일 접수마감 ⇒ 5명 선정발표, 공문발송 매월 마지막 주 ⇒ 홈페이지 모금진행 매월 1일~말일 ⇒ 후원금정산 및 공문발송 (1주 이내) ⇒
	결과보고서류 발송 및 인터뷰 진행 (6개월 이내) ⇒ 후원금 수령증 발송 (1개월 이내)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 (2주 이내)
문의	- KT&G 복지재단: ☎02-563-4459

② 상상펀드 의료비 지원사업²⁹⁾

구분	치료 지원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사연접수 • 매월 1일~20일까지 •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를 통해 사연 신청접수
제출 필요 서류	-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 등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 - 사례관리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증빙서류 대체가능 (수급, 차상위증명서류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사본 • 기관의 고유번호증 • 재단양식 정보공개동의서
지원대상	- 의료비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금액	-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범위	- 치료비, 수술비, 재활, 보장구 구입에 관한 병명 제한 없음(단, 간병비 제외)
지원절차	온라인 사연접수 매월 1일~20일 접수마감 ⇒ 1명 선정발표, 공문발송 매월 마지막 주 ⇒ KT&G 임직원 사회공헌 포털 통한 모금진행 매월 21일~ 익월 22일 ⇒ 후원금정산 및 공문발송 (1주 이내) ⇒

29) KT&G 복지재단(<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사업안내→사회복지지원사업→상상펀드의료비지원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 (2주 이내) ⇒ 후원금 수령증 발송 (1개월 이내) ⇒ 결과보고 서류 발송 (6개월 이내)
문의	- KT&G 복지재단: ☎02-563-4459

2) (재)아름다운 동행: 개안수술 지원사업³⁰⁾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가정 환자 (망막질환, 각막이식 등 안과적 수술로 실명 예방 또는 시력 회복이 가능한 자) ※ 차상위 및 수급자 우선 지원)
지원금액	- 개안수술에 필요한 수술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액 총액)
지원범위	- 망막질환: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 각막이식수술: 각막손상으로 인하여 이식수술이 필요하며, 각막이식 가능한 환자 - 기타 안질환: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이 필요한 환자 ※ 각막이식수술은 지정병원에서만 수술 가능(동국대 일산 병원) ※ 입원비의 경우 일반기준(4인이하)으로 지급됨 ※ 지원결정 후 수술에 한해 지원됨
지원방법	- 매월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 - 연중 수시 진행
지원절차	- 복지사업수행단체(종합사회복지관, 병원 사회사업팀도 가능)를 통해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	-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thenanum.org) → 지원신청 → 지원사업 안내 참고
문의	- 나눔사업팀: ☎02-737-9595

3) 아름다운 재단: 이른둥이 재활치료비³¹⁾

구분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연령기준: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만 7세 이하 이른둥이 • 소득기준: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이른둥이 가정 • 의료기준: 현재 재활치료 중이거나 재활치료 계획이 명확한 이른둥이

30) 아름다운동행(www.thenanum.org)

31) 아름다운재단(<http://www.beautifulfund.org/>)→사업안내→건강→이른둥이 입원치료비·재활치료비 지원사업

	가구기준: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중인 등록, 미등록 외국인 가구에서 태어난 이혼등이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 - 병원 재활의학과 모든 치료 항목 - 복지관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도수치료 - 소아재활취약지역 사설센터(바우처 지정기관) 치료비 ※ 취약지역: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 재활치료비 간접비용 - 이혼등이 재활치료 시 교통비(재활치료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증빙 필요) - 이혼등이 형제자매의 아이돌봄 비용(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이혼등이 형제자매의 심리치료 비용 (병원과 복지관만 해당, 병원: 진단서/복지관: 치료사 소견서 증빙 필수)
지원금액	- 최대지원금 200만원 범위 내 실제 납부 금액 지원 ※ 한 가정 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 간접비(교통비, 아이돌봄비, 심리치료비등) ※ 모든 비용은 가정에서 먼저 지불한 후 지원 적합 확인 후 지원
접수방법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
접수기간	매년 하반기
문의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4) 아름다운 재단: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구분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연령기준: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 지원지역: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 - 장애유형: 지체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시설거주자, 외국인, 등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제외
지원자격	- 사회참여 - 근로종인여성(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 구직활동 중인 여성 - 학업활동 중인 여성 - 기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 육아지원 - 자녀를 육아하는 여성 ※ 자녀나이 만 18세미만까지 신청 가능
지원품목	- 아동용(휠체어, 보행감지기, 경사로 등) - 차량용(탑승기, 컨트롤러, 차량개조제작 등) - 환경제어용(높이조절 싱크대, 높이조절 책상, 음성인식 조명, 원격 도어락 등) - 아이케어용(모니터링, 배변알리미, 높이조절 유아침대)

	- 정보접근용(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학습기, 점자출력기 등) - 컴퓨터용(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등) ※ 보조기기는 전문 보조공학 상담 및 평가 이후 품목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금액	- 1인 500만원 내외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현장평가지 보조공학 상담을 통해 대상자 욕구에 적합한 보조기기 지원)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접수기간	- 매년 상반기
문의	-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5) 한국여성재단

①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 및 자녀 -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치과진료분야> 지원 받은 자 불가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일반진료분야> 지원 받은 자 불가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불가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중복지원 받은 자 불가
지원내용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가능. 교정치료 불가)
지원절차	서류 접수 ⇒ 1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2차 검진치과 ⇒ 최종심사 및 발표 ⇒ 치료 및 사례관리 ⇒ 결과 보고 ⇒ 의료비 지원 (결과보고 검토 후) - 개인 직접 신청 불가, 반드시 추천단체를 통해 이메일 접수 - 상반기 신청기간 홈페이지 참고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70-5129-5446

②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으로서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등)으로

구분	세부내용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건강증진비만 지원) -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며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서 1년이상 경력이 있으며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건강증진비만 지원)
지원내용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건강증진비는 최대 50만원, 3개월 기준) -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요 되는 비용(PT, 운동치료, 요가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 가능)
지원불가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 치과진료분야 지원 불가
지원절차	서류접수 (매월 20일 마감) ⇒ 서류 심사 ⇒ 선정발표 (익월 초순) ⇒ 치료 및 사례관리 ⇒ 결과보고 (종료 후 15일 이내) ⇒ 의료비 지원 (결과보고 검토 후) - 개인 직접 신청 불가, 반드시 추천단체를 통해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월 서류 심사
문의	- 한국여성재단: ☎070-5129-5446

6)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의료비 지원³²⁾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등록체류, 미등록체류 포함) - 다문화가족 및 직계혈족(형제, 자매 제외) - 난민 및 그 가족(위 지원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 기타 의료소외계층 (내국인의 경우 서울적십자병원 내 의료사회사업팀 우선 상담)
지원기준	-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월 소득, 재산 기준 차상위 200% 이하인 자 (치료의 시급성에 따라 지원 가능) - 마지막 입국일 기준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자 -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 작성 시 일정 점수 이상인 자

32) 희망진료센터(<http://www.rch.or.kr/hope/>)

지원내용	-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안과 등 - 외래 및 입원 지원 (지원불가: 외래 약,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CD복사, 치과 치료, 보호자 식대)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률(50~100%) 결정
지원절차	센터담당자 전화문의 및 의뢰서 송부 ⇒ 상담예약 ⇒ 환자 병원 내원 및 면담 ⇒ 외래 또는 입원 치료 시행 ⇒ 지원을 결정 -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신청 가능하나 타 기관 의뢰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상담 진행 - 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본원 진료협력팀을 통해 입원 결정 후 상담 진행
문의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02-2002-8683

7)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국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자 ※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이 신청일 기준 이전 달 1일 보다 과거일 경우 신청 불가 - 질병의 제한은 없으나, 암, 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치료 계획 첨부) ※ 일반적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 - 네이버 해피빈 공개모금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선정자의 사연 및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함
지원내용	- 지원인원: 분기별 2인 (모금 종료 후 해당 신청기관 계좌로 입금) - 재단 지원 치료비 100만원 + 네이버 해피빈 및 기타 모금액 전액 ※ 실제 총 지원금액은 모금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대상자 직접 신청 불가, 비 인가시설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wf2007@hanmail.net) -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접수
문의	- 분기별 1회(연4회) - 우천복지재단: ☎02-851-6798

8) 아이들과미래재단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러브아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5명 ※ 재산 및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당해년도 중위소득 100%이내 저소득 가정

지원내용	- 의료비 1인 최대 500만원 ※ 선정일로부터 6개월, 부득이 한 사유 발생 시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재활기구 구입비 연장 불가) - 수술비, 치료비, 재활기구 구입비														
	<table><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tr><td>공통사항</td><td>※ 단순검사비, 외래진료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및 제증명료 불가</td></tr><tr><td>수술비</td><td> -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구입비 등 지원 불가 - 성형수술 및 미용목적의 수술 또는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불가 </td></tr><tr><td>치료비</td><td> -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불가 - 예방목적의 검사비 및 진료 불가 </td></tr><tr><td>재활기구 구입비</td><td> - 이동 및 보행을 위한 보조기구 - 기립 훈련 등 재활 목적의 기구 </td></tr></table>					구분	세부내용	공통사항	※ 단순검사비, 외래진료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및 제증명료 불가	수술비	-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구입비 등 지원 불가 - 성형수술 및 미용목적의 수술 또는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불가	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불가 - 예방목적의 검사비 및 진료 불가	재활기구 구입비	- 이동 및 보행을 위한 보조기구 - 기립 훈련 등 재활 목적의 기구
	구분	세부내용													
	공통사항	※ 단순검사비, 외래진료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및 제증명료 불가													
	수술비	-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구입비 등 지원 불가 - 성형수술 및 미용목적의 수술 또는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불가													
	치료비	-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불가 - 예방목적의 검사비 및 진료 불가													
재활기구 구입비	- 이동 및 보행을 위한 보조기구 - 기립 훈련 등 재활 목적의 기구														
지원절차	신청서 메일 제출 ⇒ 서류심사 진행 ⇒ 공고 및 개별연락 ⇒ 지원금 청구 (서류제출) ⇒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 수술비, 치료비: 종료 후 치료기관 지급 - 재활기구 구입비: 신청(사례)기관을 통해 지급														
지원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메일 제출(※개인신청 불가) - 신청서류: 공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관 고유번호증, 의료상황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적용가능한 민간보험 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문의	- 아이들과미래재단 : ☎02-843-8478														

8)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의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환자 • 기타사항: 치료 후 사회복지가 가능한 경우,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본인에 한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 장기입원 환자, 치과/정신과 치료, 미용성형, 로봇수술, 교통사고, 각종 상해 및 사고, 자살시도 환자 등 제외
지원내용	- 수술 등 긴급 치료비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수혜 금지) - 지원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 1회) - 지원금액: 신청금액 별도 심의(의료비 및 재산 정도를 심사 후 차등 지원)
지원절차	병원 추천 ⇒ 서류심사 진행 ⇒ 공고 및 개별연락 ⇒ 지원금 청구 (우편제출) ⇒ 지원금 지급 (해당병원)

	- 심사를 통해 결정된 대상자 의료기관으로 입금
지원방법	- 해당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개인신청 불가 - 온라인 접수(향후 영수증 등은 우편으로 원본 제출)
문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10)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

구분	주소	전화번호	주요활동
강북삼성병원	종로구 새문안로 29	☎ 02-2001-1130	- 의료사회복지상담 - 임상활동 - 사회공헌활동 - 교육 및 연구활동
경희의료원	강동구 동남로 892 본관 4층 피부과 옆	☎ 02-440-6587~9	- 의료사회복지상담 - 자원봉사자 - 모금 및 후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구 구로동로 148	☎ 02-2626-2808	- 의료사회복지상담 - 임상활동 - 사회공헌활동 - 기부금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 - 교육 및 연구활동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성북구 고려대로 73	☎ 031-412-5434	- 의료사회복지상담 - 임상활동 - 사회공헌활동 - 기부금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 - 교육 및 연구활동
삼성서울병원	강남구 일원로 81	☎ 02-3410-3251~8	- 의료사회복지상담 - 임상활동 - 사회공헌활동 - 교육 및 연구활동
서울대학교병원	종로구 대학로 101 의생명연구원 1층	☎ 1588-5700	- 심리사회적 상담 - 치료비지원 상담 - 퇴원계획 상담 - 자원연결 상담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구 언주로 211	☎ 1599-6114	- 임상사회사업활동 - 치료비 후원기금운영 - 자원봉사 관리 - 지역사회봉사 지원 - 실습 및 수련 교육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8-7031~49	- 임상업무 - 수련 및 실습 - 후원업무 - 모금업무 - 후원협력 - 사회공헌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강서구 공항대로 260	☎ 02-6986-3670	- 의료사회복지상담 - 자원봉사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43길 88	☎ 1688-7575	- 국내의료봉사 - 해외지원 - SOS 의로비지원

중앙대학교병원	동작구 흑석로 102	☎ 02- 6299-1509~10	- 의료사회복지상담 - 후원활동 - 지역사회자원연계 - 자원봉사 - 교육활동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반포대로 222	☎ 02-2258-5771~74	- 의료사회복지상담 - 사회복지정보제공 - 성모자선회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왕십리로 222-1	☎ 02-2290-8114	- 의료사회복지상담 - 장기기증 순수성평가 - 임상활동 - 정부·민간 서비스제공 - 지역사회 연계활동 - 사랑의 음악회 - 봉사활동 - 대내·외 교육 활동 - 사회복지기금 마련활동

8. 여가지원

1) 문화누리카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및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공연, 영화, 전시 관람, 국내 여행 등 개인별 1인당 연간 10만원
발급기간	- 2022년 2월 3일 ~ 11월 30일
카드사용기간	- 발급일 ~ 2022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온라인 발급 방법 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발급자격검증 → 본인인증 → 상세정보등록 → 신청 완료 후 약 15일소요 → 우편수령 - 온라인 발급 방법 ②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발급자격검증 → 본인인증 → 상세정보등록 → 신청 완료 2시간 이후 → 농협 지점 방문 수령 - 행정복지센터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카드신청서작성/제출 → 발급자격검증 → 상정보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사용안내	구 분
	합산
	이용범위
	세부 내용
	- 여러 장의 세대원 카드를 하나로 합산하여 사용 가능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 문화예술프로그램, 여행상품, 스포츠관람 상품, 전국 가맹점 및 온라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

	충전방법	• '1544-3412' 통해 전화 재충전(충전완료 2시간 후 사용 가능, 만 14세 이상, '16년 이후 발급된 카드 소지자에 한해 가능) • 충전한도: 1회 100원 이상, 10만원 한도, 연간 200만원 현금 충전
	온라인 사용	• NH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안심서비스 등록절차가 최초 1회 필요

2) 여행 활동 지원 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41조의3 제2호나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700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지체(휠체어),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행일정	- 2022. 7월~9월(예정)																
배정인원	<table><tr><th rowspan="2">총 계</th><th colspan="4">장애인(500명)</th><th rowspan="2">저소득층</th></tr><tr><th>지체(휠체어)</th><th>시각</th><th>발달</th><th>청각</th></tr><tr><td>1,200명</td><td>125명</td><td>125명</td><td>125명</td><td>125명</td><td>700명</td></tr></table> ※ 여행참가자 신청인원, 기타 사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배정인원 변동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지원 개시 연기 및 중단가능	총 계	장애인(500명)				저소득층	지체(휠체어)	시각	발달	청각	1,200명	125명	125명	125명	125명	700명
총 계	장애인(500명)				저소득층												
	지체(휠체어)	시각	발달	청각													
1,200명	125명	125명	125명	125명	700명												
지원내용	- 서울지역 1박 숙박상품(2인 1실 기준 조식 포함), 1인 여행자보험 비용 지원 - 참가자와 여행상품 자율매칭을 통해 희망하는 상품 선택 - 숙박상품 운영하는 여행사와 상품일정, 구성사항 등 세부내용 1:1 조율 - 참가자 본인 외 가족, 지인 등 최대 1명까지 동반 가능(추가비용 발생 시 본인부담)																
신청기간	- 2022년 5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신청																
문의	- 서울시 관광정책과: ☎02-2133-2822																

9. 위기지원

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긴급 지원 대상 기준	<table border="1"> <tr> <td>위기 사유</td> <td> - 갑작스런 위기사건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에 해당할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td> </tr> </table>	위기 사유	- 갑작스런 위기사건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에 해당할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기 사유	- 갑작스런 위기사건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에 해당할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였다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의 방임, 유기로 인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써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459,000원, 4인기준 3,841,000원)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	
	금융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횟수 제한 폐지 (단, 3개월 이내 지원불가)		
	종류	지원내용	지원 금액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천원 (4인기준)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천원 이내 (대도시, 4인)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서비스 1개월 제공	1,450천원 이내 (4인기준)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24,100원 중: 174,700원 고: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지원절차	지원 절차	세부내용	
	지원요청 및 신고	-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현장 확인	- 3일 이내	

		지원결정 및 지급 - 현장 확인 후 지원 필요시 지체없이 실시
		사후조사 - 소득 및 재산/ 1개월 이내
		적정성 심사 - 3개월 이내/ 사후조사보고서 토대
		적정, 부적정 - 적정: 종료/지원연장 - 부적정: 지원중단/비용반환/종료
		※ 현장 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내용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월 3,146,000원)
	지원기준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지원요건	※ 지원 요건 : 1~5호를 모두 충족해야함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지원사업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예: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⑤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상담(1644-6621, 1번)

나. 서울형 긴급복지

구분		세부내용																																							
긴급 지원 대상 기준	위기 상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 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실직, 휴, 폐업, 화재, 질병, 학대, 6개월 이내 초기 노숙, 출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동·구 사례회의를 통하여 기준 초과자 특별 지원 가능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table><tr><th>구분 (단위:원)</th><th>1인가구</th><th>2인가구</th><th>3인가구</th><th>4인가구</th><th>5인가구</th><th>6인가구</th></tr><tr><td>중위소득 100%</td><td>1,944,812</td><td>3,260,085</td><td>4,194,701</td><td>5,121,080</td><td>6,024,515</td><td>6,907,004</td></tr><tr><td>중위소득 85%</td><td>1,653,090</td><td>2,771,072</td><td>3,565,495</td><td>4,352,918</td><td>5,120,837</td><td>5,870,953</td></tr></table>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함						구분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5	4,352,918	5,120,837	5,870,953													
		구분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85%	1,653,090	2,771,072	3,565,495	4,352,918	5,120,837	5,870,953																																		
재산	- 3억 7,000만원 이하																																								
금융	- 1,0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및 금액		- 위기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지원 항목 간 중복 지원 가능) <table><tr><th rowspan="2">지원항 목</th><th colspan="4">가구 구성원 수</th></tr><tr><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r><tr><td>생계</td><td>30만원</td><td>50만원</td><td>70만원</td><td>100만원</td></tr><tr><td>의료</td><td colspan="4">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td></tr><tr><td>주거</td><td colspan="4">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td></tr><tr><td>교육</td><td colspan="4">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 수업료+입학금)</td></tr><tr><td>기타</td><td colspan="4">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 요금 500천원 이내</td></tr></table> ※ 지원횟수 : 1회 (지원 금액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추가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지원항 목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생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의료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교육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 요금 500천원 이내			
		지원항 목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생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의료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교육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 요금 500천원 이내																																								
지원절차		위기상황 발생(신청)	긴급 ↗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조사(확인)	→	사후관리																															
		본인요구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 발굴		①담당자 선지원 ↓사후승인 ②동/구 사례회의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동/구→대상자		①기존 복지대상자 (수급자,차상위, 기초연금 등) ② 일반대상자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타제도 후원연계 (구/동)																															

문의	- 거주지 구청 혹은 동행정복지센터 - 다산콜센터: ☎02-120
----	---

다.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혹은 종사했으나 실직한) 실질적 여성가장 (차상위, 저소득층 포함 비수급권자 우선 지원)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범위	-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																
신청단체	-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월 기준 최대 1명까지 신청 가능)																
접수기간	- 2021년 매월 5일 18시까지 접수																
접수방법	-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여성가장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지원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 절차</th><th>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서류접수</td><td>- 매월 5일까지</td></tr> <tr> <td>서류검토</td><td>- 매월 10까지 신청자료 보안요청 및 내용 정리</td></tr> <tr> <td>서류심사</td><td>- 매월 20일까지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분야: 여성, 의료, 복지)</td></tr> <tr> <td>현장심사(필요 시)</td><td>-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td></tr> <tr> <td>최종발표</td><td>- 매월 말 ~ 익월 초, 신청 단체로 송금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재송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td></tr> <tr> <td>지원금 지급</td><td>- 지원기관 후 1개월 이내</td></tr> <tr> <td>결과보고서 제출</td><td>- 지원종결 후 1개월 이내</td></tr> </tbody> </table>	지원 절차	세부내용	서류접수	- 매월 5일까지	서류검토	- 매월 10까지 신청자료 보안요청 및 내용 정리	서류심사	- 매월 20일까지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분야: 여성, 의료, 복지)	현장심사(필요 시)	-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최종발표	- 매월 말 ~ 익월 초, 신청 단체로 송금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재송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	지원금 지급	- 지원기관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종결 후 1개월 이내
지원 절차	세부내용																
서류접수	- 매월 5일까지																
서류검토	- 매월 10까지 신청자료 보안요청 및 내용 정리																
서류심사	- 매월 20일까지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분야: 여성, 의료, 복지)																
현장심사(필요 시)	-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최종발표	- 매월 말 ~ 익월 초, 신청 단체로 송금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재송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																
지원금 지급	- 지원기관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종결 후 1개월 이내																
문의	- 나눔사업팀: ☎02-727-2511																

라. 신한희망재단: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단위: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항목세부	지원금액
	생계주거비		- 공공요금, 관리비, 생활비, 주거비	1가구당 최대 500만원
	교육양육비		- 보육료, 급식비, 교복 및 도서구입비	
	의료비		- 입원(통원)치료비 및 수술비, 의료기기(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재해·재난구호비		- 재해·재난 복구지원비, 심리/정서치료비	1인 최대 100만원, 1가구 최대 200만원
	학대피 해아동 지원	SOL-Guard	- 아동학대 응급(보호)조치 아동 보호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자 심리검사 및 치료비, 의료비 및 생필품 등 지원	-
SOL-Mate		-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대상 렌트 차량 및 유류비 지원		
※ 중복, 초과 신청 가능하며 1가정당 최대 1천만원 한도(심사위원회 심의)				
신청단체	- 전국 사회복지 유관기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개인신청 불가)			
지원절차	지원 절차		세부내용	
	모집 공고		- 차수별 모집 공고	
	기관 신청		- 차수별 50차례 선착순 접수 - 기관당 차수별 5차례 접수 가능	
	선정 심사		- 주 1회 심사	
	선정 및 지원		- 기관입금, 최소 1주 ~ 2주 소요	
	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		- 사업비 집행 및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보고		- 종료 후 1개월 이내	
접수기간	- 차수별 모집 공고 후 평일 10시 ~ 18시			
접수방법	- 신한희망사회프로젝트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 지원신청			
문의	- 신한희망사회프로젝트 사무국: ☎02-6424-1556			

마. 이랜드복지재단 인큐베이팅 사업: 위기가정지원³³⁾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공통사항: 정부, 지자체 및 타 기관의 긴급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가족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사고 및 사업부도 등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재난 등으로 거주지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33) 이랜드복지재단(<http://www.elandwelfare.or.kr>)

	- 가족의 소득 상실로 자녀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한 경우 -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내용	- 치료비: 일반치료비(수술비/입원비), 치과치료비 - 생계비: 생활비(식료품비, 교통비, 의복비), 공과금(가스/수도/전기), 자녀공교육비 - 주거비: 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지원금액	<table><tr><th rowspan="2">신청방법</th><th>A</th><th colspan="3">B</th></tr><tr><th>치료비</th><th>주거비</th><th>생계비</th><th>교육비</th></tr><tr><td rowspan="2">개별신청의 경우</td><td rowspan="2">최대 500만원</td><td colspan="3">최대 300만원</td></tr><tr><td colspan="3">B항목 통합 신청 시 최대 500만원</td></tr><tr><td>중복신청(A+B)</td><td colspan="4">A+B = 최대 700만원</td></tr></table>	신청방법	A	B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개별신청의 경우	최대 500만원	최대 300만원			B항목 통합 신청 시 최대 500만원			중복신청(A+B)	A+B = 최대 700만원			
신청방법	A		B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개별신청의 경우	최대 500만원	최대 300만원																					
		B항목 통합 신청 시 최대 500만원																					
중복신청(A+B)	A+B = 최대 700만원																						
신청 대상 및 절차	- 대상: 공공, 민간 비영리 사례기관이 신청 가능 이랜드인큐베이팅 인트라넷 가입 후 신청 가능																						
	<table><tr><th>치료비</th><th>주거/생계교육비</th></tr><tr><td>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기관, 병원, 학교 등</td><td>사례관리 전문기관에 국한 (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기관 등)</td></tr></table>	치료비	주거/생계교육비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기관, 병원, 학교 등	사례관리 전문기관에 국한 (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기관 등)																		
	치료비	주거/생계교육비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기관, 병원, 학교 등	사례관리 전문기관에 국한 (행정복지센터, 구청, 사회복지기관 등)																					
	- 신청절차																						
	<table><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tr><td>신청접수</td><td>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학교, 병원 등을 통해 신청 </td></tr><tr><td>전문 위원심사</td><td> - 전문위원을 통한 영역별 심사 (경제상황, 지원의 효과성, 계획의 적절성 평가) </td></tr><tr><td>현장심사</td><td> - 가정방문 및 현장조사 - 서비스 계획 수립(재단 사무국+현장 간사) </td></tr><tr><td>서비스제공</td><td> - 현금지원(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일시/ 정기지원) • 물품(의류, 생필품) 및 서비스 지원, 온라인 모금 연결 </td></tr><tr><td>서비스종결</td><td> - 결과보고서(지원 종결 후 1개월 이내 지원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td></tr></table>	구분	세부내용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학교, 병원 등을 통해 신청	전문 위원심사	- 전문위원을 통한 영역별 심사 (경제상황, 지원의 효과성, 계획의 적절성 평가)	현장심사	- 가정방문 및 현장조사 - 서비스 계획 수립(재단 사무국+현장 간사)	서비스제공	- 현금지원(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일시/ 정기지원) • 물품(의류, 생필품) 및 서비스 지원, 온라인 모금 연결	서비스종결	- 결과보고서(지원 종결 후 1개월 이내 지원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구분	세부내용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학교, 병원 등을 통해 신청																					
	전문 위원심사	- 전문위원을 통한 영역별 심사 (경제상황, 지원의 효과성, 계획의 적절성 평가)																					
	현장심사	- 가정방문 및 현장조사 - 서비스 계획 수립(재단 사무국+현장 간사)																					
서비스제공	- 현금지원(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일시/ 정기지원) • 물품(의류, 생필품) 및 서비스 지원, 온라인 모금 연결																						
서비스종결	- 결과보고서(지원 종결 후 1개월 이내 지원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문의	- 홈페이지 (http://www.incubating.or.kr) - 이랜드복지재단: ☎02-3142-1900																						

바.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³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집중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가능성이 높고 자립·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 -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및 재산

34) 아산사회복지재단(<http://www.asanfoundation.or.kr>)

	※단, 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 81~100% 이하인 대상자는 지원을 통해 실제 취업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
지원내용	- 위기 상황 극복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등 일체
지원절차	이메일 신청 ⇒ 1차 심사 및 전화(현장)조사 ⇒ 2차 심사 ⇒ 지원결정 및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비) ⇒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신청방법	- 신청자: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 (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SOS 복지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문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5, 2563, 2565

10. 사회서비스지원

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 · 새터민 · 결혼이민 · 미혼모 · 분만취약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지원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비용

	구분	단태아	쌍태아(인력1명)	쌍태아(인력2명)	삼태아이상(인력2명)
	일반	116,000원	150,000원	205,000원	232,000원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도 포함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 보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전화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65세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세면, 식사 등 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기간 및 시간 : (기존대상자)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을 통해 연장가능)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개월				
	구분	소득	총가계(원)(A=B+C)	정부지원(원)	본인부담(원)
	월 24시간(A형)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가형)	348,000	348,000	면제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327,120	20,880
	월 27시간(B형)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가형)	391,000	379,760	11,740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368,010	23,490

	월 40시간(C형)	만65세미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580,000	580,000	면제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시·군·구 ⇒ 전자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발급 ↓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 ⇒ 서비스 제공 및 결제 ↓ 제공기관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 보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전화				

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까지(최대 24개월)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금액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월 6만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8만6천원) 지원
신청방법	<pre> graph TD A[시·도
(보건정책과 등)] --> 예산교부 B[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B --> 실적보고 A A --> 실적보고 C[시·군·구
(보건소)] C --> 선정결과 통보 D[사회보장정보원] D --> 사업비 예탁 C C --> 예탁금 정산 D D --> 대상자 선정 E[서비스이용자] E --> 카드발급 F[전담금융기관
(카드사)] F --> 카드발급 결과 통보 D D --> 대금지급 요청 G[수탁은행] G --> 구매대금 지급 H[판매처
(유통사)] H --> 물품구매
(결제) E </pre>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 보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하거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전화

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 지원방식 :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 사용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 가능
지원절차	<pre> graph TD A[임산부] -- 1 임신·출산확인서발급 (소견서 등) --> B[시·군·구청 (읍·면·동 포함)] B -- 2 지원신청 --> C[건강보험공단 (D/B)] C -- 3 지원대상 등록 (가상계좌 입금) --> D[병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 D -- 4 병의원 및 보건기관 등 이용 --> A C -- 5 임신출산 진료비 청구 --> B B -- 6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C </pre>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 보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전화

11. 생활지원

가.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사업³⁵⁾

1)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 바우처)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내용	- 난방유 구입 전용 바우처 카드(가구당 최대 31만원까지 사용 가능)						
대상 발굴 및 전달체계	신청접수 (8월~9월)	→	대상자 선정 · 확정통보 (10월)	→	등유 바우처 발급 통지 및 안내(10월)	→	카드신청 발급·사용 (11월~익년3월)
	기초지자체/ 읍면동		한국에너지재단		기초지자체/ 읍면동		대상가구/ 카드사업자

나. 한국에너지공단³⁶⁾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35) 한국에너지재단(<http://www.energylove.or.kr>)

36) 한국에너지공단(<https://www.energyv.or.kr>)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지원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납부한 금액을 한국에너지재단 분기별로 PayBack 지원 - 지원금액 <table><tr><th>구분</th><th>1등급 (1인 가구)</th><th>2등급 (2인 가구)</th><th>3등급 (3인 가구)</th><th>4등급 (4인 이상 가구)</th></tr><tr><td>하절기</td><td>7,000원</td><td>10,000원</td><td>15,000원</td><td>15,000원</td></tr><tr><td>동절기</td><td>89,500원</td><td>126,500원</td><td>155,500원</td><td>176,000원</td></tr><tr><td>추가지원</td><td>7,000원</td><td>10,000원</td><td>14,000원</td><td>18,500원</td></tr><tr><td>계</td><td>103,500원</td><td>146,500원</td><td>184,500원</td><td>209,500원</td></tr></table>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추가지원	7,000원	10,000원	14,000원	18,500원	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추가지원	7,000원	10,000원	14,000원	18,500원																						
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다. 서울 IT희망나눔세상: 사랑의 PC 신청³⁷⁾

- ◆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중고PC 와 자치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 받은 중고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

구분	세부내용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서 수혜자격이 있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기타취약계층 -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보급제외	- 서울시, 자치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타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보급 받은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대를 신청한 경우 세대 당 1대만 보급

37) 서울시 사랑의PC신청(<https://news.seoul.go.kr/gov/lovepc-request-info>)

제출서류	- 개인: (공통)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확인서 별도 첨부 - 기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 단체증명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IT희망나눔세상 → 사랑의PC 신청 - 서류제출방법: 팩스 및 우편, 메일 등 • 팩스: 02-768-8843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의PC 담당자 앞
문의	- 서울시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2, 2893

라. 생활 속 다양한 요금 감면

1) 유료방송 요금 감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유료방송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용 유료 방송 회사에 따라 상의		
지원내용	선택	방송매체	지원내용
	선택1	케이블 TV	서비스 이용 요금 30% 감면 (이용 유료 방송 회사에 따라 상의)
	선택2	IPTV (KT, SKT, LGU+)	
	선택3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신청방법	- 가정 내 이용하는 유료 방송 회사로 문의		
신청기간	- 가정 내 이용하는 유료 방송 회사로 문의		

2) 통신요금 감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전화요금 감면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정부 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문의	-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3)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열 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월 5천원 ~ 1만원) -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월 5천원) / 다자녀가구 (월 4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www.kdhc.co.kr) →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감면 신청하기

4) 도시가스요금 경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 장애인(1급 ~ 3급),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지원내용	- 가스요금 경감		
	구분	동절기(12~3월)	기타 월(4~11월)
	유공자, 중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4,000원	6,600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12,000원	3,300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원	1,650원
신청방법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전기요금 할인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1급 ~ 3급),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지원내용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및 유공자: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 한도, 한계 1.2만원 - 차상위계층: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30%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생명유지장치, 출산가구와 중복적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한국전력공사 지사 - 온라인 신청: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http://cyber.kepco.co.kr)

6) 공공 교통요금 감면

구분		세부내용			
철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부모			
	지원내용	구분	KTX	새마을호 (ITX-새마을)	무궁화호(누리로)이하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토,일,공휴일 제외)		50%
		노인	30% (토,일,공휴일 제외)		30%(통근열차 50%)
		국가유공자(상이)	6회까지 무료(초과 시 운임의 50%할인)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신청방법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및 다자녀카드 제시			
항공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50%), 경증 장애인(30%) - 아시아나항공: 장애인(50%)			
연안 여객선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지원내용	- 중증 장애인 : 50%할인 - 경증 장애인 : 20%할인(일부 선사만 해당)			

7) 수도 요금 감면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자체 별도 시책으로 지역마다 상이함 -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확인

8)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개인(가정)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내용	- 지원 매체 : 전국종합신문, 경제신문, 어린이신문 2종, 외국어신문 4종, 기타 1종을 포함 총 신문 23종 및 잡지 10종(사업 수행 시 보조사업자로 참여한 매체가 발행 매체) - 지원 부수 : 개인(가정) 1부, 시설(기관) 1부~2부 지원
선정기준	- 기초 생활수급가정으로 당해 연도 지원 대상 매체(신문, 잡지) 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과 개인 지원비율, 지역별 안배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을 충족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이용 인원이 많은 시설(단체)과 저소득층이며 장애인 또는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 - 단, 구독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초 다음 해 1년간 구독 지원 대상자를 선정
신청방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 / 연락처 02-2001-7553

마. 1인가구지원사업

1) 서울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추진

구분	세부내용			
비전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 1인가구 안심특별시, 서울			
목표	1인가구 분야별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인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정책기반 마련			
4대 안심 정책	건강안심 건강돌봄 안심먹거리 범죄안심 마음안심 내집안전 고립안심 고독·고립탈출 사회관계자립 ⇒ 주거안심 맞춤주택공급 주거불편해소 ↑ 맞춤 연령별·성별·지역 별 맞춤형 정책 융합 서울시·구·민간분야 강점 활용 정책 공감 1인가구 관점 공감 정책			
8개 핵심 과제	건강안심 - 건강걱정 없는 맞춤 건강돌봄 제공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1인가구 건강관리 프로그램 - 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행복한 밥상 • 1인가구 착한 먹거리 지원 범죄안심 - 늦은 밤길 안전 지킴이 • 안심마을보안관 • 스마트보안등 및 고화질 CCTV - 범죄안심 홈세트 제공 • 안전도어 지킴이			

			• 1인가구 안심홈세트
		고립안심	- 고독 및 고립 탈출 지원 • 우리동네돌봄단 • AI 활용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 생명이용 청진기 - 경제자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회 제공 • 1인가구 상담 · 멘티 · 멘토 프로그램 • 관계형성프로그램 지원 및 소통공간 • 경제자립교육 및 일자리 연계
		주거안심	- 1인가구 맞춤형주택 증가 • 세대통합형 모델 개발 · 공급 •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 내집찾기, 내집관리 어려움 해소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안내	- 서울1인가구 플랫폼 '쌍글빙글 서울' (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 문의 ☎ 02-120		

2) 가족센터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구분	세부내용	
목적	-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 지원을 통한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도모	
추진 방향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지원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 등 지원	
사업 내용	-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역량강화, 자기개발을 통한 성장, 관계유지 및 개선, 안전,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	
	- 지역 맞춤형 1인가구 프로그램	
	일상생활 프로그램	- 건강관리, 재무관리 등 1인가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안전 지원
	자기개발 프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 감정코칭 등 1인가구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계개선 프로그램	-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 1인가구의 관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정서 상담 및 집단 상담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관계망 지원 • 1인가구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주요 프로 그램	청년	- 사회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 · 경제 · 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중장년층	-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 관리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고령층	-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 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여성	- 안전·심리 교육, 방법 장치(스마트 초인종, 창문 잠금장치, 방법필름 등) 지원 등	
안내	- 사업 수행기관 : 전국 12개 가족센터		
	서울	용산구 가족센터	☎02-797-9184
	부산	부산광역시 가족센터	☎051-330-3406
	대구	서구 가족센터	☎053-355-8042
		북구 가족센터	☎053-327-2994
	인천	중구 가족센터	☎032-763-9337
	광주	동구 가족센터	☎062-234-5790
	충북	청주시 가족센터	☎043-263-1817
	충남	공주시 가족센터	☎041-853-0881
	전남	광양시 가족센터	☎061-797-6800
		포항시 가족센터	☎054-244-9702
	경북	문경시 가족센터	☎054-554-5591
		경남	양산시 가족센터
	※ 기타 1인가구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		

바. 그 외 기타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관할부처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을 희망 가구(농 어촌 지역 만 65세 이상 우선)	-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 신청자가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센 터'(124 콜센터)로 전화 신청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 급자, 차상위계층	-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 (1인당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 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 체험료 등 사용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 - 한국산림복지진흥 원 우편신청	산림청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1) 자격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법 제5조 및 제5조 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9세~만24세	- 월12,000원 (연간 최대 144,000원) - 만 9세~ 만24세 여성청소 년에 대해 최대 16년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여성 가족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등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신체수발 - 건강 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건 복지부
언어발달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족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 등록장애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인 자녀	- 언어재활서비스 - 독서지도 - 수어지도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6만원)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건 복지부



IV. 부록

- 1
- 2
- 3
- 4



IV. 부록

1. 한부모가족 현황³⁸⁾

가.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가구, %)

세대 구성	막내자녀 연령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총 계	전체 가구	20,499,543	20,891,348	▲391,805
	한부모가구(소계)	1,539,362	1,529,151	▼10,211
	한부모가구 비율	7.5	7.3	▼0.2
	18세 이하	408,378	384,114	▼24,264
	19세 이상	1,130,984	1,145,037	▲14,053
부+미혼 자녀	소계	283,293	280,282	▼3,011
	18세 이하	85,049	78,939	▼6,110
	19세 이상	198,244	201,343	▲3,099
모+미혼 자녀	소계	962,894	965,097	▲2,203
	18세 이하	212,664	201,821	▼10,843
	19세 이상	750,230	763,276	▲13,046
부+미혼 자녀+기타 가구원	소계	108,141	103,988	▼4,153
	18세 이하	52,977	48,291	▼4,686
	19세 이상	55,164	55,697	▲533
모+미혼 자녀+기타 가구원	소계	185,034	179,784	▼5,250
	18세 이하	57,688	55,063	▼2,625
	19세 이상	127,346	124,721	▼2,625

나. 지역별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가구, %)

지역	2018년			2019년			증감
	전체 가구	한부모가족	비율	전체 가구	한부모가족	비율	
전국	20,499,543	1,539,362	7.5	20,891,348	1,529,151	7.3	▲10,211
서울	3,981,741	306,902	7.7	4,034,957	301,794	7.5	▼5,108
부산	1,378,164	124,684	9.0	1,392,291	122,595	8.8	▼2,089
대구	968,265	82,233	8.5	979,852	80,757	8.2	▼1,476
인천	1,122,041	103,605	9.2	1,150,455	102,839	8.9	▼766
광주	586,263	74,199	12.7	596,078	46,556	7.8	▼27,643
대전	608,260	45,169	7.4	616,363	44,601	7.2	▼568
울산	439,930	30,095	6.8	445,731	29,765	6.7	▼630
세종	120,629	5,326	4.4	131,679	5,776	4.4	▲450
경기	4,934,208	372,897	7.6	5,097,857	374,989	7.4	▲2,092
강원	634,847	43,673	6.9	641,021	43,363	6.8	▼310

38) 출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단위: 가구, %)

지역	2018년			2019년			증감
	전체 가구	한부모가족	비율	전체 가구	한부모가족	비율	
충북	656,101	44,266	6.7	670,865	44,015	6.6	▼251
충남	877,628	53,717	6.1	892,159	53,790	6.0	▲73
전북	743,341	52,186	7.0	749,586	51,796	6.9	▼390
전남	747,681	45,262	6.1	751,965	45,168	6.0	▼94
경북	1,113,008	68,020	6.1	1,123,145	67,695	6.0	▼325
경남	1,331,278	93,535	7.0	1,347,182	92,948	6.9	▼587
제주	256,158	20,593	8.0	261,162	20,704	7.9	▲111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 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3.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구분	개정사유	개정사항
신청	청소년한부모 신청 독려	- 신청인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로 확인될 경우 청소년한부모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내
선정기준	모·부의 복역 시 지원 제외규정 명확화	- 지원대상 모 또는 부가 복역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 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최 대 1개월 이내 중지를 유예할 수 있음
	배우자의 장기복역 적용시점 명확화 (미결수의 경우)	- 형 확정 전 미결수로서 수감 중인 경우 입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
조사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며, - 기존 30% 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기준 유지

	특수형태근로자 공적자료 반영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순서로 공 적자료 반영
	한시적양육비 사적이전소득 반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한시적양육비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공적이전소득	- 육아휴직급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포함
	기본재산액 특례시 반영	- 대도시 공제대상에 “특례시” 포함
복지급여의 실시	2022년 급여 개정사항 반영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원 → 월 20만원)
	급여중지기준 개선	- 변동사항 발생월에 급여 중지가 결정된 경우, 급여 중지가 결 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변동사항 발생월 이후에 급여 중지가 결정된 경우, 결정된 달 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지원내용 개선	- 검정고시 응시준비 청소년한부모가 일반 학원에서 검정고시 교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원비 지원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한부모 대상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 확대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구분	개정사유	개정사항
입소기간	입소기간 연장 사유 추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입소자의 경우 학교 졸업시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시설 운영비	물가상승률 반영	- 전년 대비 평균 1.9% 인상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교통비 보조	- 병원 등 치료기관 시외 지역 통원치료 시 교통비 실비 보조
매입임대 주거 지원	운영기관의 선정	-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관할 지역 내 운영기관 을 선정 하되,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
매입임대 주거 지원	사업 관리·운영	- 신규 운영기관의 경우 주택 10호 이상 관리규정을 사업 시작년도의 다음 연도까지 적용 제외

다.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 서비스

1) 미혼모·부 초기지원(미혼모부자거점기관)

구분	개정사유	개정사항
예산집행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 증액(기본급 월 225만원 → 월 250만원)

2)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구분	개정사유	개정사항
사업대상	소득기준 상향	- 기존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추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 시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소요 기간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 단위로 산정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선정기준</th><th colspan="7">기준액(원)</th></tr><tr><th>1인가구</th><th>2인가구</th><th>3인가구</th><th>4인가구</th><th>5인가구</th><th>6인가구</th><th>7인가구</th></tr><tr><td colspan="2">기준 중위소득</td><td>1,944,812</td><td>3,260,085</td><td>4,194,701</td><td>5,121,080</td><td>6,024,515</td><td>6,907,004</td><td>7,780,592</td></tr><tr><td>생 계</td><td>중위소득 30%이하</td><td>583,444</td><td>978,026</td><td>1,258,410</td><td>1,536,324</td><td>1,807,355</td><td>2,072,101</td><td>2,334,178</td></tr><tr><td>의 료</td><td>중위소득 40%이하</td><td>777,925</td><td>1,304,034</td><td>1,677,880</td><td>2,048,432</td><td>2,409,806</td><td>2,762,802</td><td>3,112,237</td></tr><tr><td>주 거</td><td>중위소득 45%이하</td><td>894,614</td><td>1,499,639</td><td>1,929,562</td><td>2,355,697</td><td>2,771,277</td><td>3,177,222</td><td>3,579,072</td></tr><tr><td>교 육</td><td>중위소득 50%이하</td><td>972,406</td><td>1,630,043</td><td>2,097,351</td><td>2,560,540</td><td>3,012,258</td><td>3,453,502</td><td>3,890,296</td></tr></table>	구 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 계	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 료	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 거	중위소득 45%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 육	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구 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 계	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 료	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 거	중위소득 45%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 육	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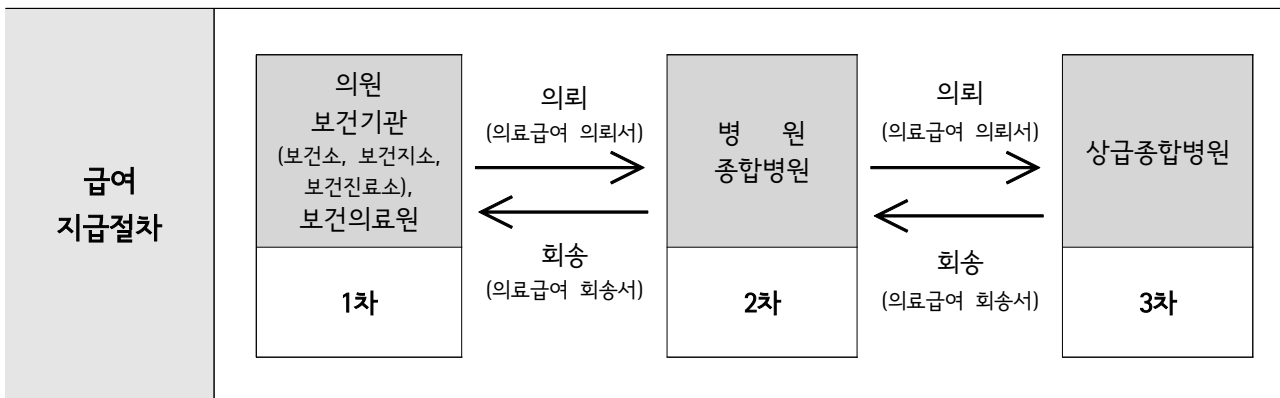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해당)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조사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table><tr><th>구분</th><th>대도시</th><th>중소도시</th><th>농어촌</th></tr><tr><td>생계·주거·교육급여</td><td>1.2억원</td><td>9,000만원</td><td>5,200만원</td></tr><tr><td>의료급여</td><td>1억원</td><td>6,800만원</td><td>3,800만원</td></tr></table>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table><tr><th>구분</th><th>대도시</th><th>중소도시</th><th>농어촌</th></tr><tr><td>생계·주거·교육급여</td><td>6,900만원</td><td>4,200만원</td><td>3,500만원</td></tr><tr><td>의료급여</td><td>5,400만원</td><td>3,400만원</td><td>2,900만원</td></tr></table>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table><tr><th>구분</th><th>대도시</th><th>중소도시</th><th>농어촌</th></tr><tr><td>생계·주거·교육급여</td><td>10,000만원 이내</td><td>7,300만원 이내</td><td>6,600만원 이내</td></tr><tr><td>의료급여</td><td>8,500만원 이내</td><td>6,500만원 이내</td><td>6,000만원 이내</td></tr></table> ※(추가조건) 금융재산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이내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0,000만원 이내	7,300만원 이내	6,600만원 이내	의료급여	8,500만원 이내	6,5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0,000만원 이내	7,300만원 이내	6,600만원 이내													
의료급여	8,500만원 이내	6,5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지급 - 해산급여: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나. 생계급여

구분	세부내용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아래 사례에 해당할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지원내용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산정기준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583,444원) - 소득인정액(150,000원) = 433,444원(원 단위 올림)
급여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 (자격변동 등의 사유, 보장결정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 추가지급)
급여 지급기준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다. 의료급여

구분	세부내용																																						
대상	-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_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table><tr><th colspan="2">구분</th><th>1차 (의원)</th><th>2차 (병원· 종합병원)</th><th>3차 (상급 종합병원)</th><th>약국</th><th>PET 등</th></tr><tr><td rowspan="2">1종</td><td>입원</td><td>없음</td><td>없음</td><td>없음</td><td>-</td><td>없음</td></tr><tr><td>외래</td><td>1,000원</td><td>1,500원</td><td>2,000원</td><td>500원</td><td>5%</td></tr><tr><td rowspan="2">2종</td><td>입원</td><td>10%</td><td>10%</td><td>10%</td><td>-</td><td>10%</td></tr><tr><td>외래</td><td>1,000원</td><td>15%</td><td>15%</td><td>500원</td><td>15%</td></tr></table>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라. 주거급여

구분		세부내용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지원내용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 지급 -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보증금환산액_연 4%)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집수리 지원																																						
산정 기준	임차 급여	- 기준 임대료 (단위: 원/월) <table><tr><th>구분</th><th>1급지 (서울)</th><th>2급지 (경기인천)</th><th>3급지 (광역시중시 수도권 외 특례시)</th><th>4급지 (그 외 지역)</th></tr><tr><td>1인</td><td>327,000</td><td>253,000</td><td>201,000</td><td>163,000</td></tr><tr><td>2인</td><td>367,000</td><td>283,000</td><td>224,000</td><td>183,000</td></tr><tr><td>3인</td><td>437,000</td><td>338,000</td><td>268,000</td><td>218,000</td></tr><tr><td>4인</td><td>506,000</td><td>391,000</td><td>310,000</td><td>254,000</td></tr><tr><td>5인</td><td>524,000</td><td>404,000</td><td>320,000</td><td>262,000</td></tr><tr><td>6인</td><td>621,000</td><td>478,000</td><td>379,000</td><td>310,000</td></tr></table>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중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중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 8~9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수선 유지 급여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급기준 <table><tr><th>구분</th><th>경보수</th><th>중보수</th><th>대보수</th></tr><tr><td>수선비용</td><td>457만원</td><td>849만원</td><td>1,241만원</td></tr><tr><td>수선주기</td><td>3년</td><td>5년</td><td>7년</td></tr><tr><td>수선예시</td><td>도배, 장판 등</td><td>오급수, 난방 등</td><td>지붕, 기둥 등</td></tr></table>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급여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 (자격변동 등의 사유, 보장결정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 추가지급)
급여 지급기준		-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

마. 교육급여

구분	세부내용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			
	- 지원 세부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331,000원	연 1회 지급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466,000원	연 1회 지급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554,000원	연 1회 지급
		교과서대	'22년 고교무상교육실시로 일반 공사립 교과서대·고교학비, 급식비 전체 학생 무상 지원	
		수업료		
입학금				
※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PC지원)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				
지원절차	지원절차		세부내용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실 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급여결정,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실시		• 결정된 급여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 초~말 집중신청)			
문의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 10. 17.>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전문개정 2007. 10. 17.]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2016. 12. 20.>
-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0.>
-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2., 2014. 1. 21.,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 4. 12.>
-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8. 1. 16.>
-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8. 1. 1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4. 12.]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2.]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7조 삭제 <2011. 4. 12.>

제8조 삭제 <2011. 4. 12.>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6.]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개정 2007. 10. 17.>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4. 12., 2014. 1. 21.>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臺帳)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대장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 ④ 삭제 <2011. 4. 12.>
 - ⑤ 삭제 <2011. 4. 12.>
-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4. 12., 2014. 1. 21.]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4. 1. 21.>
-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07. 10. 17.]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일부개정 2020. 10. 2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주거 등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출국·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병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복지 급여 지급의 정지
 2. 지원대상자의 복지 급여 사유가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지급 중지
 [본조신설 2012. 2. 1.]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복지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만이 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4조(고용의 촉진)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본조신설 2007. 10. 17.]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6조(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본조신설 2011. 4. 12.]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종전 제17조의5는 제17조의6으로 이동 <2017. 12. 12.>]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18. 12. 18.>]

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호·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호·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7조의6에서 이동 <2018. 12. 18.>]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정 2007. 10. 17.>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 16.>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 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11. 4. 12.]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2.>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4. 12., 2014. 1. 21.>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 4. 12., 2018. 12. 18., 2020. 10. 20.>
-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17., 2011. 4. 12., 2014. 1. 21., 2016. 3. 2.>
-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전문개정 2007. 10. 17.]

제22조(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23조(감독)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24조(시설 폐쇄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1. 4. 12., 2014. 1. 21., 2016. 3. 2.>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전문개정 2007. 10. 17.]

제24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4. 1. 21., 2016. 3. 2.>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장 비용 <개정 2007. 10. 17.>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 10. 17.]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지원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장 보칙 <개정 2007. 10. 17.>

제27조(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11. 4. 12.]

제28조(심사 청구)

-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29조(벌칙)

- ①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 ②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2016. 3. 2.>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0조의2(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3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전문개정 2007. 10. 17.]

부칙 <제17540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7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2.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판사
 3.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4.>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한다.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 ①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 ①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24.]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8. 3. 27.>
-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6. 9.>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14조의4(비용환수)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3. 27.>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 3. 27.>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5. 압류명령 신청
 - 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7. 감치명령 신청 등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운영 등)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현장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치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

부·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체납자료의 제공)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한다)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음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0.8.5.] 제21조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

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장 보칙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3조(수수료)

-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 4.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 5.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행관리원의 장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 ① 제2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⑯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 ⑰부터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 길라잡이

- 발 행 2022년
- 발 행 처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75, 4층
- 전 화 02-861-3020
- 팩 스 070-7469-3024
- 홈페이지 www.seoulhanbumo.or.kr
- 오시는길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 9호선 흑석역 1번 출구 오른쪽 건물

- 본 자료집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있습니다.